

北韓의 對外經濟仲裁法에 관한 研究

研究者：朴 井 源

(國民大 教授・招請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제 1 장 序 論	7
제 1 절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7
I. 研究의 必要性	7
II. 研究目的	8
제 2 절 研究의 範圍와 方法	9
I. 研究의 範圍	9
II. 研究方法 및 期待效果	11
제 2 장 北韓의 仲裁制度	13
제 1 절 概 說	13
I. 北韓의 仲裁制度의 意味	13
II. 研究의 限界	16
제 2 절 北韓의 國家仲裁制度의 原理와 特徵	18
I. 北韓의 司法과 行政의 原理	18
II.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意義와 特徵	22
III. 計劃經濟體制下的 國家仲裁制度	29
제 3 절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發展	32
제 4 절 北韓 國家仲裁制度 概觀	36
I. 國家仲裁機關	36
II. 國家仲裁裁判의 當事者와 對象	41
III. 國家仲裁裁判節次	46
IV. 裁決과 決定	63
V. 國家仲裁裁判의 執行	69
VI. 國家仲裁裁判에 대한 再審査	74
VII. 國家仲裁機關의 經濟機關, 企業所 등에 대한 檢閱·監督과 提起	79

제 3 장 北韓의 對外經濟仲裁制度	87
제 1 절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的 意義와 役割	87
I. 國際貿易仲裁의 意義	87
II. 對外經濟開放政策과 國際貿易仲裁制度的 活性化	88
III.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的 限界	94
제 2 절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 概觀	95
I. 北韓 仲裁機關의 構成	96
II. 仲裁對象과 仲裁合意	97
III. 仲裁裁判節次	98
IV. 仲裁裁決	102
V. 調停節次	103
제 3 절 北韓의 『對外經濟仲裁法』의 分析	104
I. 『對外經濟仲裁法』의 採擇 및 意義	104
II. 『對外經濟仲裁法』의 內容 및 特徵	105
III. 問題點 및 限界	112
IV. 評價와 展望	113
제 4 장 中國과 北韓의 仲裁制度 比較	115
제 1 절 中國의 仲裁制度	115
I. 沿革과 立法背景	116
II. 中國 仲裁法の 原則	120
III. 中國 仲裁法の 主要內容 概觀	122
제 2 절 中國 仲裁法の 特徵과 問題點	133
I. 中國 仲裁法の 特徵	133
II. 中國 仲裁法の 問題點	134
III. 中國 仲裁制度에 대한 評價	137
제 5 장 韓國의 仲裁法과 南北 仲裁制度的 發展方向	139
제 1 절 韓國의 仲裁法 概觀	139

I. 仲裁法 改正의 必要性	139
II. 改正 仲裁法의 基本方向과 特徵	140
제 2 절 改正 仲裁法의 主要內容 概觀	142
I. 總 則(제1장)	142
II. 仲裁合意(제2장)	144
III. 仲裁判定部(제3장)	145
IV. 仲裁節次(제4장)	147
V. 仲裁判定(제5장)	150
VI. 仲裁判定의 效力 및 不服(제6장)	152
VII.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제7장)	152
VIII. 補 則(제8장)	153
제 3 절 北韓의 對外經濟仲裁制度와 南北間 紛爭解決方案	154
I.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 考慮	154
II. 南北韓의 紛爭解決方案 檢討	156
III. 南北의 紛爭解決方案 摸索	159
제 6 장 맺음말	163
부 록	167
1. 北韓의 對外경제중재법	167
2. 中華人民共和國 仲裁法	172
3. 中國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	182
<참고문헌>	195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I. 研究의 必要性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현재 경제부문의 개혁을 위한 개방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金正日)체제의 공식화는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1998년 개정헌법에 나타난 경제조항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부문에서의 변화방향을 읽을 수 있게 한다.¹⁾ 이렇듯 북한의 정책변화는 법제도화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제정비는 실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경제부문의 개혁과 관련하여 대외경제부문의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를 법제면에서 보면,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의 개선 및 정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을 외국인의 북한투자에 대한 기본법으로 제시한 후 이와 관련한 법제들을 신설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법제정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북한은 1999년 8월에 대외경제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의 대외경제법제의 일환인 『대외경제중재법』의 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중재제도의 이해에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논구는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의 분석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조성에 필요하다. 현재 남북경협이 활성화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대외경제

1) 이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한국법제연구원, 1999), 36~62면.

중재제도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분쟁해결제도의 모색과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적 절차와 방법을 찾는 데 필요하다. 더욱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의 연구는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II. 研究目的

알다시피 2000년 6월 13일 남한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大統領)과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國防委員長) 사이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기서 마련된 이른바 ‘6·15남북공동선언’(이하에서는 ‘공동선언’이라고 함)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민족분단사에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의미는 갖는 것이지만, 나아가 ‘공동선언’에의 합의는 남북관계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분단 55년만에 처음 이루어진 남북정상 사이의 합의문건은 평화와 화해·협력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한 것이다.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가운데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관련하여²⁾ 대북경협을 위한 법제도적 보장장치의 마련에 관하여 관심이 높다. 그 만큼 대북경제투자와 관련하여 그간 이루어진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투자보장책에 대해 우려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를 통하여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의 대북투자문제를 다루어 왔으나 이에 따른 투자보장문제는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동선언을 계기로 하여 남북경협과 관련한 투자보장에 관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 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인정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 8·15를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교환 및 비전향장기수문제의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 합의사항의 실천을 위한 당국자간 대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채택한 『대외경제중재법』은 대북투자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북한의 해외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보장제도의 하나인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남한의 투자자들에게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결방법과 절차를 찾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논구를 통해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마련되고 있는 경제개혁의 틀과 제도는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을 위한 법제도에서 모델을 찾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국의 섭외경제중재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의 중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급한다.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고찰은 보다 확대 발전하게 될 남북경협에 있어서 대북투자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한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 2 절 研究의 範圍와 方法

I. 研究의 範圍

북한의 중재제도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 북한에서의 중재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북한의 중재제도의 내용을 살핀 후 북한의 중재제도에 관하여 고찰한다.

첫째,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를 고찰함에 있어 기존의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를 함께 다루어 분석한다. 요컨대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중재제도와는 아주 다른 분쟁해결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의 두 가지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독특한 제도이다. 따라서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사법체제, 행정체제, 국가기관체

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등에 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에 일반적인 중재제도, 민사소송절차, 행정절차와 비교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중재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의 연혁을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의 수립과정 및 재판소제도의 연혁과 관련하여 일별(一瞥)하고,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제도를 개관한다.

둘째,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논구한다. 이는 본질적인 면에서 남한의 중재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북한의 종래 국제무역중재제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하되, 그 내용을 개관하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여기에서 남북한 사이의 무역·투자·서비스 등 거래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며, 향후 남북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해결방안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북의 경험과 관련한 분쟁사례에 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중재제도와와의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실제로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제도가나 국제무역중재제도는 북한만의 독특한 분쟁해결수단이 아니라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중재제도에서 시사받고 계수된 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경제개혁의 방법에 있어서 북한이 여러 면에서 시사받고 있는 점이 크다는 점에서 중재제도에서도 북한의 중재제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의 중재제도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제도와 북한의 중재제도의 비교분석은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법제비교를 통한 북한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남북의 중재제도를 비교한다. 남북한의 중재제도의 비교분석은 현실적으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특히 대북투자에 있어서 양자의 제도의 차이와 특성을 찾아 분쟁해결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남북의 법제통합 내지 동화와 관련하여 그 공통성을 파악하는 기초 연구가 될 것이다.

다섯째, 위의 논구를 통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를 파악하고 남북경협과 관련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남북의 분쟁조정기구의 구성문

제 등을 검토한다. 이는 남북의 경제통합의 전제로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될 것이다.

II. 研究方法 및 期待效果

본 연구는 북한법제에 관한 고찰로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관련문헌에 기초하여 연구한다.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 중국의 중재제도와 비교, 남한의 중재법과의 비교를 통해 비교법적 논구를 함으로써 그 특성을 파악한다. 아울러 남북경협과 관련한 분쟁사례를 검토하여 북한의 무역중재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³⁾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대외중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진출기업 내지 기업인에게 북한의 중재제도에 관한 법정보를 제공하고, 북한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 이전에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의 분석은 남북한의 대외중재제도의 비교분석에 비추어 북한법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 법은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이라는 정책적 변화는 물론 대외경제환경에의 적극적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 평가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개방의 추이 면에서 중국의 경제개혁의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경제중재제도에 있어서 중국법제와의 비교분석은 북한의 경제개혁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법적인 면에서 남북의 통합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중재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현재 남북한 사이의 투자와 관련하여 중재제도를 통한 해결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적인 북한과의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제 1 장 序 論

제 2 장 北韓의 仲裁制度

제 1 절 概 說

I. 北韓의 仲裁制度의 意味

‘중재(Arbitration, Arbitrage, Schiedsverfahren)’는 일반적으로 민사상 분쟁을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제3자인 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이 중간에 서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재판기관인 법원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권력적 활동인 재판과는 다른 재판외의 임의적 분쟁 해결활동으로 파악된다. 중재는 단심제를 취하기 때문에 여러 심급을 예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보다 신속한 사건해결이 가능하고 비용이 절약되며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1966년에 『중재법』을 제정하여 의용(依用) 민사소송법에 있었던 중재제도를 부활시킨 이래 점차 중재제도는 발전되어 왔다. 이를 좀더 보면, 1987년에는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9년에는 『상사중재규칙』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상행위와 언론분쟁을 거친 후에 내려지는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중재법 제12조). 그리고 1999년 중재법은 새로 개정되었다.⁴⁾ 이로써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남한에서의 이러한 중재제도는 북한에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중재제도와는 그 의미와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기본적인 중재제도와는 달리 독특한 사회주의적 분쟁해결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바로 북한에서 ‘국가중재재판제도’ 내지 ‘국가중재제도’⁵⁾

4) 이에 관해서는 남한의 중재제도를 분석하는 데에서 후술한다.

5)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에 인민경제계획수단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을 심의·해결하는 활동을 단순히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으나, 북한의 법학자 리 황이 펴낸 중재법교과서 등에는 국제무역중재 등 일반적인 중재와 구별하기 위하여 ‘국가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리 황,

를 말한다.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우리가 통상 이해하고 있는 중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중재합의’, ‘중재원의 선정’ 등 중재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재재판의 진행으로 표징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중재제도와는 판이한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였다.

북한에서 말하는 국가중재제도는 다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중재에 관하여 “다투는 두 당사자 사이의 경제거래과정에 제기 되는 분쟁문제들에 대하여 시비를 가르고 해결을 내리는 중재기관의 활동”이라고 하고, “중재는 분쟁문제의 성격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비롯하여 국가중재, 무역중재, 국제중재 등으로 구분”되고, 북한에는 “국가중재와 무역중재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먼저 개인이 아닌 경제기관·기업소·단체⁷⁾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국가재판활동을 의미한다.

다음 부차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소유조직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준수하여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중재법학(법학부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2~6면. 이 책은 김정금, 리 황이 집필하여 1985년 발간된 『중재법(법학부용)』과 그 내용은 거의 같으며, 김정일의 ‘말씀’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

6)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531~532면.

7) 북한에서는 기관·기업소·단체중 일정한 경제적 독자성과 통일된 단위로 활동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춘 조직체를 법인으로 통칭하고 있다. 북한의 법인에는 국가적 법인, 협동단체법인, 사회단체법인의 3가지 종류의 법인이 있다. 국가적 법인에는 예산제 국가기관과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가 있고, 협동단체법인에는 협동농장과 생산협동조합이 있으며, 사회단체법인에는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86면; 『민법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8), 86면 이하>.

‘법인’이란 용어의 사용에 있어 1958년도 북한민법 초안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1990. 9. 5. 제정된 북한민법에서는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관·기업소·단체라는 용어로 대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大內憲昭,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社會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基本法令集付』(東京: 明石書店, 1995), 105頁>. 한편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등에서는 여전히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상의 법인으로는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있고, 대외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기업소의 경우에는 무역상사(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리종열, “공화국 무역상사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입문”, 『법학론문집 4』(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94면 이하>.

행정활동을 의미하게 된다.⁸⁾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민사재판제도나 행정절차는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상술한 내용의 분쟁은 민사재판제도나 행정절차에 의해 해결하고 계약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중재제도를 도입하고 현재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소 불합리한 면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회주의국가의 구소련을 종주국으로 하는 법제동화 내지 답습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구소련은 사회주의법제 이론에 따라 정권수립당시부터 자본주의법과 그에 의해 운용되는 민사재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⁹⁾

그러나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사회주의적 적법성의 개념에 의해 민사소송법 등 민사관련법에 의해 적용됨으로써 그 본질은 민사재판제도에 있다고 분석된다.¹⁰⁾ 북한은 구소련의 국가중재제도를 계수하여 이른바 북한식의 국가중재제도를 유지해 왔던 것이었다.

결국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인민계획경제에 기초한 계약상의 분쟁을 사법적 구조로 해결하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민사소송절차와 흡사하지만, 그밖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개별적 일군’¹¹⁾들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나 검찰기관에 넘긴다든지 혹은 검열·감독업무, 제기¹²⁾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형사재판적인 특성

8)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532면.

9) 즉,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주의적 소유조직간의 분쟁은 종래 자본주의국가에서 행하여진 이른바 ‘남아빠진’ 민사재판제도에 따라 해결된다는 것은 사회주의혁명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논리에 입각해 있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노동당의 정책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식의 법에 얽매이지 않는 분쟁해결제도으로써 국가중재제도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W. E. Butler 저, 李充榮 역, 『소비에트법』(대륙연구소 출판부, 1990), 168면.

10) 북한이 민사재판제도와 달리 운영되는 국가중재제도를 두고 있는 배경은 “경쟁과 생산이 무정부성의 경제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국 전사회적 규모에서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절·통제하기 위한 국가인 조절·통제를 실현하는 법적 형식으로서의 국가중재도 존재하기 않는다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 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국가가 전사회적 규모에서 생산을 조직하고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제에 대한 제도도 있게 된다”는 주장에서 엿볼 수 있다. 리 황, 앞의 책, 28면.

11) 북한 중재법에서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대표자, 담당자, 근로자들을 ‘개별적 일군’으로 호칭하고 있다.

과 행정적인 특성까지 병유하고 있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분쟁해결 및 인민계획경제수행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북한의 사법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통일에 대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념으로는 민사소송절차와 그 기능상 상당히 중첩되는 위와 같은 국가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간혹 북한이나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국가중재제도를 소개하면서 ‘중재’라는 용어에 따라 국가중재를 일반중재와 비슷한 중재제도를 파악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에서 실제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민사소송절차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중재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중재제도인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로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를 고찰한다.

II. 研究의 限界

알다시피 남북은 1992년 2월 19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함)가 채택·발효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남북한 쌍방이 남북화해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률실무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었다. 그러나 일련의 남북관계의 변화는 다시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말았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한 연구, 특히 북한법 및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진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 ‘제기’란 국가중재기관이 사건처리와 검열·감독과정에서 발견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경제기관·기업소·단체들로 하여금 그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13) 이에 관해 북한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조절통제를 실현하는 법적 형식으로서의 국가중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차별성을 강조한다. 『민사법사전』, 앞의 사전, 532면.

우리의 북한법 및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보적이고 자료정리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북한의 체제자체가 그들의 기본적인 법령조차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고, 또 법령을 공개하더라도 제정 또는 개정의 이유와 배경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 및 제도의 실상을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한편 우리의 북한법 및 사법제도연구가 남북한 대결구조하에서 북한체제와 북한법,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을 통한 남한의 비교우위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방법론적으로는 남한법과의 단순비교에 의거하여 차이를 강조하고 북한의 열악성을 부각시키는 다소 편향적인 시각에 따라 진행되어 온 데에도 그 이유가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¹⁵⁾

본고에서 다루는 북한의 중재제도와 관련하여 북한은 그 기본법인 중재법이나 각종 관련규정 원문을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그 분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중재법 등의 원문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에서 1985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중재법』, 『중재법학』 등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북한은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북한의 중재제도, 특히 국제무역중재제도에 관한 보다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은 다행이다.

북한은 북한식의 독특한 분쟁해결시스템인 국가중재제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관련 법조문과 실상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북한의 분쟁해결제도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그 실제사례의 검토는 필수적이거나 현재 북한의 중재에 관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분쟁사례와 그 해결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14)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법원행정처, 1995), 6면. 북한의 그들의 법률과 사법제도의 실상을 공표하기를 꺼려 하고 있으며, 남한의 사법제도에 관한 이해정도도 후진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발간된 각종 법학서적을 보면, 우리의 법률과 사법제도를 비난하는 내용이 거의 빠짐없이 게재되어 있으나 그 비판적 시각이 당부를 떠나 자유민주국가에서의 법제에 관한 기초적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기술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5) 張明奉, “북한법·통일법연구의 성찰과 과제”, 『통일경제』, 통권 제9호(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9); “북한법연구”, 『분단반세기 북한연구사』(한울아카데미, 1999), 99~122면.

제 2 절 北韓의 國家仲裁制度의 原理와 特徵

I. 北韓의 司法과 行政의 原理

1. 民主主義 中央集權制 原則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일반적 통치원리인 권력통합의 원칙, 즉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입각하여(제5조) 국가권력을 조선노동당, 국방위원장, 최고의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내각 등에 집중시키고, 그러한 기관인 통일적인 지도하에서 각 하부 주권기관과 집행기관, 재판 및 검찰기관과 같은 국가기관¹⁶⁾이 일정한 내용의 국가권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은 1992과 1998년 두 차례 개정된 사회주의헌법¹⁷⁾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이란 모든 주권기관들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직접선거되어 그 앞에 책임을 지며, 각종 집행기관 등은 주권기관들에 의하여 선임 또는 조직되어 그 앞에서 책임을 지고, 또 하부 국가기관은 상부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고 지방 국가기관은 해당 중앙 국가기관의 지도 하에서 활동하며, 인민대중들도 창의력을 가지고 국가사업과 국가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주권을 민주주의적인 선거제도에 의하여 조직하고 국가의 최고주권행사를 중앙집권적 통일체에 의하여 실현한다는 것이다.¹⁸⁾

16) 권력통합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국가기관은 ‘계급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앞에 나서는 일정한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일정한 체계를 이루며 전국가적으로는 하나의 통일적인 국가기구체계를 이룬다”라고 한다. 북한의 국가기관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남한과 달리 프롤레타리아독재 실현에서 각 국가기관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에 따라 ‘주권기관’, ‘집행기관’, ‘재판 및 검찰기관’으로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17)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의 개정내용에 관해서는 張明奉, “최근의 북한사회주의헌법개정(’98. 9. 5)의 분석: 배경·내용·평가 및 정책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민족통일연구원, 1998), 1~40면.

18) 북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관한 상론은 張明奉, “北韓憲法上の 國家統治機構體系에 관한 序說的 考察”, 『公法研究』, 제14집(한국공법학회, 1986), 198~201면.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서 민주주의가 중앙집권제 보다는 용어상 선행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중앙집권제를 우선시키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 당은 지난 날에는 민주주의가 발양되는 조건에서 중앙집권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여 왔지만 지금은 우리 당이 집권당이고 유일당이며 당대열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제원칙이 확고히 선행되는 조건에서 민주주의 보장되어야 한다”¹⁹⁾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과 국가기관 분류방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의 구별에 대한 무의미성을 제기하게 된다. 북한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하에서 사법과 행정은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작용에 불과하게 되므로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을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권력분립원칙²⁰⁾을 헌법상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달리 북한에서는 사법과 행정을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복무하는 집행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법작용과 행정작용을 병유한 독특한 국가중재제도,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중재기관도 존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¹⁾

2. 北韓의 司法의 概念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법’이라 함은 그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때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독

19)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을 이루는 조직성과 통일성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개개인의 분산성과 자유주의를 체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된다. 한정국,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관한 리론’, 『법학논문집 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14면.

20) 북한은 삼권분립을 “부르주아 독재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 진출을 마비시키려는 자본주의국가의 기만적이고 반동적인 권력조직”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지배계급의 국가권력은 한 계급의 전일적인 권력으로부터 결코 분립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부르주아국가에서는 의회, 정부, 사법기관이 다같이 자본가계급의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기구이며 동일한 계급적 본질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법학사전』, 앞의 사전, 375면.

21) 『北韓司法制度概觀』(법원행정처, 1996), 404~408면. 이 연구서는 북한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잘 정리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재제도에 관해서도 심층분석하고 있다.

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²²⁾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제103조)”고 규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의 태도와 달리 북한의 ‘사법’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원칙 하에서 형성적·집행적·기능적인 성격의 국가작용으로 변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에 있어서의 사법은 다른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기관 등의 지도 하에²³⁾ 계급적 독재실현에 복무하는 법을 해석, 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의 권력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나아가 재판기관 뿐만 아니라 검찰소, 공증인 등 북한에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으로 지칭되는 기관이 최고주권기관 등의 지도를 받아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권력적 활동도 모두 광의의 사법활동 내지 사법사업으로서, 그 활동의 원칙과 실제에 있어서 행정집행행위와 거의 다르지 않은 사법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와 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국가권력을 결합해 주는 것이고, 지배계급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피지배계급에 대하여 독재를 행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사회주의국가의 사법은 위와 같이 계급적 독재실현에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법을 적용, 집행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복무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강력한 무기²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북한에 있어서의 사법 및 재판기관의 의의, 위치와 역할 등을 잘 표현하여 주고 있으며, 위와 같이 북한에서의 사법의 개념은 분쟁해결의 소극적·수동적 기능, 신분이 독립한 법관에 의

22) 권영성, 『헌법학개론』(法文社, 1999), 721면.

23) 大內憲昭, 앞의 책, 169頁. 다만 그 지도는 정치적 지도를 의미하므로 실무적인 것까지 간섭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金正日, “社會主義法務生活化することについて”, 『社會主義法務生活について』(チュチェ思想國際研究所, 1985), 142頁.

24) 『법학사전』, 앞의 사전, 276, 330면.

한 재판, 비정치적인 법인식 권능,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라는 기능적 요소를 포함하는 우리의 사법개념과는 그 출발점부터 달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기관·기업소·단체를 사이에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을 심의해결하는 활동²⁵⁾을 국가중재라 표현한다면 이 역시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의 사법적 특징과 국가중재기관의 사법기관 내지 재판기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北韓의 行政의 概念

북한에서 ‘행정’이라 함은 법령집행활동으로서 주권적 활동과 재판·검찰 활동을 제외한 모든 관리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인민 생활, 상업, 수매양정, 도시경영, 국토관리, 교육, 문화, 보건위생, 노동계획, 통계, 재정부기 및 생산과 건설 등 광범위한 범위에 거쳐 실현되는 법령집행활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²⁶⁾ 북한에서의 위와 같은 행정 내지 행정권에 대한 형식적인 개념파악은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개념을 사상(捨象)하고 기능적인 측면만을 본다면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행정의 개념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행정의 개념, 특히 사법과 대비되는 의미에서의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권력통합이나 권력분립이나라는 헌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국가중재기관이 분쟁을 심리해결하는 외에 인민경제계획과제를 받은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계획 및 계약규율을 엄격히 지키는가를 일방적으로 검열·감독하고, 그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제의(제기)를 하며 ‘자료폭로사업’, 법규해설을 구체적인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들의 사상의식개조에 적극적 이바지한다고 한다면,²⁷⁾ 이는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의 행정의 성격과 국가중재기관의 행정기관 내지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25) 위의 사전, 604면.

26) 위의 사전, 725면.

27) 리 황, 앞의 책, 16면.

II.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意義와 特徵

1. 國家仲裁制度의 意義

(1)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對象

북한에서 국가중재는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 규를 위반사건을 심리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²⁸⁾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이에 관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경제거래관계를 국가의 유일한 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제때에 정확히 맞물려주고 어김없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가가 경제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계획, 계약규율을 세워 나라의 자연자원과 원료, 노동력 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²⁹⁾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계획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 및 계약규율 위반현상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인민경제계획에서 예견된 모든 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해 나갈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현상에 대해 엄격한 법적 통제를 시행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고 국가와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필요가 있으며,³⁰⁾ 이러한 업무수행은 통상의 재판소조직이 떠맡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국가중재제도 내지 국가중재 재판제도이므로 북한에 있어서 국가중재제도는 국가와 노동당이 계획한 경제정책의 실현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해 법적인 통제장치를 부여한 것에 다름 아니게 된다. 또한 이렇게 인민의 경제활동을 장악함으로써 개개인의 사상까지 당이 의도하는 바대로 개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³¹⁾

28) 위의 사전, 71~72면.

29) 한편 북한은 1954년 12월 27일 내각 결정 제151호로 『국가중재기관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1960년 12월 8일 내각 결정 제68호로 『국가중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들 규정에 관한 설명은 『민사법 사전』, 앞의 책, 72~74면.

30) 리 황, 앞의 책, 14면.

북한의 국가중재제도가 그 대상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것은 대상의 견지에서 모든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중앙집권적 계획과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본성적(本性的)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 사이에 경제체제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민사분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것이다.

(2) 北韓 國家仲裁制度的 方式

북한은 국가중재제도를 “인민경제계획 수행과정에 경제기관·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문제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명령과 지시의 절차로 해결하면서도 사건당사자들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맞게 심리해결하는 국가활동의 한 형식”³²⁾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적 유기체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경영활동은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와 통제에 철저히 복종해야 하지만, 그 반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과도적 특성³³⁾을 반영하여 국가의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지도가 보장되는 한계 내에서 실현되는 경영상의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므로,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이러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명령, 지시와 경제기관 등의 경영상 독자성을 중재절차 내에서 적절히 조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완성되면 각 경제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분쟁은 완전히 국가의 중앙집권적 명령과 지시절차로만 해결하여야 하는데 아직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완성되지 못하였으므로 개별적인 경제기관·기업소·

31) 위의 책, 16면;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05~406면.

32) 『민사법 사전』, 앞의 사전, 72면.

33) 사회주의사회는 아직도 사람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 있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지 못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과도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같은 국영기업소들 사이의 물건거래라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한 등가계산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리종렬, 앞의 논문, 208면. 따라서 사회주의의 과도적 특성이 사라지는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독자성을 가지는 기업소나 등가계산의 개념도 필요없다는 것이 된다.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06~407면.

단체가 일정한 내용의 경영상 독자성을 가지고 국가소유의 관리자 내지 실행자로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그들 사이에 인민경제계획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분쟁문제를 사건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쌍방 당사자의 변론에 기초하여 그들의 권리의무의 맞게 심리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국가중재기관이 제기된 분쟁문제를 경우에 따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명령과 지시절차로서 해결하는 것이 사회주의경제체도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 사건당사자들의 상대적 경영상 독자성에 기초하여 쌍방의 변론에 따라 그들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맞게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체도의 과도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된 두 측면을 이룬다는 주장이다.³⁴⁾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중재기관은 사건당사자 또는 '개별적 일군'에게 행정법적 제재와 민사법적 제재를 다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3)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機能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민사재판과 유사한 재판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듯이 이론적 배경 하에서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민사재판과 유사한 중재재판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절차 내에서 당사자나 '개별적 일군'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검열·감독, 제기, 자료포로사업, 법규해설 등의 다양한 집행 내지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³⁵⁾ 보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2.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特徵

(1) 概說

사회주의국가의 국가중재제도는 사회주의국가의 수립과 함께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 그 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상의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³⁶⁾

34) 리 황, 앞의 책, 10면.

35)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07~408면.

36)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국가중재제도의 연혁적 발전상황에 관해서는 위의 책, 408~419면.

국가중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구소련의 경우 일시적으로 국가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통상의 재판관할권에 포함시키는 다소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북한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 국가와 사회주의 조직들 사이의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경제적 분쟁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련전문가에 의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 및 분쟁예방을 위해 국가중재기관을 설립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통상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을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상의 분쟁이라는 명목 하에 국가중재기관에 이관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중재기관이 중재재판 등의 업무는 자본주의국가의 일반적 중재제도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며, 민사재판과 행정절차를 혼합한 제도이면서 그 각 절차와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사회주의국가 특유의 분쟁해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 一般 仲裁制度和 差異點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국가에서 중재라 함은 “국가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의 강제절차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그들이 선정하는 재판관인 중재인의 재판에 따르기로 약정하여 그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재판절차³⁷⁾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그 이름만 ‘중재’이지 자주적·임의적 분쟁해결제도가 아니라 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중재제도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합의에 따라 중재기관의 재판권에 복속(服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중재기관의 재판대상에 속하는 분쟁은 법률적으로 당연히 국가 중재재판기관이 재판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민사재판활동만을 수행하지 않고 벌금의 부과, 검열·감독, 제기 등의 행정적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일반

37) 목영준,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외국의 상사중재제도와 비교하여-”, 『민사판례연구』XIV, 1992, 470면; 小島武司, 高桑 昭 編, 『注解仲裁法』, (東京: 靑林書院, 1988), 3頁.

적인 중재제도와 구별된다. 그러나 전문적, 기술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인물이 중재원이 된다든지, 1심급제를 채택하고 있다든지, 원칙적으로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든지 하는 등의 일반적인 중재제도와 유사점도 찾아볼 수 있다.

(3) 北韓의 民事裁判과 差異點

북한의 중재제도를 두고 볼 때,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민사재판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전에 이를 북한의 민사재판과 비교해 보더라도 양자의 차이점이 상당함을 엿볼 수 있다.³⁸⁾ 북한의 중재제도는 민사재판에서처럼 중재재판에 있어서도 원고와 피고가 사건당사자로 나서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주장과 증명의 부담을 지게 되지만, 중재재판의 당사자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만이 될 수 있고 그 재판대상도 인민경제계획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문제에 한정된다.

또한 중재재판의 제기가 당사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로 되어 있고 재판절차 내에서 당사자 마음대로 합의하거나 화해할 수 없으며, 사건당사자 또는 ‘개별적 일군’에게 행정적 벌금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중재원은 판사처럼 각급 주권기관으로부터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임명되고, 인민참심원은 중재재판에 참가하지 않으며, 심리공개의 원칙도 요구되지 않는 점 등에서 민사재판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³⁹⁾

(4) 北韓 行政節次와 關係

북한의 국가중재절차를 보면, 행정활동에서처럼 계획 및 계약규율을 위반한 경제기관·기업소·단체에게 물질적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요구에 비추어, 적절한 때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가 없어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명령과 지시로 면제시킬 수

38) 김일성은 “중재 자체도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시비를 가르는 것인만큼 결국 경제문제에 대한 재판과 같다”고 교시하였다. 리 황, 앞의 책, 4면.

39) 북한 민사재판절차에 관한 상론은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법원행정처, 1995); 『北韓法の體系的考察(Ⅰ)』(법무부, 1993) 참조.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민법상의 제재금 외에 행정법상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국가계획과 모순되게 맺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시정시책을 강구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물자와 자재·자금의 거래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몰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가중재는 행정활동과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중재는 행정활동과 그 형식과 절차에서는 다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행정활동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는 데에 비해, 국가중재는 중재원의 지도로 사건당사자들에 변론에 기초하게 된다. 또한 행정활동을 하는 데는 특별한 행동규범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재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해 미리 법에 정해진 순차적·체계적 단계를 밟아야 한다. 요컨대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그 형식과 절차는 민사재판과 유사하나 그 내용은 적극적 국가권력작용인 행정활동과 유사하므로 결국 사법과 행정의 두 기능이 혼합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⁴⁰⁾

(5)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國家仲裁制度和 差異點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구소련의 국가중재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그것과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동독 또는 중국의 국가중재제도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어떤 국가중재제도보다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북한식의 사회주의원칙 내지 주체사상에 철저히 경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그들의 국가중재제도를 ‘공화국중재’⁴¹⁾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⁴²⁾

현재 구소련의 국가중재제도는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중재대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겪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동독의 국가계약법은 동·서독 통일 직전에 이미 해체되어 버렸으며, 중국의

40)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21면.

41) 리 황, 앞의 책, 4면.

42) 북한은 이에 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와 법 건설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중재법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어떤 문제들을 맑스나 레닌의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시대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예견할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 놓았습니다. …” 라고 하여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리 황, 위의 책, 머리글.

국가중재제도도 역시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일반중재제도로의 숨가쁜 변신을 꾀하는 등 북한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국가중재제도도 폐지·축소되거나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만이 국가중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국가중재제도와 국가중재기관의 소속, 중재원의 임명,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재판의 대상과 당사자, 국가중재재판관할, 재판절차, 재결의 채택과 그 집행방법, 재심사절차, 중재재판이외의 직무와 권한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⁴³⁾

3. 北韓 仲裁法의 基本原則

북한의 중재법은 그 기본원칙으로서, ‘중재사업에서 국가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한 원칙’, ‘중재당사자인 경제기관, 기업소들간의 호상 통제에 중재기관의 법적 제재를 옹계 결합할데 대한 원칙’, ‘중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전면성을 보장할데 대한 원칙’을 열거하고 있다.⁴⁴⁾ 이러한 기본원칙은 북한의 중재법의 본질과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⁴⁵⁾

첫째, 북한이 중재사업에서 국가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한다는 것은 중재일군들이 제기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개별적 경제기관들의 이익에 국가적 이익을 앞세우며 개별적 경제기관들의 경영활동을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요구에 철저히 복종시킨다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적 이익,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 배치되는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 개인주의를 배척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중재당사자인 경제기관, 기업소들간의 상호통제에 중재기관의 법적 제재를 옹계 결합한다는 것은 계획집행에 대한 경제기관들 사이의 횡적인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면서 여기에 국가중재기관을 통한 국가의 중앙집권

43) 이에 관해서는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08~419면.

44) 리 황, 앞의 책, 17~26면.

45) 『북한의 중재제도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법원행정처, 1995), 27~28면.

적·중적인 통제와 제재를 옹계 배합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경제 기관들 사이의 횡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방도로서는 사전청구제도, 민법상의 물질적 책임의 부과 등을 들 수 있고, 국가의 중앙집권적·중적인 통제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도로서는 중재기관의 발의에 의한 중재사건의 제기, 중재재판심리에 있어서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의 배제, 행정법상의 물질적 책임의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중재활동에서 사상교양과 법적 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중재기관이 계획 및 계약규율을 위반하는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을 정치사상적 방법과 국가권력적 방법을 다같이 결합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여기에서 현지공개중재재판, 범규범에 대한 해설사업, 계획 및 규율위반에 대한 자료폭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중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중재일꾼들이 제기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밝히고 확정한다는 것을 말하며, 전면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문제해결에 의의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사실사정들을 여러 측면에서 따져보고 남김없이 조사해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하여 현지조사사업, 중재일꾼들에 대한 법률지식과 경제실무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⁴⁶⁾

Ⅲ. 計劃經濟體制下的 國家仲裁制度

1.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

사회주의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⁴⁷⁾ 무엇을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 생산하고, 생산된 물품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결정·수행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하의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의 국유 등에 의해 사회주의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른바 당정국가체제에서 당적 영도가 강조되는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지도·관장하게 된다.

46) 『민사법 사전』, 앞의 사전, 537~539면.

47) 방영찬, 『기호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박영사, 1995), 69면.

이에 의해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의 역할과 한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지도·관장된다는 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헌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⁴⁸⁾ 그런데 추상적 존재인 국가는 그 소유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국가소유권은 권리, 의무의 독자적 당사자인 국가기관·기업소를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국가기관·기업소는 ‘독립적 경비예산제’ 또는 ‘독립채산제’의 원칙⁴⁹⁾에 입각하여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 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이용·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협동단체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국가기관·기업소와 유사한 방법으로 협동단체적 소유재산을 이용·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생산·분배활동을 그들의 경영상 관리권에만 맡겨놓아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총괄적으로 계획·지도·감독할 기관이 필요하며 북한에서는 그 역할을 국가계획위원회 및 그 산하의 도(직할시), 시(군) 지구계획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각 경제기관·기업소·단체가 1년 단위로 생산목표와 예산을 정하여 해당지구 계획위원회에 제출하면 국가계획위원회가 이를 종합하여 각 경제기관·기업소·단체별로 생산할당량과 예산배정액을 정하고⁵⁰⁾ 최고 인민회의의 승인을 거쳐 인민경제계획이 확정된다.

48) 북한은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경제부문의 조항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비롯한 경제관련부문을 북한의 경제환경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 앞의 책 35~46면.

49)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기업소들이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 밑에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등가계산에 기초하여 자체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이며, 독립적 경비예산제는 일부 국가기관(경제기관)이 독자적 부기(簿記)밸런스(balance)에 기초하여 경제적 독자성을 가지며 활동하여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을 말한다. 『민법 1』, 앞의 책, 85~86면.

50) ‘대안의 사업체계’ <이에 대한 설명은 주 40) 참조>가 도입되기 전인 1961년까지만 해도 인민경제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생산목표량인 ‘통제수자(統制數字)’를 하부기관·기업소 등에 시달하는 중앙집권적 하향방식에 따라 수립되었다.

각 경제기관·기업소·단체는 확정된 인민경제계획상의 생산할당량과 예산에 따라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을 수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다른 경제기관·기업소·단체와 자재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등의 계획에 기초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⁵¹⁾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중재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國家仲裁制度的 役割과 限界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의 활용과 역할에 대하여, 또 국가소유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가중재재판의 승패에 따라 경제기관·기업소·단체나 그 '개별적 일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에 관한 실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는 엄격한 통제계획경제체제 하에서 계획에 따라 배당된 예산과 할당량에 따라 생산·분배활동을 수행하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가 경영상 관리권의 확대라는 인센티브만을 위해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중재재판의 제기가 많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각 기관·기업소 등은 계획연도 내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생산·분배활동을 할 수 있고 예산이 남으면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각 기관·기업소 등이 사업전망이 밝아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 다른 기관·기업소 등의 예산을 이관받아 올 수 있으며 그 예산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재부족으로 배정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기관·기업소가 태반인 만큼 예산을 제재금으로 지불하는 기관·기업소 등으로서도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고 한다.⁵²⁾

51) 참고로 북한에서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 등 사회주의적 소유조직간의 결제(화폐유통)는 현금이 아닌 무현금유통의 방법에 의한다. 자재 등 공급계획에 의하여 생산물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조건하에서는 현금이 필요없으며 여기에서는 자재의 수급 및 공급이 계획에 예견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득보, 『주체의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의 법칙과 범주(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428면~429면;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24~425면.

52) 위의 책, 426면.

중재재판에서 재결과 결정이 선고되면, 당해 당사자나 그에 속한 '개별적 일군'은 재결 등에서 지적된 제재의 구체적 실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어느 경제기관·기업소에게 중재재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재결이 선고되고 집행되면 이를 지불한 경제기관 등은 그만큼 배정된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므로 경영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고 위약금 지불로 인하여 생산원가가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들의 상급(53) 등 지급에 영향을 주게 되기도 한다. 또 전년의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다음 계획연도에서의 예산배정, 생산량할당 등에 있어 불이익을 입어 지배인 등 책임자들이 경영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제 3 절 北韓 國家仲裁制度의 發展⁵⁴⁾

북한의 국가중재에 관한 법령을 살펴 보면, 이 법령의 처음 제정된 것은 제2차 1개년 계획기간 중(1948. 2. 29)이었다. 초기에 북한은 경제전반에 걸쳐 스탈린식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목표로 삼아 구소련이 건국 초기부터 채택한 국가중재제도를 답습하여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법령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결정 제120호로 채택한 『국가경제기관, 국영기업소 및 공리단체 상호간의 계약제도와 결제제도 확립에 관한 결정』과 『북조선인민위원회 계약중재원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최초의 국가중재관련법령으로서, 이에 의해 계획적 계약제도가 창설되었고 그 정확한 실시를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국가중재제도가 발족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 내에 '계약중재원'(契約仲裁院)이 설치되게 되었다.

창설 당시의 북한의 국가중재제도는 새로 실시되는 계획적 계약제도의 확립이라는 행정사업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국가중재기관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체결의 지도, 계약등록사업을 통하여

53) 상급은 국가계획을 질적 양상으로 넘쳐 수행하였을 경우에 모범적인 집단 또는 개별적 근로자들에게 기본생활비 이외에 더 지급하는 추가생활비이다. 기본생활비는 소속 기관의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이 보장되고 있다. 리기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로동법제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4), 150면.

54) 이에 관해서는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83~84면.

계약이 법적 요구에 맞게 맺어지도록 통제하는 행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⁵⁵⁾ 그 후 1949년과 1950년 사이의 제1차 2개년 인민경제계획의 본격적인 수행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자 경제기관·기업소들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재결도 늘게 되었고 국가중재재판의 역할 또한 증대되었다. 북한은 이 시기의 국가중재기관의 역할을 국영기업들의 우선적인 발전을 고무하고 잔재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법적으로 제지함으로써 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물질적 토대의 구성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⁶⁾

북한에서 6·25 전쟁기 동안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물자자원을 제때에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만큼 국가중재기관의 역할도 한층 증대되었다. 북한은 전시생산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국가적·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중재원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고(1952. 11) 국가중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전시환경에 적응하도록 국가중재기관들의 체계를 ‘국가중재원’과 ‘도중재원’으로 개편하였다.⁵⁷⁾

북한은 국가중재원을 내각에 직속시키고 도중재원은 해당 도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국가중재원에만 속하는 독자적인 도급기관으로 구성하였다. 또 중재기관의 권한도 강화하여, 국가중재원장에게는 계약제도실시와 관련한 규정해석 및 지시를 하급 중재기관뿐만 아니라 경제기관에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위법사실의 시정대책을 상급기관에 통보하거나 검찰기관에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할 것을 제기할 수도 있게 하였다. 도중재기관의 권한 역시 강화해서, 국가중재원에 속하는 사실이라도 사실확정의 신속성·증거수집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중재원에게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55) 계획적 계약의 체결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국가중재제도의 큰 특징이다. 이에 북한도 전후 복구건설에 들어서던 시기에 국가중재기관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의 계약 및 계약의 규율확립에 대한 통제적 기능을 높여야 할 요구를 반영한다고 강조되었다. 『민사법 사전』, 앞의 사전, 72면.

56) 이 무렵인 1950. 3. 1. 북한은 『재판소구성법』을 채택하여 내각의 사법성 산하에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군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를 두었고, 검찰조직도 이에 대응하여 구성하였으나, 재판소와 국가중재기관은 별개의 조직이었다. 리 황, 앞의 책, 33면.

57) 리 황, 위의 책, 34면.

6·25 전쟁이 끝난 후 북한은 훼손된 인민경제를 복구·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 기초를 다진다는 방침 아래 경제부흥 3개년 계획과 제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인민경제계획에 포함되는 계약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가중재기관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북한은 『국가중재기관에 관한 규정』(1954. 12)⁵⁸⁾, 『국가중재기관의 중재사건 심리 및 해결규정』(1955)을 마련하여 위 3개년 및 5개년 계획 시행의 전제조건이 되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⁵⁹⁾

이후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제1차 7개년 계획 등으로 경제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냉전대립과 사회주의권 분열의 영향으로 이른바 북한식의 사회주의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와 규율의 강화에 더욱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제시된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 또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60년 12월에 『국가중재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여 계획의 일원화를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중재기관의 사업체계를 개편하였고 또 계획의 세부화방침에 따라서 중재기관이 취급·처리해야 할 사건관할의 범위를 현저히 확장하였다.⁶⁰⁾

이후 1970년대 초엽부터 경제개발 제1차 6개년 계획과 맞물려 전개된 3대기술혁명운동의 영향으로 중재사건은 더욱 증가되었고 사건부담도 가중되었다. 사상과 행동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철저성이 강조된 탓이기도 하겠지만 각 경제기관·기업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중재기관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었다. 국가중재 관련규정도 그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는 바, 이에 북한은 그와 같은 사건부담을 경감하고 중재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971년 9월 다시 『중재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중재사업에 관한 규

58) 『민사법 사전』, 앞의 사전, 72~73면.

59) 이 즈음인 1959. 9.말경 국가관리기관 통·폐합정책의 일환으로서 사법성이 폐지되고 사법성의 사법행정상의 지도기능 중에서 재판소에 관한 부분은 최고재판소로 이관되었다. 이 조치로서 하급재판소에 대한 사법행정상의 지도기능이 최고재판소에 집중됨으로써 재판상의 감독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상의 지도체계가 중앙에 완전히 통합되었다.

60) 이에 관해서는 『민사법 사전』, 앞의 사전, 73~74면.

정』은 계획수행에 대한 국가중재기관의 통제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건처리에서의 그의 권한을 대폭 확장하였다. 특히 이 규정에서는 제재를 독립적인 장으로 두어 중재기관이 가하는 제재의 형태와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재를 통하여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경제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자 하였다고 한다.⁶¹⁾

한편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이 개정·채택되고, 1976년 1월 10일 『재판소구성법』이 채택되었는데, 이전에 내각, 중앙인민위원회 또는 정부원에 소속되었던 국가중재기관을 재판소의 조직으로 흡수하였다. 북한 재판소구성법은 제25조에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재판소는 중재활동을 통하여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70년대 후반부터는 남한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북한체제의 취약성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시대적 상황과 제2차 7개년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중재에 관한 규정은 다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이른바 주체적인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구현하고 특히 1965년 이래 계속 강조되어 온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계획실행을 위한 조직적인 경제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계획수행에 대한 재정적·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북한은 중재기관의 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목표로 새로운 『국가중재부에 관한 규정』과 『중재재판규정』을 연달아 채택하였다.⁶²⁾ 이것이 북한의 국가중재에 관한 규정의 발전내용이다.

한편 북한의 ‘국가중재부에 관한 규정’과 그에 기초한 ‘중재재판규정’은 국가기구체계에서의 중재기관의 지위를 훨씬 상승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즉 종전까지 중앙재판소의 한 개의 부서로 되어있던 중재기구를 중앙인민위원회에 직속하는 독립적인 중앙기관으로 격상시킨 것이다.⁶³⁾ 중앙재판소

61) 이 규정의 채택에 의해 기존의 『국가중재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어졌다. 『민사법 사전』, 위의 사전, 74면.

62) 위 각 법령의 채택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내용으로 미루어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인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사이에 채택된 것으로 추론된다.

63) 리 황, 앞의 책, 41면.

의 중재재판부에서 독립된 국가중재부로 재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기관·기업소들에서의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권한도 현저히 확장하였다. 특히 국가중재에 있어서의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적·세습적 지배원칙이 반영되고 국가중재를 통하여 당의 경제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중앙중재기관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급중재기관에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제 4 절 北韓 國家仲裁制度 概觀

I. 國家仲裁機關

1. 國家仲裁機關의 組織·構成

(1) 組織體系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그 조직적 측면에서 많은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현재는 ‘국가중재부’라는 단일한 조직·구성체계에 평양에 중앙중재기관이, 각 도(직할시)에 도(직할시)중재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이 재판소조직에 속하는지, 또는 중국이나 구소련, 구동독의 경우처럼 중앙인민위원회에 직속하는 독립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⁶⁴⁾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인 1978년부터 1984년 사이에 『국가중재부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여 종전 중앙재판소의 일개 국으로 있었던 중재기구가 중앙인민위원회에 직속하는 독립적인 중앙기관으로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⁶⁵⁾ 1976년 북한의 『재판소구성법』은 제25조에서 “재판소는 중재활동을 통하여 인민경제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추동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⁶⁾

64) 『북한사법제도개관』, 앞의 책, 427면.

65) 리 황, 위의 책, 41면.

66) 이에 관한 분석은 『국가중재부에 관한 규정』이 공개되면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의 조직·구성체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그 규정을 포함한 국가중재에 관련한 일체의 법령 및 국가중재기관의 현황을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법 교과서의 설명과 재판소구성법의 조문만에 의거해 조직·구성체계를 추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중앙재판소나 도(직할시)재판소의 조직체계에서 이탈하여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독립한 집행기관으로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⁶⁷⁾ 그러나 삼권분립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취하고 있는 북한체제 하에서는 국가중재기관이 재판소조직에 속하든 행정조직에 속하든 그에 따라 그 역할과 임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⁶⁸⁾

(2) 國家仲裁機關의 種類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중앙중재기관과 도(직할시)중재기관의 2급 1심체 체제로 되어 있으며, 시·군지역에는 국가중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북한은 중앙중재기관을 ‘국가중재부’로, 도(직할시)중재기관을 ‘도(직할시)중재처’로 각각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분명하지 않다.⁶⁹⁾ 재판소나 검찰소 조직과 달리 시·군지역까지 국가중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국가중재기관은 중앙집권적 원칙에 따라 지방분위주의, 기관분위주의를 타파하고 당의 경제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므로 시·군지역까지 국가중재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또한 중앙중재기관에는 중재원회의가 설치되어 있어 중재재결·결정에 대한 재결, 중재사업에 대한 지시

67) 이에 대한 추론에 관해서는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28~429면.

68) 북한의 중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조직체계에 관해서 북한인사들의 진술과 증언이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책, 429면.

69) 북한 헌법과 재판소구성법에 의하면, 재판소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고,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중앙재판소 판사를 선거 또는 소환하며, 지방주권기관인 각 지방인민회의가 해당 재판소의 판사를 선거 또는 소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각급 재판소의 판사가 그를 선출한 해당 주권기관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중앙재판소가 하급 재판소를 직접 관장하거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검찰소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중앙검찰소 소장을 선거·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 또는 해임하고 기타 검사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일괄하여 임명 또는 해임하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고 함으로써 검찰소 조직은 그 자체가 하나의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서 중앙검찰소가 하급 검찰소를 하급기관으로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국가중재기관의 조직체계는 검찰소의 그것과 유사하여 도(직할시)중재기관은 중앙중재기관과 함께 통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도(직할시)중재기관에는 중재원회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仲裁員의 資格과 任命

중재재판부를 구성하는 중재원은 판사가 아니며, 판사와는 달리 국가로부터 임명된다. 그러나 구체적 임명절차와 자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중앙인민위원회 또는 정무원 산하의 행정조직이 경제계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판사,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기술자, 연구원,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 중에서 중재원을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⁷⁰⁾ 구 소련에서는 각 해당정부의 각료회의에서, 중국에서는 새로운 중재법이 채택되기 전까지 소속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중재원을 각각 임명하였고, 구 동독에서는 각료회의에서 국가계약법원장과 그 대리를, 국가계약법원장이 계약법원과 중재법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3. 國家仲裁機關의 管轄

(1) 仲裁管轄의 分類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의 중재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재판관할과 마찬가지로 대상(對象)관할, 지역(地域)관할, 연관(聯關)관할로 나눌 수 있다. 그와 같은 관할 개념은 국가중재기관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 검열·감독 제기 등 행정업무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음에 중재관할의 분류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대상관할은 어느 급의 국가중재기관이 어떤 사건을 심리·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심급관할과 사물관할을 혼용한 개념이다. 북한의 중재법은 국가중재에 있어서 2급 1심제를 채택하여 중앙중재기관은 기본적으로 중앙기관이 피고로 나서는 분쟁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의 모든

70) 중국은 1994. 8. 31. 경제계약중재와 일반중재를 총괄하는 내용의 새로운 『중재법』을 채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판사경력이 8년 이상되는 자 등이 중재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劉榮軍, “中國仲裁法の制定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 23. No. 8, 1995, 859頁.

사건은 도(직할시)중재기관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중재기관은 원고가 중앙기관이건 지방기관이건 관계없이 피고가 중앙기관인 사건을 처리한다는 취지이다. 또 중앙중재기관은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과 관련하여 중앙기관과 그 '개별적 일군'들에게 행정법상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의(發議) 혹은 감독통제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사건들도 처리하며, 민·형사재판에서 중앙재판소가 그의 판단에 따라 어떤 사건이든 직접 제1심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직할시)중재기관의 대상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직접 심리·해결할 수 있다.⁷¹⁾ 중앙중재기관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어느 한 도(직할시)중재기관의 관할에 속한 사건을 임의로 다른 도(직할시)중재기관에 이송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둘째, 지역관할은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개념에 해당한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이나 중재법상 일반지역관할, 선택관할, 특수관할로 구분된다. 중재재판관할의 분류에서 지역관할은 같은 급의 중재기관들 사이에 있어서 사건을 심리해결할 권한의 한계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지역관할에 따라 각 도(직할시)중재기관이 맡아 처리할 사건들이 결정된다. 지역관할은 토지관할의 기본원칙에 따라 피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다. 즉 중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관할하며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공동피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 쪽을 택할 수 있다.

한편, 화물수송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화물도착지를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관할하며, 공급한 물자의 품질·품종·포장·규격·상표위반·수량 부족 등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중재재판에 대해서는 화물을 받거나 받을 곳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맡는다. 이를 특수관할이라고 한다.

셋째, 연관관할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는 먼저 사건을 접수한 중재기관에서 그 전체를 심리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건안에 중앙중재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는 그

71) 이는 사회주의국가 법원관할의 특징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급이익이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변칙적 재판관할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전체를 중앙중재기관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연관관할이라고 하며 남한의 민사소송법상 관련재판적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事件 移送

국가중재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민·형사재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건을 접수한 국가중재기관이 해당사건을 다른 중재기관에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사건의 이송이라고 하는데 사건의 이송은 일반적으로 사건처리의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민계획경제의 충실한 이해를 담보하기 위한 중재재판절차에서는 민사재판과 달리 관할위반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원의 재량에 따른 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⁷²⁾

중재원은 사건진행과정에서 관할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관할권을 가진 국가중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는 무엇보다 인민경제계획의 조속한 수행이 중요한 지상과제이므로 사건이 심리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 다만, 중앙중재기관에 속하는 사건은 어느 경우에도 이송하여야 한다. 중앙중재기관의 필요에 따라 그 지시에 의하여 중앙중재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다.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도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중재기관들 사이의 관할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송되어 온 사건을 접수한 중재기관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해당한 사건을 심리하고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4. 國家仲裁機關과 仲裁員의 獨立

북한의 1992년 헌법을 보면, 남한헌법과 같이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제159조)고 규정하여 형식적인 ‘재판소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소조직의 형식적인 독자성은 인정하면서도 재판활동의 성

72) 이에 비해 북한 민사소송법에서는 남한의 민사소송법과 같이 재량에 의한 이송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62조에서 “인민재판소는 자기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판소에 보내려는 경우에는 중앙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재판소 내부에서의 집단적인 토의 및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의 일정한 지도 및 통제는 필요하다는 태도로서, 사건을 집단적으로 토의하고 올바른 결론을 얻도록 재판소의 간부가 담당판사를 원조하는 것은 결코 재판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되는 위와 같은 ‘재판소의 독자성’의 개념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법관의 독립’이나 ‘사법권의 독립’의 개념과는 판이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중재기관이나 중재원에 대해서는 그 독립이나 독자성에 관하여 북한의 『중재법학』 등의 문헌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가중재기관이 행정기관에 속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도내에서는 독립이나 독자성이 문제될 바 없겠지만, 중재재판이라는 실질적인 민사재판활동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중재원의 독립이나 최소한 국가중재기관의 독자성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II. 國家仲裁裁判의 當事者와 對象

1. 國家仲裁裁判의 當事者

(1) 原告와 被告

국가중재재판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 민법상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국가중재재판에서도 당사자능력이 없다. 민법상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국가, 기관·기업소·단체, 그리고 공민이 있는데(북한 민법 제11조, 제18조), 국가와 공민은 아무런 제한없이 민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기관·기업소는 독립적 경비예산제국가기관(이른바 경제기관)이나 독립채산제기업소가 아니면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협동조합 등의 단체는 협동단체적 소유의 귀속자로서 경제적 독자성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은 모든 소유권자들 사이에 제기되는 어떠한 재산상 분쟁문제라도 모두 심리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유일한 인민

경제계획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이행 등의 견지에서 심리·해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때문에 중재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중에서도 인민계획경제를 수행하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만이 될 수 있다.⁷³⁾ 따라서 국가 자체나 개별적 공민, 외국인, 외국기업 등은 민사재판의 당사자는 될 수 있지만, 국가중재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인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외국법인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인민경제계획 내용여하에 따라서는 위 합영기업과 북한내 다른 기관, 단체들 사이의 계약으로 인한 분쟁은 국가중재기관의 관할사항이 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재판의 당사자가 될 여지가 있다. 또 무역회사도 북한의 대외무역거래보장기관인 기관·기업소들과 인민경제계획의 일종인 국가무역계획에 따라 수출입품 수급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중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⁷⁴⁾

(2) 當事者變更과 參加者 引入制度

북한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로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이나 피고로 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 있는 당사자로 바꿀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 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引入)할 수 있다(제27조). 그런데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절차보다 더욱 철저한 직권주의를 취하여 당사자의 인입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인입절차까지도 예정하고 있다.

73) 예컨대 국가의 편의봉사기업소들이 근로자들의 주문을 받아 옷을 지어 주거나 문화도구를 수리하여 주는 경우에 봉사기업소들은 자기가 받은 계획과제에 기초하여 그것을 수행할 목적으로 근로자들과 해당한 계약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 계획은 해당 봉사기업소 일방에게만 의무적인 것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의무성을 띠지 않는 것인 만큼 봉사기업소와 근로자들 사이에 맺는 작업중사계약은 계획적 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일반 계약으로 된다. 서창섭, “우리나라 계획적 계약의 법적 본성과 그 리행원칙”, 『법학논문집 4』(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223면.

74) 『공화국무역상사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임무』, 앞의 논문, 207면.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을 위해 조직된 기관·기업소·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의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재조직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 중재당사자였던 기관·기업소·단체의 채권, 채무를 승계받은 또 다른 기관·기업소·단체로 당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중재사건은 통상 인민경제의 연쇄된 고리들에서 일어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제기되므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인 피고를 잘못 선정하거나,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공동피고를 인입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민사재판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중재원은 국가중재재판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건의 사정에 따라 참가자를 인입할 수도 있다. 이 점이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검사의 역할을 인입될 참가자들이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중재원은 사건당사자인 경제기관·기업소·단체들에 대한 해당 상급기관의 지도·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을, 재정적 통제로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은행을 참가자로 인입시킬 수 있다. 중재재판절차에서의 참가자인입제도는 사건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참가자로 하여금 자기의 직능에 따르는 지도와 감독을 정상화하며 그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⁷⁵⁾

(3) 代理人

국가중재재판심리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자가 참가하여야 하지만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심리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가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국가중재재판에서도 대리인이 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도 당연히 대리인으로서 중재재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북한에서는 민사법률관계와 비교하여 국가중재재판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⁷⁶⁾

75) 리 황, 앞의 책, 71면.

76)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 앞의 책, 56면.

2. 國家仲裁裁判의 對象

(1) 國家仲裁裁判 對象의 擴大

전술하였듯이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인민경제계획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과 관련된 분쟁사건들을 관할·처리한다. 국가중재재판대상은 북한의 중재법 교과서에서 강학상 ‘국가중재재판관할권’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데, 이는 중재기관이 국가의 법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맡아 취급 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범위를 말한다.

북한에서의 국가중재의 대상과 내용은 당과 국가의 계획 및 활동에 따라 계속 변화를 겪어왔다.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인 전체인민의 소유, 협동단체적 소유가 확대됨에 따라 그와 같은 소유 및 관련계약에서 파생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중재재판의 대상도 확대되어 왔다. 인민계획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조직되고 북한정권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경제가 관리운영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중재재판기관이 맡아 취급처리하여야 할 사건의 범위와 대상, 중재재판관할은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재판소가 민사재판절차로 처리하던 경제기관·기업소·단체사이의 일련의 경제분쟁은 국가중재재판의 대상으로 된 것이 많다. 인민경제계획에 있어서 일원화, 세부화에 따른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앞으로는 민사재판의 대상에서 국가중재재판으로 이양될 분쟁 및 관할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國家仲裁裁判對象의 內容

가. 紛爭事件處理

북한 민법상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약을 실행하며 ‘등가보상(等價補償)⁷⁷⁾에 따라 경제관리에 있어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77)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서와 같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하에 결정되는 의미에서의 가격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사회적 필요노동의 지출에 기초하여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값(등가)에 따라 생산수단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를 등가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기

위하여 경제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에서 맺는 계약으로서, 경제기관·기업소·단체는 그 계약을 법령과 계획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제90조).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기본적으로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맺은 계약을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경제기관·기업소·단체사이의 분쟁사건들을 재판대상으로 삼아 관할한다. 의견차이로 인하여 계약을 제때에 정확하게 맺지 않는데 대한 ‘계약체결분쟁심의해결’⁷⁸⁾사건도 국가중재기관의 관장사항에 해당된다.

나. 罰金賦課事件

북한민법상 ‘계획적 계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사건이 민법상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과 관련된 행정벌금⁷⁹⁾부과사건은 행정법상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벌금적용에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과 관련한 행정벌금은 국가중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검찰소를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은 계획 및 계약규율을 위반하는 위법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중재기관에 벌금부과사건을 제기하여야 한다.

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앞의 책, 101면.

78) 계약체결분쟁심의해결절차는 일반적 계약에는 당연히 없는 제도이다. 서창섭, “우리나라 계획적 계약의 법적 본성과 그 리행원칙”, 『법학논문집 4』(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228면.

79) 북한법상 벌금은 형법이 개정되기(1974. 12. 19) 이전까지 형법상 벌금, 행정법상 벌금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형법 개정후 형법상의 벌금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행정법상 벌금으로 일원화되었다(형법상 벌금도 여전히 존치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김일수, “북한형법 40”,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85면; 북한에서 행정법상 벌금, 즉 행정벌금은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율을 위반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와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 기관·기업소·단체 및 그에 소속된 일꾼들에게 적용되는 국가중재재판절차상의 행정벌금과 그밖에 국가관리질서에 위반한 자, 국가·사회재산에 손해를 가한 자, 노동규율규정, 교통안전질서 등 일정한 분야에 관하여 제정된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행정벌금(중전의 형법상의 벌금중 일부가 이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행정벌금은 그 징수와 관련된 분쟁이 신소·청원 등의 행정적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 大內憲昭, 『朝鮮社會主義法の研究』(東京: 八千代出版, 1994), 141頁.

(3) 國家仲裁裁判對象의 排除

북한에서 불법행위⁸⁰⁾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사건, 고정재산의 이관인수와 관련한 분쟁사건, 기타 신소·청원 등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해결되는 사건들은 국가중재재판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경제기관, 기업소 상호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사건에서는 해당 불법행위를 수행한 개별적 국민들에게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 그 때 전인민적 소유가 아닌 개인적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중재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⁸¹⁾

Ⅲ. 國家仲裁裁判節次

1. 國家仲裁裁判節次的 基本特徵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절차는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의미에서 민사소송과 다름 아닌 경제문제에 대한 재판이므로 기본적으로 민사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중재재판제기, 중재재판준비, 중재재판심리, 재결(결정)의 선고, 재결(결정)의 집행, 재심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심급제도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의 허위진술과 증인의 위증 등에 대해 그 절차 내에서 바로 물질적인 제재(벌금)를 과할 수 있는 점 등에서 민사재판절차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제기 전에 취하게 되는 당사자간의 사전청구제도도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절차에 있어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은 자본주의국가에서의 일반적 중재제도와 달리 국가재판기관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안이기 때문에 중재재판을 제기함에

80) 북한법에서는 불법행위라는 용어보다는 위법행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258조). 위법행위에는 범위반의 성격, 정도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지는 범죄, 행정적 및 규율적 위법행위, 민사상 위법행위가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채무불이행(채무위반)책임과 위법행위책임을 통틀어 민사책임이라고 하며 이에 관해서는 북한민법 제4편 제1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회주의적 적법성'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범위반 개념'과 '법적 책임 개념'을 설정하고 범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추궁·결정하는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 국가중재재판절차 등을 상정하고 있다.

81)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45면.

있어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가 필요없게 된다. 벌금부과사건을 처리하는 국가중재재판절차는 남한의 행정절차상의 과태료부과절차나 비송사건절차 또는 형사절차를 합쳐놓은 듯한 것으로서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기·처리된다. 그와 같은 태도는 ‘범위반 개념’과 ‘법적 책임 개념’을 설정함에 있어 민·형사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명백히 구분하지 않는 사회주의 법체계하의 한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 國家仲裁裁判部の 構成

국가중재재판부의 심리는 보통 중재원 1인이 담당하나, 현지공개 중재재판사건과 중요한 사건 및 중앙중재기관에서의 심리의 경우에는 3명이 중재원이 담당하되 그 중 1인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심리를 지휘한다.

중재재판은 경제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재판이므로 통상재판소의 재판부 구성과는 달리 비전문가인 인민참심원이 참가하지 않는다.

3. 國家仲裁裁判의 提起

(1) 國家仲裁裁判 提起權者

국가중재재판은 원칙적으로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이 당사자인 경제기관·기업소·단체가 그 상대방인 기관·기업소·단체를 상대로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국가중재기관을 비롯한 검찰소 등의 감독통제기관도 계획 및 계약 규율위반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들을 국가중재재판의 당사자로 하는 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해당 기관·기업소·단체 혹은 그 책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權利와 義務로서의 國家仲裁裁判의 提起

북한에서 국가중재재판의 제기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에 대한 국가중재기관의 법적 통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므로 북한 중재법에서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 및 ‘개별적 일꾼’들이 계획 및 계약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법적 제재

가 가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인민경제계획 집행의 담당자로서의 경제기관·기업소·단체는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에 대하여 중재재판을 제기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당 제기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⁸²⁾

따라서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은 경제기관·기업소·단체가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기관, 기업소, 특히 그에 책임을 제때에 제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관·기업소에 끼친 경제적 손실을 해당일군에게 보상시킬 수도 있다. 그들은 의무위반에 대한 이러한 법적 제재가 기관, 기업소들로 하여금 계획집행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⁸³⁾

국가중재기관을 비롯한 기타 감독통제기관도 국가중재사건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는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무규율적인 현상을 없애고 경제건설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감독통제기관의 중재사건 제기는 권리인 동시에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의무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중재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은 자기가 맡은 임무수행과정에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을 적발하였을 때는 반드시 국가중재사건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통제기관들의 중재사건제기권리는 그 기관들이 차지하는 위치로 인한 직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해서 법이 특별히 책임을 예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⁸⁴⁾

(3) 事前請求制度

북한의 국가중재제도에는 사전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원고는 국가중재기관에 사건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에게 직접 해당청구를 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사전청구(事前請求)에 제때에 답변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사전청구를 받은 날로

82) 이 때의 의무란, 국가소유의 관리권자와 계획집행의 주인으로서의 기관, 기업소들이 국가앞에 지니고 있는 행정법상의 의무인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의 민법상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된다. 『중재법학』, 앞의 책, 52면.

83) 리 황, 위의 책, 53면.

84) 리 황, 앞의 책, 54면.

부터 7일 안으로 답변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의 사전청구를 승인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기간 안으로 답변하지 않을 때에는 답변해야 하는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사전청구서등본을 비롯하여 필요한 문건을 붙여 피고의 구좌(돈자리)가 개설되어 있는 해당 은행기관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이 청구에 대해 피고는 거절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사전청구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는 법이 정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거절해서는 안된다. 이유없이 청구를 거절해서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하게 하였을 때는 그에 책임있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북한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사전청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재판소에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바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는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중재법상의 사전청구제도의 목적이 경제기관, 기업소들 사이에서 자체로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분쟁만을 국가중재기관에 제기되도록 하자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4) 國家仲裁裁判 提起方式

가. 國家仲裁裁判 提起書의 提出

피고가 원고의 사전청구를 거절한 때에는 당사자나 감독통제기관이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한다. 국가중재재판의 제기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데, 중재재판제기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사건명, 청구가격을 기재해야 하고 청구의 근거로 되는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증거를 지적하여야 한다.

중재재판제기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에게 사전청구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원고의 사전청구를 피고가 거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청구의 근거사실을 증명하는 문건,⁸⁵⁾ 원고가 국가중재사건을 제기하면서 중재재판제기서와 그에 덧붙일 문건의 사본을 피고에게 보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피고수에 해당하는

중재제기서 사본, 국가수수료 납부영수증⁸⁶⁾ 등이 그것이다. 검찰기관을 비롯한 기타 감독통제기관이 국가중재기관에 사건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획 및 계약규율을 위반한 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것을 증명하는 근거를 밝혀야 하며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補正命令

북한에서 국가중재재판제기시에 필요한 문건이 누락되거나 불비한 경우는 중재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해당문건을 제출하거나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국가중재재판에서는 민사재판과 달리 그 기간동안에도 시효기간은 계속 진행하므로 원고는 조속히 위 흠결을 보정하여야 한다. 중재원이 정해진 보정기간 동안 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면 중재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중재기관의 요구에 제때 응하지 않음으로 사건처리에 극심한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⁷⁾ 지정기간 안에 조치내용을 수정·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중재재판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5) 國家仲裁裁判提起의 法的 效果

국가중재재판의 제기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단순하고 간단한 과정이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절차단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국가중재재판의 제기로 인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85) 예컨대 제품미공급에 따른 위약금청구사건의 경우는 계약서와 위약금계산서이며, 수송도중의 사고로 인한 보상청구에서는 짐발송통지서, 결제계산서, 짐이 닿은 역장의 사고조서 등이 해당된다.

86) 국가중재재판과 민사재판에서는 국가수수료를 소제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나,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준비절차 종료후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후에 국가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리 황, 『민사소송법학(법학과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109면.

87)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북한국가중재재판 절차나 민사재판절차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정의 경우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와 달리 “원고가 재판소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민사소송법 제 70조)을 두고 있으므로 보정기간내의 보정을 전제로 하여 보정기간 중에는 계속 시효가 중단된다.

가. 訴訟法上 效果

국가중재재판의 제기로 인해 사건 해결의 담당자인 중재원과 사건해결을 요구하는 사람 및 일련의 사건관계자들 사이에는 ‘국가중재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사건을 제기한 기관·기업소·단체가 원고로, 상대방 기관·기업소·단체는 피고가 된다. 쌍방당사자는 청구·답변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리고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만약 거짓된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민사소송에서는 거짓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곧 물질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과 대조된다. 국가계획과제수행과 관련있는 중재재판절차는 더 빨리, 더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데 위증은 재판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나. 實體法上 效果

○ 時效 中斷

국가중재재판의 제기에 의해 시효기간의 진행은 중단된다. 경제기관·기업소·단체는 자기의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예견하고 있는 시효기간내에 해당 청구를 국가중재기관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시효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제기하였을 때는 그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금⁸⁸⁾ 청구는 특별히 단기시효⁸⁹⁾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기관·기업소·단체는 위

88) 북한 민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으로서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 등의 지불,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을 들고 있다. 그 중 위약금·연체료를 합하여 제재금(制裁金)이라고 한다.

89) 북한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의 종류에는 개별시효기간과 일반시효기간이 있다. 개별시효기간은 재산상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정한 시효기간이고, 그밖의 모든 청구에 대하여 다같이 적용되는 시효기간을 일반시효기간이라고 한다. 기관·기업소·단체 상호간의 청구에 적용되는 일반시효기간은 6개월이고, 개인 상호간 및 개인과 기관 등 상호간에 적용되는 일반시효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상품대금청구, 상품공급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청구, 운수채신업무와 관련한 청구, 기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제재금청구 등에 대해서는 3개월 기간의 개별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북한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은 우리의 시효에 비해 극히 짧은 것이 특징이며, 취득시효는 자본주의사회에 자본가들이 남의 재산을 빼앗는 악랄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학사전』, 앞의 사전, 392면; 『민법 I』, 앞의 책, 126면 이하.

법현상이 발견되면 이에 즉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사재판에서와 달리 국가중재재판제기서에 불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정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된다.

○ 時效期間 經過 後 提起한 國家仲裁裁判

사건접수시에 이미 청구의 시효기간이 지난 경우, 사건접수 후 일반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인지, 혹은 시효기간의 경과를 국가중재재판제기권의 실현조건위반으로 간주하고 처음부터 접수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북한의 중재법은 사건은 우선 접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즉, 시효기간은 소송기간이 아니라 실제법규범에 의한 것이 때문이므로 중재원은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판심리에서 시효기간 연장사유와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금액을 면제할 사유 등이 있는가를 확정하고 적당한 재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계획 및 계약규율 준수정형(遵守定型)⁹⁰⁾에 대한 국가중재기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⁹¹⁾

따라서 국가중재기관은 민사재판과는 달리 시효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라도 심리해서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금액을 국고에 회수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원고에 대해서는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에 대해 제때에 투쟁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로, 피고에 대해서는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 민법에 따르면 재판기관이나 국가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해야 하므로(제268조) 북한의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주장여부를 불문하고 시효가 지난 청구가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민경제계획 하에서 빚어진 손실인 한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북한 민법 제259조 후문)과 비슷한 원리임을 알 수 있다.

90) 북한법에서는 정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내용, 상황, 여부 등을 의미한다.

91) 중국은 이 점에서 북한보다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중국의 『경제계약 중재조례』에서는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는 경우에 권리의 침해받거나 또는 그 권리의 침해를 알아야 할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채무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6조).

○ 仲裁費用 請求할 權利 發生

국가중재재판의 제기는 원고에게 중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킨다. 사건이 제기된 후 중재원이 심리하기 전에 피고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국가중재재판을 일으킨 잘못이 피고에게 있다면 원고는 처음에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할 때 쓴 비용을 피고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원은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사건’을 기각해서는 안된다.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²⁾ 따라서 중재원은 심리에서 중재비용을 정확히 확정하여 그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실체법상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소송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정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리를 진행해서 재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⁹³⁾

○ 國家仲裁裁判 提起의 時點

국가중재재판은 원고인 경제기관·기업소·단체가 제출한 국가중재재판 제기서를 국가중재기관이 접수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기요(중요한 기밀)문서 혹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국가중재재판제기서를 접수하였을 경우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재판제기서를 맡아 취급하는 해당기관이 발송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6) 國家仲裁裁判提起에 대한 被告의 答辯과 ‘맞仲裁’

가. 被告의 答辯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국가중재재판제기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는 문건을 답변서와 함

92) 북한 민사소송법상 사건의 기각은 그것이 철저히 사건절차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로서 소송법규범에 의하여 규제된다는 점에서 실체법상 권리에 대한 재판소의 해결인 청구의 기각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사건의 기각은 판정(결정)의 형식으로, 청구의 기각은 판결의 형식으로 내려진다. 사건의 기각은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각하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건기각판정이 내려진다. 『민사소송참고서』(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97면.

93) 국가중재비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국가수수료,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지급한 여비, 감정료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께 국가중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피고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절차상의 의무이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의 답변은 소송법상의 것과 실체법상의 것으로 대별된다. 소송법상의 답변은 원고가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함에 있어 소송법규범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답변으로서, 예컨대 관할위반, 피고선정의 잘못, 이미 재결내린 사건이라는 답변이 그것이다. 중재원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사건이송결정을, 피고를 잘못 선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교체결정을, 이미 재결을 내린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실체법상의 답변은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였다, 즉 원고의 채권이 시효를 도과하였거나 이미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등의 항변 또는 면제·경감사유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국가의 공급계획과제가 변경 또는 취소된 것을 들 수 있다. 중재원은 피고의 실체법상 답변이 근거있을 때는 중재심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려야 한다.

나. 맞仲裁

이른바 ‘맞중재’는 원고가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그 원고를 상대로 다시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남한의 소송법상 반소(反訴)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민사소송절차에서 맞소송이 널리 이용되는 것과는 달리 국가중재재판에서는 맞중재가 그렇게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는 맞중재가 제기되어도 개인 등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원고의 청구금액과 피고인의 맞중재 청구금액을 서로 상계하지 못하고 또 이 두 청구를 병합하게 되면 심리를 복잡하게 하여 사건처리의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⁹⁴⁾

(7) 事件의 併合과 分離

중재원은 관련 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개의 사건에 당사자가 여럿이 참가하는 경우(당사자 병합)와 한 개의 사건

94) 리 황, 『중재법학』, 앞의 책, 63면. 그래서 북한은 스스로 중재실무실천에서는 그 의의가 별로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무역중재에서는 광범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민사법 사전』, 앞의 사전, 210면.

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청구의 병합)에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또한 중재원은 일단 병합한 사건이라도 병합심리가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지연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병합한 사건을 임의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 병합을 예견하고 있는 경우와, 사건의 성질상 분리하면 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國家仲裁裁判 準備節次

(1) 目的과 本質

남한의 민사소송법상에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북한의 민사재판 등 소송절차에서 재판준비절차를 두고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남한의 민사소송상의 준비절차는 민사합의부사건 중 복잡한 사건을 합의체의 일원인 수명법관에게 맡겨져 미리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하게 하여 변론에 상정시킴으로써 심리의 집중과 능률을 기하고 합의부의 단점인 재판인력의 낭비를 보완하는 데에 그 취지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재판준비절차 역시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전문가인 판사가 미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채택함으로써 심리의 집중과 능률을 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판사가 현지조사와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함과 동시에 현장에서의 사상 및 법률교육, 군중동원을 통하여 공민간의 여론을 형성하고,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제반 소송상의 문제에 대한 판정 및 재산담보처분, 재판중지판정 등을 내림으로써 재판을 통한 정치사업 및 실질적인 사건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의 중재재판준비도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준비절차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제기된 후 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증거, 기타 자료들을 수집, 보충하여 사건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중재원이 수행하는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우리 민사소송절차 등에서는 심리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 수소법원이 해결

하여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재판준비절차에서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⁹⁵⁾

(2) 國家仲裁裁判 準備節次의 內容

국가중재재판 준비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준비행위는 중재원이 국가중재재판제기서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답변서를 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음 중재원은 원고의 중재재판제기서, 피고의 답변서 등 중재재판관계 문건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증거를 수집·채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재원은 증명부담의 일반원칙⁹⁶⁾에 기하여 서면증거와 감정인의 감정, 증인의 증언, 현장검증 등 제반 증거방법을 수집·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상의 준비절차에서 수명법관이 주로 쟁점의 정리와 증거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증거신청인의 채무결정이나 증거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 점과 대비된다. 중재원은 국가중재재판 준비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증거문서, 증거물, 증인 및 감정인의 진술에 대한 심리는 할 수 없지만, 현장검증을 시행할 수는 있다.

그 외 중재원은 재판준비단계에서 제기되는 기타 일련의 소송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승계·변경·인입 등 당사자 자격에 관한 문제, 참가자 인입에 관한 문제, 재산담보처분에 관한 문제, 소송의 이송결정 등 재판관할에 관한 문제, 소송의 병합과 분리에 관한 문제, 증거보전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하여 이 단계에서 심의하고 적당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⁹⁷⁾ 수

95) 북한의 민사재판에서 재판준비절차를 강화한 것은 비법률전문가인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앞의 책, 36면.

96) 북한은 입증책임이라는 용어에 대신하여 ‘증명의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사건해결에 의의가 있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들에게 지운다는 개념으로서, 남한의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의 개념과 유사하다. 북한의 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증명의 부담과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확정하여야 할 재판소의 의무를 밀접하게 결합하여 재판원에게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의 권한으로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르주아국가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만이 증거를 수집하여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고 재판소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피동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 민사소송절차의 단면만을 지적·비판한 것이지만 입증책임이라는 용어 대신 증명의 부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배경을 짐작하게 해 준다. 『법학사전』, 앞의 사전, 606면.

명법관(受命法官)이 소송이송결정, 참가의 허부결정, 수계(受繼)만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남한의 민사소송법의 태도와 대조된다.

한편 북한의 국가중재재판 준비절차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준비행위로서 ‘현지조사’가 있다. 북한의 민사소송법에서는 ‘현지료해(現地了解)’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현지조사는 관계자들과 담화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협의회를 조직하여 할 수도 있다.

중재원은 위와 같은 일련의 국가중재재판 준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쌍방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을 소환하거나 출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5. 國家仲裁裁判 審理節次

(1) 審理節次의 意義와 特徵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 중재재판심리란 중재원이 당사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들을 모두 참가시켜 이미 수집된 모든 증거들에 대한 조사·평가에 기초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법규범을 해석·적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중재재판심리는 나타난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사실을 정확히 확정하고 그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건처리를 통하여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위법현상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통제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⁹⁸⁾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국가중재재판의 심리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언에 근거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적정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 외에 국가경제계획과 관련한 분쟁인 만큼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⁹⁹⁾

97) 북한의 민사재판에는 직업판사뿐만 아니라 인민참심원도 재판부구성원이 되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므로 재판의 능률 등을 위하여 직업판사만이 관여하는 준비절차에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겠지만, 전문가인 중재원만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중재 재판에서는 그와 같은 현실적 필요성은 적다 할 것이다.

98) 리 황, 『중재법학』, 앞의 책, 75면.

따라서 북한의 국가중재재판 심리절차에서 국가중재기관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재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변론주의의 배제),¹⁰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결의 자료로 쓰지 않을 수 있으며(자백의 구속력의 배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이외에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직권증거조사의 원칙), 나아가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임의로 재판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처분권주의의 배제), 예컨대, 원고가 일부 미공급된 제품에 대한 위약금만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심리과정에 이미 공급된 제품의 질위반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질위반에 대한 위약금문제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한다.¹⁰¹⁾

한편, 국가중재재판 준비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중재재판 심리절차에서도 국가중재재판기관의 교양적, 사상통제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중재재판심리는 사상투쟁과 법적 통제를 통하여 낡은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경제일군들에게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에 대한 책임과 법적 추궁을 엄격히 가함으로써 그들을 낡은 사상에서 벗어나도록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이 주창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에 기초한 현지공개중재재판이 중재재판기관의 교양적, 사상통제적 역할을 높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사건발생의 현지에서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의 원인, 그에 대한 책임한계, 전반적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생

99) 국가중재재판심리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을 반영한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경영상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그들 당사자의 주장과 증언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중시하여 중재재판기관의 독자적인 사실규명 및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00) 북한에서는 중재재판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절차에서도 변론주의(辯論主義)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북한은 “소송자료의 수집과 제출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제도는 실제상 돈 있고 권세 있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만 이롭다. 지주, 권력가들은 권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갖은 수단을 다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자료를 수집·제출하나 빈궁과 무권리 속에서 허덕이는 근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판에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기 마련이다. 결국 공평무사성을 내세우는 표현에 불과하며 전적으로 부류주아 독재에 복무한다”라고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다. 『법학사전』, 앞의 사전, 292면.

101) 이 점에서 남한의 민사소송법상으로도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는 분쟁대상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개인법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북한의 국가중재재판 심리절차에서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한 사건자료로 폭로·비판함으로써 경제일군들로 하여금 계획집행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높이며 계획과제수행과정에서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상혁명수행의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는 것이다.¹⁰²⁾ 한편 북한은 민사재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심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중재재판에서는 심리를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없다.¹⁰³⁾

(2) 審理節次의 內容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심리는 민사재판심리와 같이 심리의 시작과 사실심리, 당사자의 의견진술, 재결의 선고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에 이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가. 審理 開始

○ 當事者 등의 不出席

중재원은 심리의 시작을 알리고 당사자 등의 출석을 확인한다. 해당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자가 사건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책임자가 직접 심리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이 참가한다. 중재재판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은 앞에 본 바와 같다. 국가중재재판의 심리에서는 민사재판과 달리,¹⁰⁴⁾ 당사자

102) 북한은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5조에서 “재판소는 민사소송활동에서 위대한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에 따라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이를 삭제하고,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1994. 5. 25)은 제4조에서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고만 규정한 것은 북한의 재판소에 있어서의 심리방법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앞의 책, 11면.

103) 북한에서 재판의 공개와 관련하여, 북한헌법은 제157조에서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 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제10조에서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및 군사적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로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재판소구성법의 태도 보다 발전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104)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97조에서 “소송당사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피고가 재판심리에 두 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자기가 참가하지 않은 대로 재판심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들이 중재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으면 첫번째 심리기일부터 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원고가 상당한 이유없이 심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을 때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를 기각한다. 또 피고가 상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에 대해 알리지 않았을 때는 이미 제기된 자료에 근거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채택된 증인 또는 감정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외 참가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심리를 연기하지 않는다.¹⁰⁵⁾

○ 仲裁員에 대한 回避·除斥制度의 不認定

심리의 시작단계에서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사건을 심리·해결하는 중재원을 알린다. 다만, 기관·기업소·단체만이 사건당사자로 나서는 국가중재재판의 특성상 중재원에 대한 회피 또는 제척¹⁰⁶⁾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나. 事實審理

○ 事實審理의 順序와 期限

사실심리절차는 증거를 조사·검토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는 재결의 기초가 된다. 사실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진술, 당사자에 대한 심리, 증거문서, 증거물에 대한 심리, 증인, 감정인의 진술에 대한 심리로 이루어진다.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심리기일 전까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수시제출주의(隨時提出主義)가 매우 제한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늦어도 중재재판심리를 끝내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원고가 재판심리에 두 번 호출받고도 상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05) 다른 사유로 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국가중재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리 황, 『중재법학』, 앞의 책, 93면.

106) 북한에서는 회피를 자퇴(自退), 제척을 배제(排除)라고 한다.

중재원은 현지공개중재재판을 하는 사건과 그밖에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먼저 사건내용을 알리고 증거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중재원은 사실을 심리하기에 앞서 거짓진술·증거에 따른 법적 책임을 통고해야 한다.

○ 事實審理의 內容

사실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진술로부터 시작된다. 원고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 피고의 답변을 듣는데, 국가중재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제기한 사건은 먼저 사건을 제기한 해당기관이 범위반자료를 보고하거나 피고에게 위법사실을 말하게 한다. 다음 당사자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본인신문과 유사한 것으로서 증거방법의 하나이다. 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당사자의 주장진술과 마찬가지로 원·피고의 순서로 한 사람씩 진행하는데, 증거문서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중재원은 증거문서와 증거물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증거문서의 경우 반드시 해당문서가 법령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해당문서가 권한있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론 이 때에 중재원은 필요에 따라 증거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증거물의 조사에 있어서 중재원은 심리장소에 가져올 수 없는 증거물을 조사할 경우에는 증거물이 있는 장소에서 이를 행하며 사전에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증거물과 대조·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심리를 연기한다.

○ 事實審의 解決을 위한 當事者間 相互審問 許容

증인·감정인에 대한 심문은 먼저 증인이나 감정인이 진술을 들으며, 그 말이 끝나고 나면 당사자들로 하여금 증인·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¹⁰⁷⁾ 참가자 등 다른 소송관계자도 중재원의 승인을 얻어

107) 북한의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제109조에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해 줄 것을 요구한 사람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게 하며 다른 재판관계자들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반대당사자도 다른 소송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반대심문을 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중재재판에서의 증인심문절차와 같이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들은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증인·감정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중재원이 개별적 증거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증거들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불명확한 것이 있는 경우 당사자, 증인, 감정인에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 當事者 意見陳述

북한의 국가중재재판 심리절차에서는 마치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같이 당사자가 원고, 피고 순으로 마지막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심리가 끝난 후 재결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심리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해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와 입장을 명백히 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 민사재판 심리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중재재판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서면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기보다는 주로 구술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중재원은 사건해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와 입장을 특별히 고착시키기 위해 당사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라. 審理調書의 作成과 審理終結

국가중재재판 심리과정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는데 심리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명한 다음 그를 재확인하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심리조서에는 심리에 참가한 중재원과 서기가 날인한다.¹⁰⁸⁾

(3) 檢事의 國家仲裁裁判 不參與

북한은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역할이 광범위하게 부여되고 있다. 북한의 민사재판에서는 검사의 광범위한 절차참여가 인정되고 있다. 일반감시(一般監視)권한에 기초하여 검사는 국가, 사회 및 공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규정하였다.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 앞의 책, 39면.

108) 북한의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서기가 재판이 끝난 날로부터 3일 안으로 재판심리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 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 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고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개정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125조). 중재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과 판결·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법이 정확히 지켜지는가를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검사에게 재판심리에 참가할 권한, 소송당사자 및 증인에게 대한 심문권, 재판심리조서의 열람 및 내용에 대한 의견진술권, 판결·판정에 대한 항의권, 재심의 소 제기권, 비상상소권, 판결·판정의 집행신청권 등 사법적 감독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북한의 국가중재재판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민사재판과 유사하기는 하나 민사재판절차와는 달리 검사에게 그 심리절차에 참가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검찰소는 행정경제감시권한에 기초하여 인민경제계획 및 계약규율에 위반하여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기업소·단체 혹은 그 책임자에게 물질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국가중재기관에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중재재판의 심리절차에 참여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검찰소가 일반적 적법성 감시권한에 기초하여 국가중재기관의 다른 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IV. 裁決과 決定

1. 裁 決

(1) 裁決의 意義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 재결이란 경제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과 관련한 경제적 분쟁을 조사·심리하고 그에 해당하는 실제법규범을 해석·적용하여 내리는 중재원의 해결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 민사재판에서의 판결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재결은 조사·확정된 사실에 근거해야 하므로 사실 확인적인 요소를 가진다. 이를 재결의 사실적 근거라고 한다. 또한 재결은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행동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명령적인 요소도 가진다. 이러한 명령적인 성질은 이것이 국가권력적인 활동에 의한 것임을 잘 드러낸다고 하며 이를 재결의 법률적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결은 위와 같이 중재재판절차의 심리단계에서 조사·확정된 사실적 사정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실제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철저히 당정책에 기초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중재원들이 제기된 사건을 정책적 요구에 맞게 잘 처리·재결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의 말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서¹⁰⁹⁾ 중재재판의 정치적 특성이 재결의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裁決의 節次와 形式, 內容

가. 裁決節次

국가중재재판심리는 민사재판심리와는 달리 보통 중재원 혼자서 심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결을 위한 평의와 채택과정이 언제나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재원 3명으로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결을 내리기 위한 평의와 재결의 채택과정이 있게 된다. 중재재판부는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2개월 안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사건을 해결하는 중재원이 마음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중재재결의 채택에 있어서도 민사재판 및 형사재판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즉일선고제(即日宣告制)가 적용된다. 북한의 재판소나 국가중재기관에는 법정(재판정)에 부속하여 평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바, 이는 즉일선고제 원칙에 따라 재판원 또는 중재원이 심리종결 후 그 자리에서 재판 결과를 바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¹⁰⁾

나. 裁決의 形式 및 內容

중재재판의 재결은 서면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 서면화되지 않은 재결은 재결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중재원은 국가중재재판심리에서 조사·확정된 사실적 사정에 기초하여 재결을 내림에 있어 원고의 청구사실이 증

109) 리 황, 『중재법학』, 앞의 책, 86면.

110)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에서 사실심리가 끝난 후 상당한 날자가 지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지주나 자본가 등 부르주아지들이 판결을 내리는 데 간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억압을 보장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학사전』, 앞의 사전, 605면.

거에 기초하여 증명되었는가, 피고의 답변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해명되었는가, 어느 법규범을 적용할 것인가, 원고의 청구를 승인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승인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재판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재결서는 민사판결서와 마찬가지로 서두부분, 서술부분, 이유부분, 결론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부분은 재결의 첫 부분으로서 중재원, 입회서기, 사건당사자, 재결시일, 사건명, 심리참가자 등을 기록한다. 서술부분에서는 제기된 사건의 내용, 즉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그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들을 지적한다.

결론부분에서는 중국적인 결론을 간단명료하게 명령식으로 쓴다. 이 부분에서는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식이다. 재결이 이행기간을 밝히지 않은 때에는 즉시 이행하라는 의미이다. 현물을 인도하는 재결을 내릴 경우는 현물의 유무 또는 생산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행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현물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금액으로 환산한 대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것을 동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 중재원은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기된 분쟁을 함목적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즉, 중재원은 법령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적 요구에 따라 개별적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제재금지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는 북한의 민사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국가중재재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재결한다. 중재비용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피고에게, 기각할 때에는 원고에게 부담시키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에게 중재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원고가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한 후 청구의 범위가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감소한 부분의 국가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청구의 범위가 증가된 때에는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¹¹¹⁾

111)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468~469면.

(3) 裁決의 種類와 效力

가. 裁決의 種類

재결에는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재결, 경제기관·기업소·단체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재결, 경제기관, 기업소의 자재, 자금, 물자 등을 몰수하는 재결, ‘개별적 일군’에게 벌금을 물리는 재결, ‘개별적 일군’에게 국가와 사회에 끼친 손해를 보상시키는 재결, ‘개별적 일군’을 사회주의 법무생활위원회나 검찰기관에 넘기는 재결, 적용한 벌금·손해보상금을 면제하거나 재결의 집행을 보류하는 재결 등이 있다.

원고의 청구를 승인하는 재결에는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보상 및 제재금(위약금, 연체료, 벌금)등의 지불을 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재원은 당사자가 계획 및 계약규율을 심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획 및 계약규율 내용에 따라 그가 물어야 할 제재금 중에서 계획 및 계약규율 내용보다 더 높게 물린 만큼의 제재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재결은 종류에 따라 따로 내릴 수도 있고 함께 내릴 수도 있으나, 재결의 완전성, 무조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부재결, 중간재결, 조건부 재결은 인정되지 않는다.¹¹²⁾

나. 裁決의 效力

북한에서 민사재판절차와 달리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는 심급제도가 없으므로 중재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재결을 내리면 그것으로써 바로 확정된다. 그 실질이 민사재판인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의 국가중재재판제도가 일반적인 중재제도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재결이 확정되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경우에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기판력과 집행력이 바로 그것이다, 확정된 재결은 당사자들

112) 북한은 우리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일부판결이나 중간판결이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에 착취계급의 이윤추구를 소송상으로 적극 보호해주자는 데 목적이 있고 조건부판결은 판결집행단계에서 ‘괴뢰집달리’에게 무제한한 자의와 전횡을 허용함으로써 ‘괴뢰민사소송’에서의 집행제도를 더욱 약탈적으로 착취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비난하고 있다. 리 황, 『민사소송법학(법학과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164~165면.

사이의 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재판심리의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한 번 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재결은 재결서 자체로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는데, 이는 남한의 중재판정이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집행력을 가지는 것(중재법 14조)과 대조된다.

2. 決定

(1) 決定의 意義

북한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제기된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중재원의 해결을 재결과 구별하여 결정이라고 하는데 북한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판정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재결은 증거를 조사·평가해야만 내릴 수 있는 실체상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국가중재재판 심리단계에서만 내릴 수 있으나, 결정은 절차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상 문제들에 대한 중재원의 해결이므로 국가중재재판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채택할 수 있다.

(2) 決定의 形式 및 內容

결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재결의 형식과 내용에 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리연기결정, 사건중지결정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독립된 서면으로 결정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決定의 種類와 效力

가. 節次進行 등과 관련된 決定

절차진행 및 사건의 중국적 해결과 관련된 결정으로는 심리연기결정, 사건중지결정, 사건기각결정, 사건이송결정, 사건의 분리·병합에 관한 결정 등이 있다. 심리연기결정은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사자를 변경하거나 공동당사자를 인입해야 할 때, 당사자들이 심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이 제기한 심리연기신청이 근거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채택한다. 증거를 더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심리연기결정을 채택할 경우에는 다음 기일까지 사건당사자 및 기타 사건관계자들이 하여야 할 행위

와 제출할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당사자의 교체 또는 인입을 위하여 심리연기결정을 채택할 때에는 심리연기결정과는 별도로 당사자교체결정 또는 당사자 인입결정을 동시에 채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모두 중재재판심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¹¹³⁾

사건중지결정은 국가중재재판절차를 중단하는 결정으로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행정적 절차에 따라 심의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때 등 중재재판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혹은 중재원의 발의에 의해 내린다. 중지기간은 중지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개월이다. 중지기간 동안에 중지사유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사건은 기각된다.

당사자인 기관·기업소·단체가 해산되었으나 그의 실체법상 권리의무를 다른 기관·기업소·단체에 넘길 수 없는 때, 사건당사자로 될 수 없는 기관·기업소·단체가 당사자로 되었을 경우 그를 자격있는 당사자로 바꿀 수 없는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이 있을 때, 국가중재기관에서 취급하지 않기로 된 사건을 제기하였을 때, 사건을 중지하였을 경우 중지기간 내에 중지사유가 사라지지 않을 때, 원고가 상당한 이유없이 심리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알리지 않은 때에는 사건기각결정을 내린다. 사건기각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소각하판결에 유사한 것으로서 사건기각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중재기관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사건기각결정이 내려진 경우 원고가 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사건이 기각된 때를 제외하고는 재차 동일한 내용의 국가중재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나. 罰金賦課決定

벌금은 기관·기업소·단체에 부과하는 것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있다. 벌금은 계획 및 계약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국가중재재판의 제기에서 밝힌 위법사실을 고치지 않았거나 재결 및 결정의 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구체적 사건해결을 위한 중재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내며 거짓진술을 하였을 때, 이유없이 사전청구를 거절하여 중재

113) 『중재법학』, 앞의 책, 91면.

사건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담보처분한 자금, 자재, 물자 등을 마음대로 처리하였을 때 등 국가중재사업을 방해하였을 대에도 부과할 수 있다. 벌금 부과는 법적 제재와 동시에 교양의 의미가 있으므로 부과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에 이견이 있는 해당 당사자는 중앙중재기관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적 일군’의 위법행위가 엄중할 때에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검찰기관에 넘기는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¹¹⁴⁾에서는 형벌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 제재에는 강직(降職), 면직,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무보수 노동이 있다. 형사책임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검찰소에 기록과 함께 사건을 회부한다.

V. 國家仲裁裁判의 執行

1. 國家仲裁裁判 執行의 意義와 特徵

(1) 國家仲裁裁判 執行의 意義

북한에서 국가중재재판의 집행은 중재원이 재결 또는 결정으로써 당사자 또는 ‘개별적 일군’에게 지운 의무를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집행하는 집행기

114)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7년 12월경부터이고 그 때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와 각 도(직할시), 시·군의 지방인민위원회 산하 및 각 기관별 협의체로서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조직·설치되었다. 중앙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주석, 중앙당비서, 당조직지도부장, 사회안전부장, 중앙검찰소장 등 5~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급 지방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인민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검찰소장, 사회안전부책임자, 검열위원회위원장, 당책임비서로 구성되는데,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을, 인민위원회 서기장이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서기장을 각각 겸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국가검열기관, 검찰기관 등의 감독 통제기관을 동원하여 법의 준수집행상황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국가법질서를 위반한 자들의 행위를 심사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제재를 가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넘기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의 준수상황에 대한 검열을 통하여 밝혀낸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처벌과 형사처벌의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소나 검찰소 등의 다른 정상적인 국가기관의 권한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비판은 받고 있다. 동 위원회는 하부조직을 가지지 않은 비상설 협의체기관으로서, 스스로 또는 국가검열기관,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북한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관한 상론은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57~60면.

관의 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¹¹⁵⁾ 국가중재기관이 내린 체결이나 결정이 제 때에 집행되지 않으면 계획 및 계약 규율위반에 대한 국가중재기관의 통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국가중재재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중재재판의 집행은 별도의 집행기관을 두지 않고 국가중재기관 스스로 집행기관이 되어 집행한다.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의 재결 또는 결정의 집행은 그에서 지적된 재제가 현실적으로 실현됨으로써 직접 사건당사자들의 경영활동에 물질적으로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2) 執行의 義務性和 即時性

국가중재재판절차에 있어서 집행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로 인해 중재재판 집행에 있어서의 의무성과 즉시성이 도출된다고 한다. 국가중재재판의 계기가 의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결의 집행에 있어서도 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재량이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국가중재재판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민사소송에서 판결 또는 판정의 집행이 언제나 의무적인 것이 아닌 것과 대조된다. 민사판결·판정의 경우 재판소는 당사자로부터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신청에 기하여 집행문을 발급하며 발급된 집행문에 근거하여 판결이 강제 집행된다.¹¹⁶⁾ 그러나 중재재판에 있어서는 중재원은 당사자인 기관·기업소·단체들로부터 재결 또는 결정의 집행에 대한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재결 또는 결정을 내리면 3일 이내에 집행문을 발급하여 재결의 의무적 집행을 중재재판기관 스스로 보장하여야 한다,

또 국가중재재판은 재판이 선고되면 즉시 집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중재재판이 즉시 집행된다는 것은 재결이 내려지면 곧 집행된다는 의미로서, 재결 자체에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까지,

115) 리 황, 『중재법학』, 앞의 책, 95면.

116) 북한법상 집행문의 종류에는 국가중재기관인 재결 및 결정에 기한 집행문 뿐만 아니라 민사판결 및 판정에 근거한 집행문, 외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서 예견된 외국재판소의 판결 및 판정에 근거한 집행문이 있다. 민사판결 및 판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의 의무성이 적용되지 않지만 채권자뿐만 아니라 검사의 제의 또는 재판소의 발의에 기해서도 집행문이 발급되고 그에 기해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역시 남한의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을 내림과 동시에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중재재판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심급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므로 즉시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3) 執行時效 등의 不認定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제176조에서 “집행문발급에 대한 신청은 판결·판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안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집행시효라는 독특한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위 집행시효기간은 민사실체법상의 시효기간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으로서, 위 기간이 지나면 재판소는 집행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당사자는 집행문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집행에 착수할 수 없다.¹¹⁷⁾

그러나 중재법에는 위와 같은 집행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국가중재재판에 관하여는 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처분가능한 재산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판결·판정과는 달리 국가중재재판은 국가소유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사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원이 집행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안으로 집행을 끝마쳐야 하는 집행처리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북한 민사소송법 제176조),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처리기간 1개월은 법정기간이므로 집행원은 물론 재판소도 이 기간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그러나 중재집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처리기한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중재시효의 불인정에서 찾을 수 있다.

(4) 相計의 禁止

국가중재재판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민사판결·판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것

117) 북한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시효는 집행문이 집행을 위하여 관할재판소나 채무자의 거래은행 또는 채무자의 소속기관·기업소·단체에 제출되었을 때에 중단된다. 중단된 이후의 집행시효기간은 집행기관이 집행되지 않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문을 채권자에게 반환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양육비, 부양료 등 정기적 급부를 명한 판결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시효기간이 경과한 지불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집행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는 채권자의 신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집행시효기간을 회복시키는 판정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판)』, 앞의 책, 176면.

과 대조된다. 물질적 제재로서의 위약금, 벌금, 연체료뿐만 아니라 제품대금, 봉사료 등도 서로 상계할 수 없고, 맞증재의 심리로 인한 재결조차 상계할 수 없다. 재결의 집행을 서로 상계하게 한다면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의 정도에 따라 쌍방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제재를 정확히 줄 수 없고, 경제기관·기업소·단체의 경영활동을 사실 그대로 객관화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정적 통제의 정확한 실현과 계획수행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와 통제를 원만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¹¹⁸⁾

상계의 금지는 집행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결의 채택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중재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위약금, 벌금, 연체료 및 각종 유치료 등에 대한 상계가 이루어진 것을 중재재판 심리과정에서 발견한 경우 그 상계조치를 무효로 인정하고 상계하지 않은 재산에 따라 재결을 내려야 한다.

2. 具體的 執行方法

(1) 金錢에 대한 執行方法

금전에 대한 집행은 국가중재기관의 집행문에 기초해서 은행이 행한다. 국가중재기관은 집행문을 직접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보낸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불통지를 할 필요없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중재재결의 집행문에 지적된 것을 다른 채권보다 앞서 집행해야 한다. 이를 채권자의 구좌(돈자리)에 넣었을 때 집행은 완수된다.

‘개별적 일군’에게 부과한 벌금, 손해보상금 등을 해당인의 생활비¹¹⁹⁾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은행이 이를 한다. ‘개별적 일군’에게 은행에 돈

118) 리 황, 『중재법학』, 앞의 책, 98면.

119) 북한에서는 생활비라 함은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보수지불의 기본형태로서, 생활비 등급제원칙에 입각하여 지불되고 있다. 생활비 등급제는 노동과정에서 노동자, 사무원들이 지출한 노동력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의 복잡성 정도와 노동조건의 차이, 기술기능수준, 인민경제발전에서 해당부문이 차지하는 중요성, 직제 또는 자격 등 노동의 질적 차이에 따라 모든 부문의 노동을 일정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생활비의 기준을 차이나게 규정하는 제도이다. 생활비 지불형태에 따라 등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로 구별되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기본생활비 이외에도 가급금, 상급금, 장려금 등의 추가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률제도(노동법제도)』, 앞의 책, 142면.

이 없을 때는 은행은 그가 속한 기관·기업소·단체의 자금에서 해당금액을 꺼내고 이를 해당기관·기업소·단체에 알리면 그 기관·기업소·단체가 추후 지급할 본인의 생활비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해당 개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집행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활비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다.¹²⁰⁾

(2) 現物에 대한 執行方法

현물에 대한 집행은 기관·기업소·단체들로부터 자재, 상품을 몰수하거나 개인이 국가와 사회에 끼친 손해배상을 그의 재산에서 집행해야 할 경우에 하며, 이는 국가중재기관이 직접 집행기관이 되어 행한다. 민사집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집행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만이 해당되거나 개인이 해당행위로 취득한 현물 등이 가족성원들의 공동생활에 소비되었을 때에는 그 가족성원들의 개별 또는 합동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다.

(3) 其他

국가중재기관이 개별적인 일군들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나 검찰소에 넘기는 재결의 집행은 재결서등본과 함께 피고 또는 그 소속일군에 대한 위법자료를 만들어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소속된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검찰소에 넘기는 방법으로 한다.

3. 執行의 反轉

이미 집행된 재결 또는 결정이 재심절차에서 취소되고 다시 심리해서 내린 새로운 재결 또는 결정에서 원고의 청구가 거부되었을 경우에 피고로부터 받은 것을 원고가 다시 피고에게 주는 것을 집행의 반전이라고 한다.

120) 북한은 남한의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와 비슷한 취지에서 민사집행에 있어서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생활수단인 생활비에 대한 집행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월생활비의 25%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나 수개의 집행문에 따라 생활비에서 동시에 공제하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재산피해액을 생활비에서 공제하는 새로운 집행이 첨가되는 경우에는 생활비의 35%까지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중재집행의 경우에도 생활비에 대한 집행제한이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민사소송법(제2판)』, 앞의 책, 177면.

중앙중재기관에서 취소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중재원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재결(결정)집행반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에 기해 집행문을 말해야 한다. 중앙중재기관이 원심재결(결정)을 취소하고 직접 새로운 재결 또는 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도 재결(결정)집행반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민사소송절차에서도 국가중재재판절차와 마찬가지로 판결집행 반전제도를 두고 있다.

VI. 國家仲裁裁判에 대한 再審査

1. 再審査制度

중앙중재기관은 도(직할시)중재기관이 내린 재결 또는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再審)'과 중앙중재기관이 내린 재결 또는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중재기관 중재원회의(仲裁員會議)'의 두가지 형태로 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합법성과 근거성의 심사를 수행하며 여기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역시 재심제도이다.

재심 또는 중앙중재기관 중재원회의는 중앙중재기관이 모든 중재기관들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형식으로서, 전국적으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 중재실무의 통일을 보장하는 힘있는 수단이 된다고 한다.¹²¹⁾

(1) 再審의 意義

국가중재재판절차에 있어서의 재심제도는 도(직할시)중재기관이 내린 재결 또는 결정이 법령을 본질적으로 위반하였거나 사실인정이 무근거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제도로서, 그 근거는 재결 또는 결정의 위법성과 무근거성이다.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의 재심은 확정된 재결(결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북한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이나 비상상소¹²²⁾와 유사하며, 확

121) 『중재법학』, 앞의 책, 102면.

122) 북한법상 비상상소는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확정된 판결·판정의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서, 재심과의 구별이 다소 애매하다. 재심(再審)의 대상으로 되는 확정판결·판정은 이를 선고할 당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

정되지 않은 판결·판정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의 상소와 비교하기도 한다.

다만, 국가중재재판절차에서의 재심은 절차의 심급에 따른 재결이나 결정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중재사업에 대하여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는 중앙중재기관의 일종의 행정상의 감독권에 기초한 재결, 결정에 대한 심사이므로, 중앙중재기관은 민사소송법상의 상소나 비상상소와는 달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별다른 제한없이 원심재결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심재결과 다른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¹²³⁾ 당사자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에서는 사건당사자에게 비상상소나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중재재판에서는 중앙중재기관의 발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건당사자에 의해서도 재심의 제기가 가능하다.

(2) 再審提起權者와 再審員

가. 再審提起權者

재심은 원칙적으로 사건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으나, 중앙중재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중앙중재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재심의 제기의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뒤에서 보는 제기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중앙중재기관이 중재사업을 감독·검열하는 과정이나 각 도(직할시)중재기관이 자체검열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사건을

면 정당하였으나 확정된 후 새로운 사실이 판명됨으로써 그 확정판결·판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데 비해, 비상상소의 대상이 되는 확정판결·판정은 선고할 당시에 이미 부당한 것으로서 그것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소절차에 따라 시정되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확정판결·판정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그 사건을 해결한 재판원들이 사건심리당시 응당 수집조사하였어야 하며 또 이를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재판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 판명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선고할 당시 이미 증거채택 및 조사방법이 부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상상소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이다.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장이나 중앙검찰소장만이 제기할 수 있고 그 제기기간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北韓司法制度概觀』, 앞의 책, 275~277면.

123) 상소나 비상상소의 경우, 증거를 더 수집·조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한 때에 한하여 판결을 직접 고치는 판정(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

발견하였을 때에 감독·검열한 중재원 또는 해당 도(직할시)중재기관의 책임자가 중앙중재기관 책임자에게 재심제기를 요청하면 중앙중재기관 책임자가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제기여부를 결정한다.

나. 再審員

재심의 심리는 중앙중재기관 중재원 3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며 서기를 입회시킨다. 중앙중재기관에 소속된 중재원의 숫자가 6~7명으로 그리 많지 않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된 재결이나 결정에 참가한 중재원도 재심의 심리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재심원에 대해 회피 및 제척제도가 인정되지 않음은 중재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3) 再審提起節次

재심은 서면으로 원심국가중재기관에 제기한다. 재심은 재결·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심제기서를 접수한 원심국가중재기관은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기록과 함께 재심제기서를 중앙중재기관에 보낸다. 재심제기서에는 재심제기의 근거를 설명하는 문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재심제기서등본을 보냈음을 증명하는 문건, 원심수수료의 50%인 재심국가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중앙중재기관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제기되는 재심은 재심제기기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再審審理의 節次와 內容

재심은 중앙중재기관 중재원 3인이 심리하는데, 담당(주심)중재원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보고 받은 후 원심재결·결정의 정당성을 심사한다. 재심제기자의 재심제기이유와 범위에 제한받지 않고(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배제) 기록 자체를 통하여 사건 전반을 조사·검토한다.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참가시킨다.

재심심리절차에서는 우선 재심에 의해 실체법 또는 절차법의 위반 또는 부당한 적용이 없는가를 밝힌다. 법령의 적용 잘못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의 지시, 당의 정책과 어긋나게 법령을 해석·적용한 것도 합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한다. 이를 재결의 합법성 심사라고 부르고 있다. 절차법 위반이라 함은 관할위반, 당사자를 옳게 선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에 대해 이미 재결 또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재결의 근거성 심사라는 것은 중재원이 사건의 사실적 사정들을 드러난 증거로써 옳게 확정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정·사실들을 옳게 해명하였는가, 또한 그러한 사정·사실들을 증거로써 옳게 확정하였는가, 확정된 사건의 사정·사실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옳은 결론을 내렸는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再審提起에 대한 決定

가. 決定의 形式과 內容

재심에 의한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내려야 한다. 이 서면을 재심결정서라고 한다. 재심결정서에서도 재결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원심을 지지할 경우에는 재심의 제기가 근거없음을, 재결취소와 변경(수정)시에는 그 근거를 지적해야 하고, 취소하고 새로 심리할 것을 명할 때는 재심리절차를, 새로운 재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기각·취소·환송하는 경우에는 재결집행반전에 관한 문제와 다시 심리해야 할 중재기관 등을 지적해야 한다. 중앙중재기관은 재심사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민사재판절차에서 제2심 재판소가 부대판정(附帶判定)을 채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심결정시에 반드시 지적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소송법상의 위반 혹은 사업상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부대결정(附帶決定)의 채택도 가능하다. 부대결정은 원심재결을 지지할 때도, 취소하거나 수정할 때도 가능하다. 담당중재원의 이름으로 내리며, 이도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원심중재원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

나. 決定의 種類

재심제기에 대한 결정으로는 원심지지결정, 재결(결정)을 고치는 결정, 원심재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재결을 내리거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

정, 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 등이 있다. 원심지지결정은 재결이 합법성과 근거성의 견지에서 정당할 때 내리며, 재결수정결정은 원심의 사실관계는 맞는데 법령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사실관계는 맞는데 결론을 잘못 도출한 경우 새로운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정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원심재결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수수료부담의 잘못)에 내린다.

중앙중재기관은 원심재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재결의 내용과 다른 새로운 재결을 내릴 수 있고, 혹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중재기관인 도(직할시)중재기관에 도로 보내는 파기환송결정을 채택할 수도 있다. 중앙중재기관은 재심절차에 있어서 새로운 재결을 채택하거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을 채택하는 경우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법령에서 규정된 사건기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재결을 내렸을 때에는 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다. 決定에 대한 審査

중앙중재기관이 재심사건을 심리하고 내린 재결(새로운 재결을 내린 경우)이나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중앙중재기관 중재원회의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될 수 있다. 결국 도(직할시)중재기관의 중재재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3심제가 인정되는 셈이 된다.

2. 中央仲裁機關 仲裁員會議

(1) 意義

중앙중재기관 중재원회의는 국가중재재판에 대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재심사절차로서, 중앙중재기관의 중재원이 중앙중재기관 관할 사건을 심리하고 내린 재결·결정, 혹은 중앙중재기관이 재심사건을 심리하고 내린 재결·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재심사절차이다.

(2) 節次와 內容

재심은 사건당사자도 이를 제기할 수 있지만 중앙중재기관 중재원회의는 중앙중재기관 책임자의 제기에 의해서만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중앙중재기관이 내린 재결·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이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중앙중재기관 책임자의 제기에 의해 중앙중재기관의 중재원회의가 합법성과 근거성을 심사한다. 즉 중앙중재기관 책임자가 중앙중재기관이 내린 재결이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제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당사자는 중앙중재기관이 내린 재결 또는 결정에 불복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이 당사자에 의해서도 제기가 가능한 것과 대조된다.

중앙중재기관 중재원회의는 성원의 2/3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한다. 당사자들은 회의절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앙중재기관의 책임자가 진행한다. 재결·결정은 다수결로 채택한다. 중앙중재기관 중재원회의의 심리절차에는 재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 법령해석권에 기초하여 중앙중재기관 중재원회의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다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중재원회의의 제기이유, 그 심리절차와 내용 및 제기에 대한 결정 등은 재심에 있어서와 비슷하다.

VII. 國家仲裁機關의 經濟機關, 企業所 등에 대한 檢閱·監督과 提起

1. 國家仲裁機關의 檢閱·監督의 意義와 特徵

(1) 檢閱·監督의 意義

검열·감독이란 국가중재기관이 경제기관·기업소·단체 및 그 소속의 ‘개별적 일군’들의 계획 및 계약 규율준수 여부를 일상적으로 이해·장악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현상들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행정적 활동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국가중재기관에 검열·감독에 관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국가중재제도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²⁴⁾.

124) 구소련과 구동독의 국가중재기관은 북한의 국가중재기관과 마찬가지로 검열·감독

제기된 사건을 재결·결정으로써 취급처리하는 사법적 활동이 국가중재기관의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건을 취급처리하는 사법적 재판활동은 그 자체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중재기관 자체가 계획 및 계약규율의 강화를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기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재일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결심에 따라 감독의 목적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검열·감독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방해가 되는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계획화, 조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재재판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적 성격을 띤 국가중재기관이 위와 같이 적극적 행정활동인 검열·감독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권력통합의 원칙 내지 북한에서의 사법과 행정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2) 仲裁機關의 檢閱·監督과 檢察所의 行政經濟監視와의 關係

북한의 검찰소도 일반적 적법성 감시권한에 기하여 경제기관·기업소·단체 등이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현상을 검열·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검찰소가 수행하는 행정경제감시활동은 감시의 대상, 내용, 위법 사실의 처리형식에서 국가중재기관의 검열·감독사업과는 구별된다. 검찰소의 행정경제감시는 경제기관·기업소·단체 이외에 내각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부 및 그 산하기관을 모두 감시대상으로 하고, 계획 및 계약규율 준수 여부 이외에 기타 국가법령의 준수에 대한 감독도 시행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도 제기할 수 있지만, 국가중재기관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행정적인 처리권은 갖지 못하고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국가중재기관은 감독·검열과정에서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현상을 발견한 경우 자기의 발의로 중재사건을 제기하여 경제기관·기업소·단체 또는 그에 책임있는 ‘개별적 일꾼’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이를 국고에 회수시킬 수 있으나, 검찰소는 위법사실에 대하여 벌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국의 국가중재기관의 업무는 중재재판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또는 국가중재기관에 사건을 제기하면서 해당자료를 넘겨야 한다.

2. 檢閱·監督의 對象과 內容

(1) 檢閱·監督의 對象

국가중재기관의 검열·감독은 국가중재재판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인민경제계획수행과 직접 관련된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계획 및 계약규율 준수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열·감독사업은 중재재판과 같이 제기를 기다려 판단하는 소극적 활동이 아니라 대상을 직접 선정하여 수행하는 적극적 활동이므로 검열 감독의 대상을 옳게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¹²⁵⁾ 이는 경제발전의 전반적 고리들 가운데서 다른 부문, 다른 단위들에게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심고리¹²⁶⁾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검열·감독의 대상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견지에서 검열·감독의 대상은 일정한 시기성을 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부문의 계획 및 계약규율준수의 일반적 정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경제기관·기업소·단체를 동시에 선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2) 檢閱·監督의 內容

가. 人民經濟計劃 및 契約의 遵守與否에 대한 檢閱·監督

계획 및 계약준수 정형에 대한 검열·감독에는 계약체결 정형감독과 계약이행 정형감독이 있다. 계약체결 정형감독은 해당 계획문건의 시달 여부 등 계약체결의 전제로 되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검열·감독하는 것이다. 계약이행 정형감독은 계약의 이행이 물자공급의 계획적인 절차를

125) 『중재법학』, 앞의 책, 114면.

126) 여기의 중심고리라 함은 북한 철학사전상의 용어로서, “사물현상들의 연쇄 가운데서 다른 고리들을 규제하며 연쇄전반의 운동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고리”라는 것이다. 김일성은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정치사업이나 경제사업, 군사작전 할 것 없이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전략전술적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524면.

지키고 있는지 검토하고 아울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며, 재정규율의 위반 여부, 자재 교환의 정형, 제품의 포장재 및 공용기회수·이용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발생한 위약금, 벌금, 연체료를 제때에 받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 국고에 납부할 시효경과채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현상이 없는지 여부 등을 검열·감독하는 것이다.

나. 裁決·決定의 執行與否에 대한 檢閱·監督

계획수행에 대한 국가중재기관의 법적 통제는 재결이 집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현되므로 중재법은 재결·결정이 의무적으로 집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중재기관은 집행문에 근거하여 재결·결정을 제때에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집행을 '융화목과'하는 위법현상과의 투쟁을 위하여 재결·결정의 집행정형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재결·결정의 집행정형감독에 있어서는 '개별적 일군'에 대한 벌금부과결정의 집행정형에 대한 검열·감독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3) 檢閱·監督의 形式

국가중재기관의 검열·감독사업은 감독대상의 성격과 특성,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통제기관의 검열·감독사업은 집중적인 검열·감독과 정상적인 검열·감독으로 나누어 할 수 있다. 집중적인 검열·감독은 중앙중재기관의 계획에 따라 여러 명의 중재원들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경제기관, 기업소들의 전반적인 계획 및 계약규율 준수정형을 집중적으로 감독통제하는 중재기관의 검열·감독형식이며, 정상적인 검열·감독은 해당 국가중재기관의 전문 검열·감독기관성원들이 담당 대상기관의 계획 및 계약규율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는 형식이다.

(4) 檢閱·監督의 方法

가. 檢閱·監督의 準備

검열·감독사업은 검열·감독의 대상기관 및 기업소와 검열내용을 선정하고, 검열·감독사업요강을 작성하는 준비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업요

강에는 감독의 목적과 대상기관, 기업소의 특성에 맞게 반영해야 할 내용을 구성하고 ‘성원총화형식’을 구비하며, 검열·감독역량을 편서하고 정치실무적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중재기관에서는 검열·감독사업요강 초안이 작성되면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이를 완성하여야 한다.

나. 檢閱·監督事業의 進行

검열·감독사업은 그 요강을 대상기관, 기업소의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포치작업’과 이에 이은 ‘현장료해’, 관계인과의 담화, 필요한 문서에 대한 검토·분석, 현물실사, 대상에 대한 확인·감장, 해당인에 대한 심문·문답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검열·감독작업의 성격이 행정절차적인 특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진행 자체는 사법적인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檢閱·監督調書의 作成

검열·감독사업을 마치면 그 증거로서 검열·감독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의 작성방법은 중재재판 기일조서의 작성방법과 거의 비슷한데 감독기관, 대상기관, 진행기간, 목적을 기술하는 서론부분과, 총괄적 내용을 서술하는 부분, 범위반내용, 조사확정된 내용을 형태별, 문제별로 서술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조서에는 조서작성자가 서명하고 이어 대상기관책임자가 조서에 지적된 위반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라. 總和事業의 組織

‘총화(總和)사업’이란 일정한 형식으로 검열·감독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을 의미한다. 검열·감독에 대한 총화에는 감독성원들의 자체사업을 총화하는 총화와 감독사업을 결속짓는 총화가 있다. 감독성원들의 자체사업을 총화하는 총화에는 정상총화와 중간총화가 있는데, 정상총화는 일(日)총화와 주(週)총화로 구성된다. 중간총화란 검열·감독을 일정기간 진행한 다음 그동안의 사업을 분석하고 감독을 결속짓기 위한 것이다. 감독사업을 결속짓기 위한 총화는 중재재판형식과 행정회의형식에 의한다. 중재재판형식은 국가중재기관이 검열·감독사업을 결속하는 완전총화의 기본형식으로

서, 검열·감독과정에서 처벌할 만한 엄중한 위법현상을 적발하였을 때 현 시공개중재재판의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행정회의형식은 검열·감독과정에서 위법현상에 대한 처벌을 고려해야 할 경우에 사상투쟁의 방법이나 협의회방법으로 한다고 한다.¹²⁷⁾

3. 仲裁機關의 提起

(1) 提起의 意義

국가중재기관의 제기는 중재사건의 심리·처리와 감독과정에서 발견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해당 경제기관·기업소·단체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사건처리와 검열·감독과정에서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북한은 사회주의 재산관리와 경제관리에서 나타나는 위법현상들은 모두 경제일군들의 낡은 사상잔재로부터 흘러나온 착취사회의 유물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재산관리와 경제관리에서 계획 및 계약규율위반의 근원인 낡은 사상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과 틈을 없애버리기 위해 위와 같이 국가중재기관의 제기제도를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⁸⁾

(2) 提起의 必要性和 方法

국가중재기관은 첫째 경제기관·기업소·단체들이 범한 계획 및 계약규율 위반의 원인을 제거하고 위법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경제기관·기업소·단체들로 하여금 시정대책을 강구하도록 통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기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재기관은 위반사실을 해당 기관 등의 책임자가 능히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게 제기하나, 만일 그 책임자가 위법행위를 범하였다거나 또는 그 책임자의 권한으로는 위반사실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상급단위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 만약 위반의 근본원인이 다른 기관, 기업소 등이 생산조직을 잘하지 못하여 생산

127) 『중재법학』, 앞의 책, 124면.

128) 위의 책, 125면.

계획을 미달한 데 있었다면 그 기관, 기업소 등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둘째, 국가중재기관의 제기는 위반사실에 대하여 책임있는 ‘개별적 일군’에게 물질적, 규율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한다. 물론 국가중재기관은 사건처리와 검열·감독과정에서 얻은 자료에 기초하여 소속 기관·기업소·단체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일군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킬 수도 있으나, 해당 일군이 기관, 기업소에 기친 손해의 정도와 그 책임한계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기관·기업소·단체의 ‘사고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기될 수 있다. 그 외 국가중재기관의 제기는 계획 및 계약규율을 악화시킬 수 있는 관리문건을 시정 또는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하는데, 이는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인 인민경제계획이 오직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취소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중재기관의 제기에서는 사건의 심리와 검열·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법령위반사실을 지적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위법사실이 어느 법규범을 위반하였는가를 지적하여야 한다. 위법사실을 지적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위법사실을 발생하게 한 원인과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위법현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들도 지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중재기관의 제기는 행정적 지시와는 엄격히 구별되므로 국가중재기관은 경제기관, 기업소들로 하여금 해당한 시정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과업을 지시하더라도 행정적인 명령과 지시를 줄 수는 없다. 예컨대 ‘개별적 일군’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군이 범한 위법행위를 지적한 다음 손해보상대책을 취할 것을 해당기관, 기업소 책임자 등에게 제기하면 족하지 손해를 보상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지적할 필요는 없다.

(3) 提起의 效果

국가중재기관의 제기는 제기를 받은 대상기관, 기업소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운다. 즉 중재기관의 제기를 접수한 기관, 기업소는 반드시 제기에

서 지적된 문제들을 심의하여야 하며 그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지정된 시
일까지 해당 중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기관은 제기를 한 후 이를
방임할 것이 아니라 제기한 내용대로 위법현상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웠
는가를 알아보아야 하며 통지기일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보를 하도록 대책을 취해야 한다. 중재기관은 제기에서
지적된 위법현상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제때 취하지 않은 경제기관·기업
소·단체 또는 그에 책임있는 ‘개별적 일군’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北韓의 對外經濟仲裁制度

제 1 절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的 意義와 役割

I. 國際貿易仲裁의 意義

북한에서 국제무역중재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해결하는 무역중재기관의 활동으로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들의 무역상사들간에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중재원을 선정하여 해결하는 법적 수단”¹²⁹⁾이라고 설명된다. 비록 국가중재재판제도와 같이 중재라는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는 국가중재재판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의 일반적인 국제중재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북한의 무역상 개념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무역회사¹³⁰⁾와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의 무역분쟁에 관하여 북한의 국가중재기관이 관여할 여지는 없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 국제무역중재는 주로 북한의 무역회사와 외국기업 또는 개인 사이에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무역중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지만, 최근 개혁·개방정책의 채택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과정에서의 분쟁도 국제무역중재절차로서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국제무역중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국가의 국제무역중재를 ‘상업중재’라고 칭하면서 그 제도가 최대한의 이윤획득을 위한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반영하고 있다든지 상업주의제도 하에서의 재결은 항상 자본주의사회의 약육강식의

129) 『법학사전』, 앞의 사전, 82면. 한편 무역중재에 관해서는 “무역계약의 리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심의해결하는 중재”라고 하고, 북한의 “무역기관(상사 또는 회사)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무역회사들간에 맺어진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재결원을 선정하고 심의해결하는 민사재판의 한 형식”이라고 설명한다. 『민사법 사전』, 앞의 사전, 218면.

130) 북한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기업소를 특별히 무역상사 또는 무역회사로 부른다. 무역상사 또는 무역회사 역시 민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일 것을 요한다.

법칙에 따라 해결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¹³¹⁾ 그러나 북한의 국제무역 중재제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제무역중재제도와 그 대상 및 절차, 내용면 등에서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국제무역 중재는 상설적 중재와 특설중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상설적 중재는 상설절인 중재기관과 중재규정을 가지고 있다.

II. 對外經濟開放政策과 國際貿易仲裁制度의 活性化

1. 對外經濟開放政策과 對外經濟機構의 改編

북한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외경제부문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간주하고 그 기능과 역할에 극히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만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 기존의 자립경제정책만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해 나갈 수 없게 되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는 혁명적 방침'으로서 '무역제일주의'를 채택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방향을 일단 선회하였다.¹³²⁾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조치로서 정무원 결정 제74호(1991. 12. 28)에 의해 라진시의 14개 동·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²를 이른바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합영·합작·외국인기업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발표하였다.¹³³⁾ 이어 1992년 12월에 종래 정무원 산하의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를 통합하여 '대외경제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산하에 반민반관(半民半官) 단체적 성격을 가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남한 기업인들에 대한 방북 초청장 발급 등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창구역활을 담당하는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등을 두고 비교적 꾸준히 무역확

131) 『법학사전』, 앞의 사전, 83면.

132)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배경과 현황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 앞의 책, 47~49면.

133) 『황금의 삼각주: 라진 - 선봉 법규집(1)~(8)』(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1993~1998).

대 및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왔다.¹³⁴⁾

그리고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를 해체하면서 그 업무를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의 '대외경제협력총국', '조선삼천리총회사', '조선광명성총회사' 등으로 이관하고, '대외경제협력총국'도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민족개발지도국', 대외적으로는 '조선경제개발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유경제지대에 대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나진·선봉지도국', 조총련과의 제반 합영·합작사업을 총괄하는 '국제합영국', 남한과 조총련을 제외한 다른 외국기업 등과의 합영·합작사업을 추진하는 '국제협력국'으로 분화하였다. 그 밖의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북남경제교류협력국'은 남한기업의 대북투자업무를 총괄하였다.¹³⁵⁾

이러한 북한의 대외경제관기구들은 대체로 「대외경제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실질적인 대외접촉활동을 해온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해온 「대외경제협력총국」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북한에서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대외경제교역정책을 집행하였던 「대외경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새로 개편된 「내각」의 「우역성」으로 개편되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경제관리기구는 대폭적인 개편을 맞게 되었다.¹³⁶⁾

2. 外國人投資法制的 制定과 國際貿易仲裁

(1) 外國人投資關聯法과 紛爭解決節次

북한은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대외경제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개편하면서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투자기업·외국인 세금법」,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은행법」 등과 이에 관한 각종 시행세칙 등의 외국인투자관련 제방법률을 정비하였다.¹³⁷⁾ 특히 이러한 북한이 외국인투자관계법들은 분쟁

134) 「주간 북한 동향」, 제233호(통일원 정보분석실, 1995. 6. 11~17), 53면 이하.

135) 「중앙일보」, 1995. 6. 26, 12면; 「한국일보」, 1995. 7. 10, 12면.

136) 이에 관해서는 朴井源, 「北韓法律用語의 分析(IV) - 商事 및 對外經濟開放法制 編 -」 (한국법제연구원, 1998), 62~63면.

137) 1984. 9. 8.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합영법」을, 1985. 3. 7. 같은

해결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외국기업 등과의 투자계약의 체결, 기업의 설립과 경영,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토지의 임대,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외화의 반·출입, 세금문제, 외국기업 등의 해산,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의 제반법률문제와 관련한 규정체계를 가다듬고 있다.¹³⁸⁾

북한에서 1992년 10월 5일 채택된 『외국인투자법』은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¹³⁹⁾을 통괄하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에 관한 일반적·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은 제22조에서 분쟁해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¹⁴⁰⁾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분쟁사건은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서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분쟁

결정 제12호로 『합영회사소득세법』과 『외국인소득세법』을, 1992. 10. 5. 같은 결정 제17호로 『외국인기업법』을 같은 날 같은 결정 제18호로 『합작법』을, 같은 날 같은 결정 제19호로 『외국인기업법』을, 1993. 1. 31. 같은 결정 제26호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같은 날 같은 결정 제27호로 『외화관리법』을, 같은 날 같은 결정 제28호로 『자유자원법』을, 1993. 4. 8.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지하자원법』을, 1993. 10. 27.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법』을 각각 채택하였고, 1994. 1. 20. 같은 결정으로서 개정된 『합영법』을 채택하였다.

138)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배경과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은 신웅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한국국무역협회, 1998) 참조.

139)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을 구별하여 외국투자자는 공화국령역 안에 투자하는 외국법인과 개인을,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령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각각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합작기업은 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합영기업은 투자와 운영을 모두 공동으로 하고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외국인기업은 외국인투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외국인기업은 나진·선봉 등 자유경제 무역지대 안에서만 창설·운영할 수 있고, 합영기업, 합작기업은 그 이외의 북한지역에서 창설·운영할 수 있다), 북한지역 밖에서 거주하는 조선동포들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으며(제5조), 북한지역 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은 북한의 국내법인이 된다(제14조).

140)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라 함은 투자에 관한 권리의 침해, 투자계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상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할기관이 부여하는 투자의 승인에 관한 해석 및 시행 등 투자 자체와 관련된 의견상이 및 그로 인한 법적 분쟁만을 의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북한의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은 당연히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의견상이에 속하지 않는다.

의 해결방법으로서는 협의 및 북한의 재판소에서의 재판절차와 함께 북한 또는 제3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가 정례적인 방식으로서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4년의 『합영법』과 1985년의 『합영법시행세칙』, 그리고 1992년 10월 16일 개정된(정무원결정 제148호) 『합영법』에도 분쟁해결의 방식으로서 북한의 중재기관에서의 중재를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합영법은 신·구법 모두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구합영법 제26조, 개정합영법 제47조) 외국인투자법상의 규정과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밖의 북한의 다른 외국인투자 관련법률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위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¹⁴¹⁾

여기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중재는 국가중재재판제도와 국제무역중재제도라는 판이한 성격의 두 가지 분쟁해결제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중재기관”이 국가중재기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른바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합영법시행규칙에서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여 합영법에서 ‘중재기관’이라고 규정한 것을 무역중재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고(구시행세칙 제68조 제2문), 중재는 북한의 무역중재사건 심의절차에 따라 하되, 중재원고와 중재피고는 중재원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구시행세칙 제69조), ‘제국의 중재기관’도 ‘제3국의 무역중재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구시행세칙 제7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북한에서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분쟁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해결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

141)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법, 토지임대법, 합영법 등에서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뿐만 아니라 제3국의 중재기관도 예정하고 있으나,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외국투자은행법, 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자유무역지대 외국인기업상주대표사무소에 관한 규정, 자유무역항규정 등에서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만을 예정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된 합영법시행세칙에서 무역중재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중재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뒤이어 구시행규칙과 같이 중재당사자가 중재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중재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규정(개정시행세칙 제101조)을 든 것을 보면,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국제 무역중재기관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다른 외국인 투자관련법상의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종래의 국제무역중재라 함은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결하는 것을 주로 의미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제도적 조치라는 면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분쟁의 해결은 국가무역중재기관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무역중재제도는 보다 활성화되는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對外經濟契約法과 紛爭解決節次

북한은 대외경제관련법제의 정비의 일환으로 1995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결정으로 『대외경제계약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1985년 3월 21일 중국이 채택한 『섭외경제계약법(涉外經濟契約法)』을 모델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개방을 위한 법제정비의 내용은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정비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것도 그것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대외경제계약법』의 제정은 북한에서 대외무역, 투자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상업 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의 내용과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는 법적 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⁴²⁾ 즉 북한에서 이 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인기업법 등과 그 시행규정들 및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대외경제계약이 규율되어, 계약체결의 방식이나 효과, 계약불이행의 경우의 손해보상, 계약강제이행수단,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 법의 제정·공포로 인하여 대부분의 법적

142) 신웅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월간 경영업무』, 1995. 8, 20면.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정되게 되었다.¹⁴³⁾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은 그 명칭에 있어 남한과의 분쟁문제해결을 고려한 측면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의 분단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즉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남한의 기업과 체결된 경제계약에 관해서도 대외경제계약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려한 점이다. 그것은 중국의 경우와 같이¹⁴⁴⁾ 법의 명칭을 ‘국제’(涉外) 경제계약법으로 하지 않고 ‘대외’ 경제계약법이라고 하고, 그 내용도 그러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기업인과 기업의 대북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을 밝혀왔으며, 이에 따른 남한과의 분쟁에 대해서도 그 해결을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에 근거하여 다룰 것임을 밝혀왔었다.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은 총 5개장 42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제1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이행(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취소(제4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분쟁해결(제5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⁵⁾ 이 가운데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는 제42조에서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¹⁴⁶⁾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북한의 다른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분쟁해결의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북한의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열거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 북한의

143) 朴井源, 『北韓의 法律用語分析(IV)』, 앞의 책, 114면.

144)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은 중국과 홍콩, 대만, 마카오 기업과의 사이에 무역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 위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제 또는涉外’ 경제무역거래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한다고 명문 규정을 두었다. 松浦 馨·林 克敏, “中國의 國際商事仲裁의 現狀と課題(上)”, 『國際商事法務』, Vol. 22, No. 10, 1994, 1134頁.

145) 최근 일본을 통하여 어렵게 입수한 대외경제계약법 원문을 부록으로 실는다. 자료를 입수하는 데 도와주신 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외경제계약법의 일본어 번역문은 동경의 조선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月刊 朝鮮資料』, 1995년 9월호에 게재되었다.

146)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라 함은 무역·투자·서비스 계약의 체결, 이행, 양도, 변경, 취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만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남한이나 다른 외국의 무역·투자·서비스 계약당사자를 북한의 통상재판소의 관할 하에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사재판부가 무역분쟁을 해결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북투자를 한 외국과 남한의 당사자들이 북한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¹⁴⁷⁾

(3) 國際貿易仲裁節次에 관한 規定

한편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1956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소속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약칭한다)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소속 중재위원회에 있어서의 사건처리규정』(이하 ‘사건처리 규정’으로 약칭한다),¹⁴⁸⁾ 1989년 1월 4일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결정 제2호로서 채택된 『중재심문규칙』¹⁴⁹⁾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 또는 사건처리규정의 채택 후에 중재심문규칙이 제정되었고, 또 중재심문규칙의 내용상 위 각 규정과 다른 내용이 다소 있기는 하나 1993년에 발간된 일조무역회의 경제관련법령집은 이들 법령을 유효한 것으로 게재하고 있었던 데에서 북한에서 이들 규정들에 대해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⁵⁰⁾ 이에 다음에서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에 관하여 이들 규정들에 기초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와와의 연관성을 찾아보는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III.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의 限界

전술하였듯이 북한에서 국제무역중재제도는 외국과의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147) 『북한의 중재제도 -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1995), 137면.

148) 위 각 규정은 그 원문을 구할 수 없었으며, 그 내용은 日朝貿易會가 1993. 4. 발간한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經濟關係法令集(I)』에 번역·수록된 것을 참고한 것이다.

149) Rules of Hearing. 이것은 영문으로만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서, 자료는 최종고, 『북한법』(博英社, 1993), 265~274면. 그 번역문은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대한상사중재원, 1994)이 있다.

150) 『북한의 중재제도』, 앞의 책, 138면.

분쟁, 남한 또는 외국기업 등과의 무역·서비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절차를 규율하는 제반규정이 공표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분쟁해결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북한의 중재제도에 관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의 기관, 기업소 등이 외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체로 상대국 기업 등의 요구에 따라 홍콩·동독·불가리아 등 제3국의 무역중재기관에서의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하여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북한에 대해 무역중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절차에 대한 규정의 공개가 촉구되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북한의 국제무역중재기관의 중재에 따른 분쟁해결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그 절차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활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⁵¹⁾ 다만, 북한에서 『대외경제계약법』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국제무역중재기관의 역할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어 분쟁해결의 절차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갖추는 전환적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무역분쟁해결제도 및 그 절차적인 면에서의 한계에 대해 북한에서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한 것은 북한이 보다 대외경제부문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법제의 새로운 발전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제 2 절 北韓의 國際貿易仲裁制度 概觀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는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에 의해 체계화되는 등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는 종래 북한에서 이루어졌던 국제무역중재제도에 대한 북한의 종래의 중재관련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새로운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를 알아보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151) 그 때문에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와 교류에 관한 많은 책들은 되도록이면 분쟁발생시 제3국의 중재기구를 이용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도록 조언하고 있다.

I. 北韓 仲裁機關의 構成

1. 國際貿易仲裁委員會

앞서 밝힌 북한의 『중재심문규칙』에 의하면,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The 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북한의 무역기관 또는 다른 경제조직과 다른 나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국민간의 상품매매계약과 대리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심리를 담당한다고 한다(제1조). 북한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북한과 외국의 무역분쟁의 심리해결기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북한의 유일한 상설적 국제무역중재기관으로서 ‘대외경제위원회’ 산하의 반관반민단체적 성격을 지닌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¹⁵²⁾

북한의 중재기관은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일원화되었다. 살펴보았듯이 북한이 중재제도는 국가중재제도와 무역중재제도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이 법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분쟁해결은 『대외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2. 仲裁員의 資格과 任命

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국제법, 경제 및 기술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1년의 임기로 임명하는 11명 내지 15명의 중재원의 구성되고, 그 중재원 중에서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이 선출된다(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재심문규칙 제 7조, 제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주로 재판장(chairman of tribunal)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재원의 국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북한이 인정하는 북한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152) 참고로 구소련의 대외무역 중재법원은 대외무역조직을 관장하는 소련 대외무역부의 하부기관인 소련 상공회의소에 소속되어 있었고, 중국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국무원 산하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기구의 개편에 따라 이에 관해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책임비서(the Secretary General)를 임명하는데(위 심문규칙 제8조), 책임비서는 중재원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니며 중재원과는 다른 중재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¹⁵³⁾

II. 仲裁對象과 仲裁合意

1. 仲裁對象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북한의 『중재심문규칙』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북한의 무역기관, 다른 경제조직과 외국의 기업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매매계약 또는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심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외국과의 상품구매계약 또는 상품판매계약 및 위탁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및 그 계약에 따른 상품의 수송, 보험, 보관 및 기타 계약진행상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심리를 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¹⁵⁴⁾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북한법상 외국법인이 아니라 북한의 국내법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기업과 북한의 경제기관, 기업소 또는 협동단체와의 외부경제거래로 인한 분쟁은 그 거래의 내용에 따라 북한의 국가중재재판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투자계약당사자 사이의 분쟁만을 국제무역중재절차 등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⁵⁾

153) 책임비서는 중재를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반대당사자에게 송달하는 일,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일, 중재원의 명단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 재결서를 포함한 제반문서를 준비하고 그것을 번역하는 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중재심규칙 제11조).

154) 그러한 중재대상 범위는 중국이 1954. 5. 6. 처음으로 채택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내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두는 것에 관한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의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대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그 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국제무역중재기관의 중재대상을 점차 확대하였다.

15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분쟁사건만이, 합영법 및 동 시행세칙은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합영당사자 사이에 생긴 분쟁사건만이,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분쟁사건만이, 합작법은 합작과 관련한 분쟁사건만이

또한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에 따르면,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 봉사(서비스) 등 전반적인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이행, 양도, 변경, 취소와 관련된 분쟁도 중재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제2조, 제42조). 이에 따라 중재대상과 측면에서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제무역중재에서 다루는 중재대상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仲裁合意

북한의 규정에 의하면, 비록 중재대상 분쟁에 해당하더라도 쌍방 당사자 사이에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르기로 하는 중재합의가 없으면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심문규칙 제2조, 사건처리규정 제3조). 중재합의는 분쟁해결을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재결에 맡긴다는 취지의 서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본 계약서의 중재조항을 삽입하거나 중재합의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Ⅲ. 仲裁裁判節次

1. 仲裁申請書의 提出과 審査

중재재판절차는 신청인이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발신국 우체국의 소인(消印)날짜를 신청서 접수날짜로 한다고 하였다(심문규칙 제13조). 중재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직업, 주소, 조직을 대표하는 법적 대표자의 성명,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분쟁을 심리하기로 하였다는 중재합의의 내용, 신청인 주장의 상세한 내용, 사건심리를 위해 선정하는 중재원의 성명 또는 중재원의 선정을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맡긴다는 내용, 중재비용의 지불사유와 신청인의 싸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재계약의 체결 및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관계되는 서면의 원본 또는 복사문서를 첨부해야 한다(동규칙 제14조, 제15조). 중재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부

국제무역중재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본은 피신청인과 중재원에게 줄 것 각 1부씩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동규칙 제16조). 이들 서류는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이나 약속에 규정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동규칙 제20조).

중재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제출되면 중재위원회의 책임비서가 그 내용을 검토하며, 위의 각 사항 중 누락되거나 미비한 것이 있을 때에는 책임비서가 신청인에게 30일 이내로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 보충서류가 정한 기간 내에 도착하면 처음에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였던 서류가 제출된 날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 본다. 그러나 보충서류가 정해진 기간을 지체해서 도착한 때는 보충서류를 접수한 날이 중재재판을 신청한 날이 된다(동규칙 제17조 제2항). 보충서류가 정당한 이유없이 보충서류의 제출기간 후 3개월 내에 도달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한다(동규칙 제18조). 또한 책임비서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중재신청서와 첨부서류의 사본을 발송하면서 한 달 내로 항변의 근거문서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동규칙 제17조 1항). 그러나 서류보충기간이나 답변서제출기간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그 연장을 요청하면 책임비서가 이를 연장할 수 있다(동규칙 제19조).¹⁵⁶⁾

2. 仲裁裁判部の 構成

당사자는 중재원을 1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3인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중재원의 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국제무역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사건의 내용, 중요도 등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한다(심문규칙 제21조).

중재원의 수가 정해지면 책임비서는 당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소속된 중재원 중에서 실제로 사건의 심리·해결을 담당할 중재원을 선정할 것을 요청한다. 3인의 중재원이 심문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는 각각 1인씩의 중재원을 선정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중재원을 선정해야 한다(동규칙 제

156) 비록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절차에 있어서 북한의 기관, 기업소가 신청인이 되는 사건은 거의 없고, 주로 서방외국의 기업이 신청인이 된다고 한다. 『북한의 중재제도』, 앞의 책, 143면.

22조, 사건처리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 3인의 중재원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중재원 2인이 선정되면 책임비서는 그들에게 정한 기간 내에 재판장을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동규칙 제23조). 만약 신청인이 선정한 중재원과 피신청인이 선정한 중재원이 동일한 인물인 경우에는 그 중재원은 단독중재원으로서 활동한다(동규칙 제24조). 재판장이나 중재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그 임무를 맡지 못할 때에는 그 중재원을 선정한 당사자는 책임비서가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원 중에서 새로운 중재원을 선정하고 그들이 새로운 재판장을 다시 선정한다(동규칙 제25조, 제29조).

당사자는 중재원과 재판장, 혹은 단독중재원을 제척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척신청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심문시작 전에 해야만 한다(동규칙 제27조). 제척이 적절한지 아닌지의 결정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소속된 중재원들이 내리도록 하였으나(동규칙 제28조) 구체적으로 어떤 중재원이 제척결정에 관여하는지의 여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仲裁審理節次

중재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심문절차(hearing)에 의거해서 진행된다(심문규칙 제36조). 심문기일은 재판장이나 단독중재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규칙 제30조). 중재원은 책임비서에게 심문기일을 알리고 모든 당사자를 소환해야 하며,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고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경우에는 심문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동규칙 제31조). 당사자 이외에 위임장을 가진 당사자의 대리인도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동규칙 제34조). 북한법상 소송절차나 중재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데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변호사도 일반 대리인의 자격에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을 것이다.¹⁵⁷⁾

157) 참고로 중국에서는 외국변호사에 대하여 소송대리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경제개방의 진전과涉外법률의 정비 등에 수반하여 1988년부터는 외국변호사에게 변호사라는 자격이 아닌 단순한 대리인의 자격에서 중국의 중재재판절차와 상사분쟁 등의 법률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법규정상으로는 명백히 외국변호사가 변호사의 신분으로 소송 및 중재절차, 기타 정부기관이 관련된 법적 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지만, 변호사의 신분이 아닌 일반대

심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의 요구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동규칙 제32조). 당사자들은 중재원이 그들이 제출하는 서류만에 기해 심리를 수행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원은 제출된 서류만에 의한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언제든지 구두 심문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에 기해 심리할 수 있다(동규칙 제37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사건심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전문가에게 감정을 위탁할 수 있고 감정결론의 심리에는 감정인을 참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감정인의 결론이 중재재결을 구속하지는 않는다(사건처리규정 제27조).

한편 재판장이나 단독중재원은 심문시작 전에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조정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면 사건의 심문은 유보되고 요구한 시간이 제공된다(심문규칙 제35조).

피신청인은 신청인 청구의 심문 종료 전까지 반소(반대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본청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피신청인이 제기한 반소가 근거없는 것이고 심리의 진행이 그로 인해 지체되면 중재원은 그로 인하여 부가되는 비용을 피신청인에게 보상하게 할 수 있다. 반소와 관련된 중재비용은 주중재의 비용과 같이 처리된다(심문규칙 제38조).

심리의 주재는 재판장이 하며(동규칙 제41조 전문), 심리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중재원이 종결할 수 있다(동규칙 제46조). 또한 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심리 중의 분쟁이 당사자간의 상호동의로 해결된 때는 심리를 중단하고 적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동규칙 제48조), 중단된 심리는 일방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도 재개될 수 있다(동규칙 제47조 전문).

북한의 중재사건처리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국제무역중재위원장은 중재청구의 담보에 관하여 해당한 결정을 채택할 수 있고, 담보에 관한 결정에는 그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막연히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이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서 북한 민사소송법 제

리인의 신분으로 위 각 절차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劉榮軍, 『國際民事紛爭의辯護士の役割』(一橋大學 大學院 法學部 博士課程修了論文, 1993), 100頁.

81조의 규정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보인다.¹⁵⁸⁾

IV. 仲裁裁決

1. 裁決 採擇

중재원 3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는 다수결로 재결을 채택한다(심문규칙 제41조 후문). 1인의 단독중재인이 심리할 때에는 그가 단독으로 재결을 내린다. 국가무역중재에 있어서의 재결도 판결선고나 국가중재재판선고와 마찬가지로 심리종결 즉시 그 장소에서 합의 등을 거쳐 바로 선고되는 즉일선고제를 취하고 있다. 단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심리후 3일 이내에 재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결을 구두로 공포하되 당사자에게는 문서로써 고지하며 문서통지와 구두공포로써 심리는 비로소 종결된다(심문규칙 제42조). 재결은 조선어로 내리되. 당사자가 요구할 때는 당사자의 비용으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규칙 제43조).

재결서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직업, 심리에 참가한 국제무역중재위원회 구성원의 성명과 사건에 대한 설명, 재결본부, 중재비용의 분담 결정, 재결의 근거를 밝혀야 하고(동규칙 제43조), 중재원과 재판장, 책임비서가 수표(싸인)해야 한다.

2. 裁決 效力

재결의 효력은 종국적이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중재사건처리규정 제31조). 당사자는 재결서에 기재된 기간내에 재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절차에 들어간다(심문규칙 제45조, 사건처리규정 제31조, 제32조). 그러나 북한은 재결에 기한 구체적인 집행

158) 북한 민사소송법은 제81조에서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로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 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을 담보처분할 데 대한 판정이 집행은 해당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은 위와 같이 소송이 제기되고 난 후에만 가능하다.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재결은 국가중재기관의 중재재결과는 성격과 효력면에서 전혀 다르므로 그 집행방법 역시 국가중재기관의 중재재결은 북한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집행방법¹⁵⁹⁾의 예에 따라 재판소의 절차에 따라 집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은 민사소송법에 중재판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58, New York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 중재재결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 않을 수 없다.¹⁶⁰⁾

V. 調停節次

중재절차에서 조정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중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절차에서도 조정은 중요한 분쟁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중재심문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과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지만, 조정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면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 측에서 조정을 구하는 서면을 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타방당사자에게 보내고, 서면을 송달 받은 당사자는 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상대방에게 그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데, 45일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심문규칙 제49조).

당사자들이 조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면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국제무역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되 소속 중재인 중에서 조정자를

159) 북한의 민사소송법은 판결·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176조에서 “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 발급에 대한 신청은 판결·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0) 구소련과 중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고 있었고, 중국은 그 외에도 민사소송법에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간단한 조문을 두고 있다.

선정한다(동규칙 제52조). 조정자는 조정의 심문 중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규칙 제51조). 조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었을 때는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결식을 기재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당사자는 그 합의서에 수표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3조). 조정비용은 중재비용의 반이며, 당사자간의 부담은 상호합의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동규칙 제54조).¹⁶¹⁾

제 3 절 北韓의 『對外經濟仲裁法』의 分析

앞서 살펴본 북한의 중재제도에 관한 분석은 대외경제중재제도와 연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이 종래 중재제도, 특히 국제무역중재제도에서 발전한 대외경제중재제도를 만든 것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북한법제의 변화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의 적극적 참여를 예상하게 하고, 앞으로 보다 경제적 부문에서의 개혁조치를 가속화해 나갈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자세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I. 『對外經濟仲裁法』의 採擇 및 意義

북한은 1999년 8월 2일 ‘중앙방송’을 통해 『대외경제중재법』을 채택·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외국투자기업과의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규가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앞서 보았듯이 북한에도 국제무역중재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 실효적 시행에는 회의적이라는 것이 현실이었다. 비록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분쟁해결의 사례 내지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에서 새로이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한 것은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법제정비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의 경제난극복의 핵심이 서방의 외자유

161)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중재제도』, 앞의 책, 150~152면.

치에 있다는 점에서 외국의 대북투자보장을 위한 법제보완이라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알다시피 북한은 경제개방정책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이후 60여개에 이르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¹⁶²⁾ 그러나 북한에 대한 외자유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낮은 대외신인도, 정보의 비공개성, 열악한 투자환경과 투자관련 법체계의 미비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법제정비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이번의 『대외경제중재법』의 채택은 북한에서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외국의 대북투자의 확대를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 『對外經濟仲裁法』의 內容 및 特徵

『대외경제중재법』은 총 4개장(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2장: 중재제기, 제3장: 중재심리, 제4장: 재결과 그 집행) 43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대외경제중재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1. 主要 內容

(1) 對外經濟仲裁法의 基本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제1장에서 이 법의 기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언급한다.

첫째, 법의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¹⁶²⁾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관련법제 및 대외경관관련법제의 정비내용은 朴井源, 『北韓의 法律用語分析(IV)』, 앞의 책, 64~115면.

둘째,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에서 분쟁해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여기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투자·봉사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해난구조·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은 중재위원회 사업을 맡도록 하고 있다(제3조).

넷째, 분쟁심리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기업 내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조선동포, 외국인 사이에 생긴 분쟁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여기에서 해외조선동포의 개념에 남한의 기업인의 포함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다만, 이제까지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에서 해외조선동포의 범주에 남한의 기업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왔다는 면에서 볼 때, 남한의 대북투자과 관련한 분쟁해결의 법적 근거로 『대외경제중재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재제기 문건에 의하며,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인 분쟁발생 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여섯째, 대외경제분쟁해결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의 객관성·과학성·공정성·신속성의 보장의무를 국가가 지며, 이 원칙에 의해 분쟁당사자의 책임을 지우도록 하였다(제6조). 또한 대외경제중재활동에서의 국제규범의 존중과 국제적 협조에 관한 원칙 규정을 두었다(제7조). 대외경제중재가 기본적으로 국제적 분쟁해결의 성격을 띠는 면에서 북한이 이러한 입장은 바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의 자세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 仲裁提起

이 법은 제2장에서 중재제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중재제기는 시효기간안에 중재제기서¹⁶³⁾와 그에 첨부할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제8조).

또한 중재비용은 중재신청자가 중재제기문건을 제출하면서 내야 하며, 중재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되, 필요에 따라 중재비용의 일부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중재제기시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접수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접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정한 기간안에 신청자에게 재결원명단을, 피신청자에게 중재제기문건과 재결원명단 같은 것을 첨부한 중재심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제12조). 중재심리통지서를 받는 피신청자는 30일안으로 신청자의 중재제기에 대한 의견, 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를 밝힌 답변서와 증명문건을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 답변서와 증명문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13조).

한편 피신청자는 제기된 중재에 대하여 맞중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법 제9조, 제10조의 요구를 갖추어야 한다. 맞중재는 기본중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중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하였다(제14조).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시효기간안에 다시 중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제15조). 그리고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

163) 중재제기서에 포함할 사항은 1. 분쟁당사자의 명칭(이름)과 법적 주소,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 2. 중재기관, 준거법 같은 중재합의내용, 3. 청구 내용과 금액, 4. 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재결원의 이름, 5. 이 밖의 필요한 내용이며(제9조), 첨부할 문건은 1. 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서 원본, 2. 중재비용납부확인문건, 3. 중재를 제기하기전에 상대방에게 낸 청구문건, 4. 피신청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5. 이 밖의 필요한 문건 등이다(제10조).

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인으로는 공화국 국민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대리위임장을 내도록 하였다(제16조).

아울러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은 해당 문건을 소송제기자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3) 仲裁審理

이 법은 중재심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장).

첫째, 중재심리는 재결원¹⁶⁴⁾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결원협의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재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어야 하며, 분쟁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제18조).

둘째, 재결원명단은 중재위원회에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재결원명단에는 재결원의 이름과 직장 직위, 전문지식, 중재활동경력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하며, 재결원의 인물자료는 출판물에 소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분쟁을 심리할 재결원은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명단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분쟁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안에 재결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선정된 재결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제22조).

셋째, 분쟁을 심리해결하기 위한 재결원의 수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하되,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의 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그 수를 정하도록 하였다(제21조). 한편 재결원의 교체를 원할 때 분쟁당사자가 해당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제23조).

또한 재결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분쟁사건을 맡아 심리할 수 없을 경우 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재결원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제24조).

164) 재결원으로 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1. 해당 중재위원회 성원, 2. 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 및 경제 분야의 일군, 3. 변호사·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4. 필요에 따라 중재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조선동포 또는 외국인 등으로 규정하였다(제19조).

넷째, 중재심리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재결원협의회가 정하되, 중재위원회는 중재심리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알려 주어야 하며, 중재심리 시작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중재심리날짜 10일전에 통지받는 내용에 대하여 변경시켜 줄 것을 중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5조).

다섯째, 중재심리의 장소는 해당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심리를 공개로 할 수 있으며 소재지 밖의 제3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그리고 중재심리에의 참가는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하되, 필요에 따라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이 함께 참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7조).

여섯째, 중재심리는 재결원의 심리개시의 공시 이후 신청자의 청구진술과 피신청자의 답변으로 전개되며, 분쟁당사자들의 진술이 있는 후 재결원의 심리와 상호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심리과정에서 분쟁당사자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으며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줄 것을 재결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결원은 제기된 내용에 근거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해당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줄 것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또한 분쟁당사자는 증거보존, 재산담보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재판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였다(제30조). 그리고 재결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심리중지, 사건기각 사유를 발견하였거나 중재심리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중재심리를 중지하거나 끝내도록 하였으며, 중재심리기간은 중재제기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개월내에 마치도록 하였다(제31조).

일곱째, 중재심리조서는 서기가 작성하며 재결원과 서기가 조서에 수표(싸인)하도록 하였으며, 중재심리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는 분쟁당사자들의 동의 하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쟁당사자는 중재심리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조).

여덟째, 중재심리중에 화해와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화해를 할 수 있으며, 화해가 이루어

지면 진행중에 중재심리를 끝내도록 하였다(제33조). 다음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은 조정인과 분쟁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제출한 안에 쌍방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다(제34조).

(4) 裁決과 執行

『대외경제중재법』은 재결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4장).

첫째, 재결은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선고하며, 부득이한 경우 재결선고기간을 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5조). 재결문¹⁶⁵⁾은 조선어로 작성하며,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할 수도 있으나 번역문해석에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조선어원문에 준하도록 하였다(제37조). 재결문의 효력은 재결원의 투표와 중재위원회의 공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3명의 재결원이 분쟁을 심리한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재결원은 재결문에 투표(싸인)하지 않고 중재심리조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내도록 하였다(제38조).

둘째, 재결원은 중재심리의 중지결정과 사건기각결정, 화해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심리중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중재심리는 계속된다. 화해결정에는 화해조건을 지적하여야 하며, 화해결정은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재결심리후 재결문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위원회가 발송하거나 직접 주도록 하였으며, 중재신청 후 법적 주소가 달라진 경우 분쟁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40조).

셋째,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에 따라 지적된 기간 안에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재결문을 받는 날부터 30일 안에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 보충하거나 해석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165) 재결문에 밝힐 내용은 1. 분쟁당사자와 명칭(이름)과 법적주소,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 2. 중재심리날짜와 재결원, 서기의 이름, 3. 사건의 명칭, 중재심리참가정형, 4. 신청자의 청구내용과 피신청자의 답변내용, 5.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6. 재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7. 사건해결과 관련한 결론, 8. 중재비용부담관계, 9. 재결선고날짜, 10. 이밖의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기할 수 있으며, 6개월 안에 잘못된 재결의 취소에 대하여 해당 재판기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1조).

넷째, 책임있는 분쟁당사자가 재결문에 따른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의무이행당사자의 거주지나 집행대상의 재산 소재지의 재판기관에 해당 재결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2조). 한편 재결집행대상 재산이 북한 영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43조).

2. 特徵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다음의 성격과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한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1995년 『중재법』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기능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중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등 단행법률별로 분쟁해결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경제중재법』에 의해 무역중재에 관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이 제거되어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권익보호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법이 대외경제분쟁해결의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목적(제1조)이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 그간 북한의 대외무역분쟁에 관한 중재의 발전적 면모를 보이게 될 것이다.

둘째, 중재기관을 일원화하였다. 전술하였듯이 북한에서는 종전 중재제도가 국가중재와 무역중재로 나뉘어져 있어 법해석에 따라 중재기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 법에 의해 북한의 대외경제에 관한 분쟁해결은 『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해사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제2조).

셋째, 중재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기업·해외조선동포 등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를 분명히 하였다(제4조). 특히 해외조선동포를 포함한 것은 재일동포 기업과의 무역강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재대리인 및 재결원 자격요건에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넷째, 대외경제중재에 관하여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제7조). 종전 중재제도에서 중재결과의 실효성을 보완한 것으로 대외경제관련법에서 국제법준중의 의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보다 국제사회에로의 참여의사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의 입장을 대외에 천명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다섯째, 중재제기와 심리에 있어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분쟁당사자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중재제기(제8조)와 중재위원회의 접수·부결결정(제12조), 피신청자의 맞중재 제기(제14조), 중재신청자의 중재제기 변경과 취소 내지 청구포기(제15조)에 대한 규정에서 그러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중재심리는 재결원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결원협의회’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였으며, 분쟁사건처리에서 재결원의 독립성을 명시하였다(제18조, 제19조). 그리고 중재심리는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으로써(제26조) 분쟁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여섯째, 분쟁해결 원칙으로 객관성·과학성·공정성과 신속성을 명시하여(제6조) 당사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기존의 태도에서 보다 발전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분쟁해결의 공정성·신속성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투자한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 예컨대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의 중재제기 후 10일내 접수결정(제12조), 중재심리기간의 5개월 제한(제31조) 등의 규정을 들 수 있다.

Ⅲ. 問題點 및 限界

『대외경제중재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 및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법의 체계상 문제와 관련되어 법규의 적합성 미비를 들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이 대외경제부문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인투자법·합영법·대외경제계약

법 등 관련법규 및 하부규정의 정비가 미비하여 법해석 및 적용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의 입법체계의 낙후성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조항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중재비용, 중재제기시 필요문건, 재결원자격, 중재제기 및 심리절차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재비용의 구체적 요율표가 제시되어야 하고, 중재제기 문건상 ‘기타 필요문건’이라는 대목은 모호한 내용이다. 이렇듯 애매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실제 중재절차 진행시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에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대외경제분쟁의 중재에서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은 공정한 분쟁해결을 보장할 장치가 미비하고, 법집행효력에 대해 의문이 여지가 있다. 이 법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합병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제3국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가 배제됨으로써 분쟁해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또한 재결의 집행상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법은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한다고 천명하지만, 북한은 ‘국가와 타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른바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협약 또는 ‘워싱턴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법집행상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대외경제중재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제규범의 준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이 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IV. 評價와 展望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정비의 일환으로서 발전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법제면에서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법제정비의 지속적 추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북한은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대북투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오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은 북한의 외자유치법령에 미비성, 불완전한 법률구조 및 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체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외국인투자유치와 대외무역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상황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난극복에는 외자유치 확대 및 대외무역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의 확대를 위한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거나 북한의 외자유치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 관련 법제정비작업은 계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지적하였듯이 북한의 대외경제관련법은 중국의 경제개방을 위한 법적 정비의 내용과 많은 점에서 유사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외국으로부터의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대북투자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인 바의 외자유치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중재와 관련하여 북한은 종래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된 『대외경제중재법』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이에 따른 중재심리에 의해 분쟁당사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체계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이 형식적인 중재절차만을 보여줄 뿐이고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실패하고 말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은 남북경협과 관련하여서도 남한의 기업과 기업인이 대북투자자와 연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의해 그 권익이 보호받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장 中國과 北韓의 仲裁制度 比較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중국의 중재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방관련 법제정비의 과정과 내용이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에 따른 법제정비의 과정과 유사한 면이 많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중국의 중재제도에 비추어 북한의 중재제도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개혁과 내용에서 괄목하는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법제도적인 면에서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재제도에 있어서도 중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로서 중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외국의 중국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러한 면은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하려는 북한에게 많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 중국의 중재제도를 중재법에 근거하여 개관한다.

제 1 절 中國의 仲裁制度

앞서 설명하였듯이 중재제도는, 중재기관이 분쟁 당사자의 합의 또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분쟁에 대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결을 내리는 분쟁해결제도이다. 이 제도는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송을 대체하는 민사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중재법은 1994년 8월 31일 제8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이하 중재법이라 한다)’으로 제정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중국의 경제개혁·개방 정책의 본 궤도에 오름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대외무역분쟁 및 외국기업과의 합자·합작투자와 관련한 분쟁의 중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중국의 중재법은 중국의 경제개방 관련법제 가운데 서방국가들로부터 괄목할 만한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에 중국의 중재법에 관하여 개관한다.

I. 沿革과 立法背景

1. 中國 仲裁法の 沿革

중국의 입법과정을 보면, 중국에서 중재제도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전반기까지에 걸쳐서 형성되어왔다. 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로 나누어지는데, 국내중재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주로 경제계약 중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서 기술계약중재, 노동쟁의 중재, 저작권계약중재, 상표권중재, 농업도급계약중재, 부동산중재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발전되어왔다.

중국에서 1994년에 중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중재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 14개의 법률, 182개의 행정법규, 190개의 지방성의 법규로 분산되어 있었다. 1994년 제정된 중재법이 발효되기 이전, 즉 1956년에 제정된 중재잠행규칙은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1988년, 1994년, 1995년) 개정되었다.¹⁶⁶⁾

2. 涉外仲裁制度의 發展

중국의 섭외중재제도는 국제경제무역중재와 해상중재로 나누어 발전하였는데, 모두 1950년대에 성립하여 지금까지 40여년의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1) 國際經濟貿易仲裁

1954년 5월 4일 중국 정무원은 제215차 회의에서 중재의 방식을 통해 대외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단체인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의 대외경제무역중재에 관한 최초의 법규인 것이다.

166) 중국의 중재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관해서는 姜玟中, “中國 民事訴訟法에 관한 몇 가지 考察”, 『法學論叢』, 제12집(국민대 법학연구소, 2000), 104~108면.

이러 1956년 3월 31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의하여 중재절차규칙이 제정되고, 북경에 ‘대외무역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국제적인 무역분쟁을 중재하는 정식기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후 1966년부터 약 10년간에 걸친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경제무역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의 발전은 거의 정지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1978년 말에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 鄧小平(덩샤오핑)에 의해 개혁·개방 정책이 표방되면서 국제무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게됨에 따라 1979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제정한 후 1980년 2월 26일 대외무역중재위원회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로 개칭하면서 그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1982년 중국의 ‘민사소송법’(試行)¹⁶⁷⁾이 실시된 후 1983년 『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를 제정하여 국제간의 무역분쟁을 중재나 사법절차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제3국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6년에 중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약(1958년의 뉴욕조약)에 가입하였고, 1987년에는 GATT의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며, 1988년에 ‘다자간 투자담보 기구조약’에도 가입하였다. 그리고 1988년 9월 12일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새로운 중재규칙(1989. 1. 1.부터 시행)을 제정하여 1956년에 제정된 ‘중재잠행규칙’을 대체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중재안건의 수리범위를 일체의 국제무역 관련 분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¹⁶⁸⁾

이를 계기로 하여 중국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深圳 연락사무소를 분사무소로 승격시켰으며, 중재안건의 처리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중재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중재인으로 초빙하여 활동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⁶⁹⁾ 또한 1990년 초에 다시 上海 분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며, 그 해에

167) 이 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실험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91년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168) 중국의 국제경제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개관은 余經松 外 主編, 『國際經濟法』(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457~521면).

169) 成百營,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的 內容과 問題點 考察 - 涉外仲裁制度를 中心으로 -”,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조약’(일명 워싱턴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1993년 2월부터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1993년 2월부터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¹⁷⁰⁾ 그리고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부터 실험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試行)’은 폐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의 중재법은 1994년 8월 31일 제정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1995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2) 海事仲裁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이하에서는 CMAC로 약칭함)는 중재에 의하여 선박·해상운송·해상보험 관련 분쟁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1959년 1월 8일 설립되었다. 이와 별도로 『해사중재잠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중국에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의 실시 후 해사중재의 수요가 늘어나자 1982년에 국무원은 해사중재위원회의 안전처리범위를 확대하고, 중재인의 수를 늘리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1984년 11월 1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의 연해지구 및 항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984년 11월 28일 최고인민법원에서 廣州·上海·青島·天津·大連 등 5개 항구도시에 해사법원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해사중재업무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중국 해사중재위원회는 1988년에 ‘중재잠행규칙’을 대폭 개정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가, 현재 중재법의 시행으로 다시 대폭 개정된 중재규칙을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의 ‘해사중재규

한중법학회 제18회 정례학술발표회 발표 논문(한중법학회, 1998. 3. 26), 5면.

170) 이 조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비준을 거쳐 1993년 2월부터 중국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칙'은 '深圳 및 上海 분회사무소의 권한과 업무범위'에 관한 1개 조항(제11조)을 제외하고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과 동일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¹⁷¹⁾

3. 中國 仲裁法の 制定背景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는 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중재관련규정들에 의해 중재가 실시되어 왔으나, 그 동안 중국의 중재는 행정중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외자유치와 선진기술의 도입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다. 경제개혁과 개방의 심화발전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에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중국은 중재를 통한 외국인의 대중국투자의 제도적 보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기준에 적합한 중재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중국의 인민법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중국의 중재법은 중국의 자체적인 입법경험을 집약하는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재관행 및 서구 국가들의 중재법, 뉴욕조약·워싱턴조약 등의 국제조약, 세계 중재통일화 법안(1985년의 UNCITRAL 모델법), 국제기구(예를 들어 ICC)의 중재규칙 등에 나타난 장점을 많이 참고하여 제정되었다. 특히 그 가운데 UNCITRAL 모델법을 가장 중요한 참고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마련된 중국 중재법은 다음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¹⁷²⁾

첫째, 협의중재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다.

둘째, 인민법원이 중재기구의 재결을 존중하도록 하는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국내중재에 비하여 섭외중재는 법원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도록 규정하였다.

171) 이에 관한 설명은 『중국법』(사법연수원, 2000), 190면.

172) 成百營, 위의 논문, 8면; 『중국법』, 앞의 책, 191면.

넷째, 국내중재와涉外중재를 하나의 법규 안에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중재 제도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후술한다.

II. 中國 仲裁法の 原則

1. 協議仲裁의 原則

중국 중재법은 제4조에서 “당사자가 중재의 방식을 채용하여 분쟁을 해결함에는 반드시 쌍방이 자원하여 중재합의를 하여야 한다. 중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가 자원하여 중재조직에 분쟁의 해결을 위임하는 제도로서, 당사자 사이에 자원한 의사에 기한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중재기구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재는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중재합의에서 특정한 중재조직을 선정하지 아니하면, 중재조직의 관할을 확정할 방법이 없다.¹⁷³⁾

이러한 협의중재원칙은 과거 중국의 국내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중국의 국내중재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중재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협의중재원칙에 의해 중국에서 국내중재에도 협의중재의 원칙이 적용되게 됨으로써 발전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2. 事實에 根據한 法律規定에 附合·公平·合理的 紛爭解決 原則

중국 중재법은 제7조에서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규정에 부합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중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릇 중재에 맡기는 목적은 그들 사이의 분쟁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중재조직이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규정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재결을 하여야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재조직은 반드시 사실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173) 章武生, 左衛民 主編, 『中國司法制度論』(北京: 法律出版社, 1994), 192면.

증거를 수집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 점에서 중국 중재법은 제43조에서 중재정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외에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4조에서 전문적인 문제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련 부문에서 감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8조에서 재결 취소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재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사회 공공이익을 위반하여서도 아니 된다. 만약 재결에서 의거한 사실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당사자가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주는 증거를 은닉한 경우 또는 중재원이 법을 왜곡하여 중재한 경우 등을 재결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一裁終局의 原則

중재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 중재법은 제9조에서 “중재는 1차판결의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번 중재 재결(판정)이 선고 되면,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중재신청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一裁終局’의 원칙을 말한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신속한 것이 되게 하는 관건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중국의 국내중재에 있어서는 ‘1재 2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 중재법에 의한 1재중국의 원칙에 의해 중국에서도 국제관행에 따라 국내중재와涉外중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하였다.

4. 民間仲裁의 原則

종래 중국의涉外중재는 민간중재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내중재는 중국의 행정기관인 공상행정관리국의 산하에 소속되어 강한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른 폐단이 많았다.¹⁷⁴⁾ 전술하였듯이 중국의 국내중재의 위와 같은 행정적 성격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중재법은 중재기구 설치에 있어서 민간중재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중국 중재법은 제14조에

174) 章武生, 左衛民, 위의 책 193면 참조.

서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고 규정하여 민간단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며, 중재위원회 상호간에도 예속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5. 獨立仲裁의 原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중재의 원칙이 조직기구의 면에서 행정기관에 예속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독립중재의 원칙은 실제의 중재활동에 있어서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중국 중재법은 제8조에서 “중재는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독립중재의 원칙은 중재인의 독립과 중재정(仲裁廷)의 독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중재인의 독립은 중재인이 중재협회나 중재기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재인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독립하여 판단하며, 자신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재결문에는 서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중재인의 독립은 중재정이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간섭으로부터도 독립하여 판정을 하는 중재정 독립의 기초를 형성하게 된다.¹⁷⁵⁾

Ⅲ. 中國 仲裁法의 主要內容 概觀

1. 仲裁法의 適用範圍

중국 중재법은 제2조에서 평등한 권리주체(공민, 법인,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한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상 이익에 관한 분쟁을 중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분쟁’에는 매매계약·건설공사도급계약·화물운송계약·가공수주계약·창고보관계약·임대차계약·리스계약·기술계약

175) 실제로 중재기구의 중재활동에 있어서는 인민법원의 경우와 대비할 때 행정기관이나 당으로부터의 간섭이 훨씬 적다는 면에서 중재 재결이 인민법원의 판결보다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예가 많다고 한다.

등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고, ‘기타 재산상 이익에 관한 분쟁’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에 대한 분쟁이 포함된다.¹⁷⁶⁾

한편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쟁의나 혼인·입양·감호·부양·상속 등에 관한 분쟁 등이 해당된다(중재법 제2조, 제3조). 그 외에도 노동쟁의나 농업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농업도급계약 분쟁의 중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섭외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이 섭외적 요소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섭외’적 요소의 의미는, 중국의 법률에서 그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예는 없으나,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이나 무국적인 또는 외국기업 내지 조직인 경우와 당사자간 민사법률관계의 성립·변경·종료의 법률 사실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및 분쟁대상물이 외국에 있는 경우 등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섭외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⁷⁷⁾

2. 仲裁合意

중재합의¹⁷⁸⁾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즉, 중재합의는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 또는 분쟁 발생 전이나 후에 독립하여 서면으로 체결하는 중재협약에 의한다. 중국 중재법은 제16조에서 중재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중재를 청구하는 의사표시, 중재사항, 중재위원회의 선정 등 3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3가지 사항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특정한 중재위원회에 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빠져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176) 李萬熙, “새로이 제정된 中國의 仲裁法에 관한 연구”, 『法曹』, 1996년 11월호, 31면 참조.

177) 1992년 最高人民法院 ‘中華人民共和國 民事訴訟法の 적용 문제에 관한 약간의 의견’ 참조. 섭외중재판단 및 국외중재기관의 중재판단에 대한 사법재심사에 관해서는 姜玟中, 앞의 논문, 116~117면.

178) 남한의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 대신 ‘중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중재법 제3조).

중재합의는 성질상 본 계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약의 변경, 해제, 종료, 무효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는 본 계약의 내용에 들어 있는 중재조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중재법 제19조, 중재규칙 제5조).

3. 仲裁組織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조직은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중재합의회 및 중재정, 중재원으로 이루어진다.

(1) 仲裁委員會

중국 중재법은 제11조에서 중재위원회의 설립요건으로 자신의 명칭·주소 및 정관, 필요한 재산, 위원회의 구성원, 초빙한 중재원 등 네 가지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재위원회의 정관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2명 내지 4명, 위원 7명 내지 11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3분의 2 이상이 법률 또는 경제무역의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그 구성 및 구성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의 권한으로는 중재안건 수리의 결정권(제24조), 당사자의 위임에 터잡아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정을 구성할 중재원을 초빙할 권리(제13조), 중재원의 위법행위시에 제명(제58조) 등의 처분을 할 권리 등이 있다.

(2) 仲裁員의 資格要件

중국 중재법은 제13조에서 중재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직한 인사 중에서 중재원을 초빙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다음에서 열거하는 조건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중재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할 것, 변호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할 것, 심판원(법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할 것, 법학연구·법학교육에 종사하여 고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을 것,¹⁷⁹⁾ 법률지식을 가지고 경제무역 방

179) 李萬熙, 앞의 논문 33면.

면의 전문직에 종사하여 고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거나 그와 동등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¹⁸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재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중재원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섭외중재위원회는 법률·경제무역·과학기술 등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 국적 인사 중에서도 중재인을 초빙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7조).

이처럼 중재법에서 중재원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도 중국 인민법원 법관들의 평균수준보다 중재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자질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국 중재법은 제34조와 제35조에서 중재원에 대한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도 그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근친족인 경우, 사건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중재원이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과 사이에 기타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사로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면담하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접대나 선물을 받은 경우 등이다.

중국의 국내중재위원회는 아직까지 중재인 명부를 구비하지 않고 있지만, 섭외중재위원회는 중재인 명부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재인의 성명·국적·전문분야 별로 기록하여 비치하고 있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등이 제정한 ‘중재인의 초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중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中國 仲裁協會

중국의 중재협회는 중재기구들의 협의체로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 중재법은 제15조에서 ‘중국중재협회’는 사회법인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중재위원회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스스로 제정한 규칙에 기하여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중재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업무감독을 할 것으로 정해져

180)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재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중재법과 다른 점이다. 우리 중재법은 제13조에서 소극적으로 중재인의 기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적극적인 방면에서 중재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있다.¹⁸¹⁾ 그리고 중국중재협회는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재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仲裁廷

중국의 중재법은 제30조에서 중재정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중재정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중재정¹⁸²⁾과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독임중재정으로 구분된다.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하여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하게 할 수 있다(제31조).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석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 주임이 직권으로 수석중재인을 선정한다(제32조).

중재정의 권한에는, 중재합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확인권(제19조), 중재절차를 개시할지 여부의 결정권(제37조), 중재의 개정을 공개로 할 것인지 여부와 개정을 연기할지 여부의 결정권(제40조, 제41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증거수집권(제43조),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권리(제44조), 조정권(제51조), 재결권(제53조) 등이 있다.

4. 仲裁節次

(1) 仲裁申請의 提出

중국 중재법은 제22조에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는 중재위원회에 중재합의서와 중재신청서 및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3조에서 중재신청서의 기재사항에는 ①당사자의 성명·성별·연령·직업·근무단위 및 주소 또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명칭·주소·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직무, ②중재청구와 그 근거되는 사실·이유, ③증거와 증거 취득경위·증인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1) 成百營, 앞의 논문 12면.

182) 이 때 수석중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수석중재원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제31조).

한편 중재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중재시효를 지켜야 한다. 중재법은 제74조에서 “법률이 중재시효에 대해 규정한 때에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신청이 제출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중재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중재비용을 수취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물가관리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仲裁申請의 修理

중국 중재법은 제24조에서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받은 후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수리조건에 부합하면 이를 수리하고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수리하지 않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제35조에서 수리 후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중재규칙과 중재인명부를 송달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분, 중재규칙 및 중재인명부를 송달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부분을 송달 받은 후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제출 받은 후에는 역시 중재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신청 수리 후에도 신청인은 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反訴와 유사한 反請求를 제출할 수도 있다(제27조).

(3) 財産保全申請

중재법은 제28조에서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 당사자의 행위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재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어렵게 될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할 경우에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인민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이를 증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인민법원이 결정하도록 한다(중재규칙 제23조).

(4) 審 理

중재법은 제39조에서 중재정은 원칙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하되, 당사자 사이에 개정심리를 하지 않기로 협의가 된 경우에는 출석하여 구두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증거서류 등 서면자료에 근거하여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심리를 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규칙에 정해진 기한 내에 개정기일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재규칙에 정해진 기한 내에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일의 연기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또한 제40조에서 중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였다.¹⁸³⁾ 당사자 사이에 공개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공개진행을 할 수 있으나, 국가비밀에 관계된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쌍방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중재활동(중재신청서의 제출과 개정에의 참여 포함)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수임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이 중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21조에 의하면, 중재정이 재결을 내리기 전에는 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서면으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은 제43조에서 중재정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47조에서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수석중재원 또는 독임중재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최후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3) 이 점은 특히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중재를 소송보다 선호하게 되는 한 이유가 된다.

(5) 仲裁中の 和解와 調停

중재중의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협상하고 상호 양보하여 분쟁 해결의 협의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중재법은 제49조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를 한 경우 중재정에 화해합의에 따라 재결을 내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중재중의 조정은,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그 동의하에 중재정이 주재하여 쌍방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고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중재법 제51조, 제52조에 의하면, 중재정은 재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할 경우에는 중재정은 필요적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바로 재결을 하여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조정서는 중재 재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서에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한 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당사자들이 송달영수증에 서명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들이 송달영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조정을 번복하면, 중재정은 바로 재결을 하여야 한다.

중재중의 화해와 조정은 모두 당사자들이 자원하여 하는 협상의 기초 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분쟁을 해결하는 협의에 도달하는 방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조정이 중재정의 주재 하에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이 송달영수증에 서명함으로써 재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방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화해의 경우는 중재정이 참여하지 아니하고 화해협의를 달성된 후에 당사자는 이에 근거하여 중재정에 재결을 청구할 수도 있고,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화해 후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에도 당사자는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협의를 재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¹⁸⁴⁾

184) 章武生, 左衛民, 앞의 책 206, 207면 참조.

(6) 仲裁裁決

중재법의 규정(제53조)에 의하면, 중재재결¹⁸⁵⁾은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소수 중재원의 다른 의견은 재결서에 기입할 수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¹⁸⁶⁾ 독립중재의 경우에는 당해 독립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내려진다.

또한 제54조에 의하면, 재결서에는 중재청구, 분쟁사실, 재결이유, 재결결과, 중재비용의 부담 및 재결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분쟁사실과 재결이유의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재결서에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한다. 재결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진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인은 재결서에 서명하기 전에 재결서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재위원회는 중재인의 독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결서의 형식적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다(중재규칙 제56조).

중재정은 중재정이 구성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중재정의 요구로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필요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중재규칙 제52조). 재결서는 작성일자로부터 법률적 효력을 발생한다(제57조).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즉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중재를 신청하거나 제소할 수 없는 것(제9조) 및 집행력을 갖는 것(제62조) 등을 말한다.

중재정은 중재과정에서 청구의 일부에 관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만 먼저 재결을 할 수도 있다(제55조). 그리고 재결서에 문자 또는 계산상의 착오가 있거나 중재정이 이미 재결하였는데, 재결서 기

185) 우리 중재법 상으로는 ‘중재재결’ 대신 ‘중재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한국 중재법 제5장 참조).

186) 한국 중재법은 제30조에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당사자간의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며, 다만 중재절차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 내지 중재인 전원의 권한부여의 경우에 절차를 주재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에 빠트린 사항 등은 중재정이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재정에 재결서의 보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56조).

5. 仲裁裁決의 取消

중재는 민간조직인 중재기구가 제3자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재결을 내리는 것이다. 입법은 중재기구에 강제조치를 할 권한이나 중재재결을 집행할 권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중재의 진행과 중재재결의 실현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인민법원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중재제도는 사법제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원은 중재재결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가지게 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혹은 직권으로 법률규정에 위반된 중재재결을 취소하는 것은 감독을 행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중재법은 제58조에서 당사자가 다음 사유 중의 하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재결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⁸⁷⁾ 또 인민법원이 재결이 사회 공공이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재결취소신청을 할 때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9조).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재결취소 또는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60조). 인민법원이 재결취소신청을 수리한 후 중재정에서 다시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정에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중재를 할 것을 통지하고 재결취소절차는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중재정이 다시 중재하기를 거절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재결취소절차를 회복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61조).

187) 그 사유로는,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재결한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구에 중재를 할 권한이 없는 경우,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한 경우, 재결이 근거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재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 중재원이 당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뇌물을 요구·수수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仲裁裁決의 執行

중재는 당사자가 자원하여 중재기구에 분쟁해결을 위임하는 방식이므로 당사자는 마땅히 스스로 중재재결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일방 당사자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전혀 없다면, 중재재결을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재법은 그러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중재법은 제62조에서 일방 당사자가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른 일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국내중재의 경우, 피신청인은 중재재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¹⁸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중재재결불집행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이를 심사하고 이유가 있을 경우 재결의 불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제63조).

한편 섭외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열거된 사유¹⁸⁹⁾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재결을 취소하는 재정을 하거나(중재법 제70조), 재결의 불집행을 결정할 수 있다(제71조).

188)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의 사유라 함은 (1)당사자의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없고, 사후에 서면상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경우, (2)재결한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구에 중재를 할 권한이 없는 경우, (3)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배한 경우, (4)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5)법률의 적용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6)중재원이 중재 중 뇌물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이다. 이 가운데 (4), (5)를 보면, 중재의 절차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인정이나 법률문제에까지 심사범위가 미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섭외중재의 경우와 다른 점을 알 수 있다.

189) 이 사유는, (1)당사자의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없고, 사후에 서면상의 중재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경우, (2)피신청인이 중재원의 지정에 대한 통지나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피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던 경우, (3)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중재규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재결한 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중재기구에 중재를 할 권한이 없는 경우이다.

그리고 중재법은 제64조에서 일방 당사자가 재결의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재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결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집행을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결취소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집행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 절 中國 仲裁法의 特徵과 問題點

I. 中國 仲裁法의 特徵

앞서 살펴본 중국 중재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¹⁹⁰⁾

첫째, 중국의 중재기구의 성격에 관해서이다. 중국의 중재기구는 원래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현행 중재법에 의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제67조), 중재기구의 반관방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섭외 중재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회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국제상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국국제상회는 실제로 국무원 대외무역부의 감독 하에 놓여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더욱이 중국국제상회와 중재위원회의 역대 주임과 실질적 책임자는 중국 당정의 고위 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외국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국 중재기구의 민간기관기구로서의 성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¹⁹¹⁾ 또한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외국의 중재위원회에 비해 그 권한 범위가 넓다는 점도 사실상 중재정의 중재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재합의의 내용에 있어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합의에 있어서 중재위원회의 선정을 필요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재합의에서 중재절차에 대하여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일

190) 譚兵 主編, 『中國仲裁制度研究』(北京: 法律出版社, 1995) 415~424면.

191) 成百營, 앞의 논문, 33면.

반적인 외국의 중재법과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 중국 중재법은 당사자의 선정과 중재기구의 지정을 결합한 특수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중재의 당사자의 합의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넷째, 중재절차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는 중재법이 규정한 절차가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가 중재규칙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재절차는 반드시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규칙에 의해서만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중재중의 조정제도를 두고 있는 점이다. 중국의 중재제도는 조정제도와 특수하게 결합되어 있다. 중국 중재법상의 '중재중의 조정'에서 다음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으며 중재인이 직접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조정은 중재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중재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이며 중재절차와 병립하는 조정이 아니라는 점, 조정은 중재와 마찬가지로 중재기구의 명의로 아닌 중재인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등이다.

여섯째, 재결에 있어 중국 중재법은 다수결에 의하여 재결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에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중국 이외의 외국 중재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일곱째, 재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내중재의 경우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중에 사실인정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법률 적용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실상 이중심리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점이다.¹⁹²⁾

II. 中國 仲裁法の 問題點

중국의 중재제도는 그 구체적인 집행 현실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¹⁹³⁾ 이는 전술한 중재법의 규정과 그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 현

192) 『중국법』, 앞의 책, 207~209면.

193) 成百營, 위의 논문, 26면.

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부분이다.¹⁹⁴⁾

1. 仲裁裁決의 執行時效期間의 短期

중국 중재법은 중재재결의 집행시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74조, 제75조). 그러나 중국 민사소송법은 제219조에서 “쌍방 모두 혹은 일방이 공민일 경우 1년, 쌍방이 법인일 경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일 경우 6개월이라는 시효는 현실적으로 집행을 위한 기간으로는 통상적인 규정에 비하여 매우 짧은 기간이다.

2. 仲裁裁決의 取消申請期間의 長期

중국 중재법은 제59조에서 당사자가 중재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취소신청 기간이 너무 길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법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⁵⁾

3. 仲裁人 選定方式의 非合理性

살펴보았듯이 중국 중재법은 제31조에서 합의중재정의 구성은 당사자가 각 1인을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할 수 있고, 수석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하거나 합의하에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임하여 선정하게 할 수 있으나, 만약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석중재인을 합의하여 선정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 주임이 직권으로 수석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그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합의하여 수석중재인을 선정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중재위원회 주

194) 『중국법』, 앞의 책, 209~211면.

195) 참고로 남한 중재법은 제36조 3항에서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이 수석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리라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중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본래의 중재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4. 仲裁節次에 대한 仲裁委員會의 過多한 介入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중재위원회는 상당히 광범위한 절차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중재안건의 관할권결정 같은 것은 다분히 사법적(司法的)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중재절차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를 안고 있다.

5. 執行段階의 法院의 實體的 審査

중국의 중재법이 국내중재의 경우 법원이 집행 단계에서 사안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문제점은 실제에 있어 섭외중재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규정상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섭외중재의 경우에도 실제로 인민법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증거 흠결’ 등을 이유로 중재재결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예가 많다는 현실은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6. 仲裁人的 文化的 中立性 問題

실제상 CIETAC 중재위원회의 중재인 명부에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외국인의 중재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국인 중재인으로 중재정이 구성되고 있다. 더욱이 외국 당사자에게는 언어상의 문제로 번역료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재인의 문화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섭외중재의 경우 ICC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재기구의 중재에 있어서는 등록된 중재인 명부가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는 중재인을 선정할 때 분쟁 당사자와 다른 국적의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국 중재법의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⁹⁶⁾

196) 成百營, 앞의 논문, 34면.

Ⅲ. 中國 仲裁制度에 대한 評價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현행 중재법은 종래의 중재제도를 여러 면에서 개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여러 법령에서 혼재하고 있었던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를 하나의 법제로 일원화하여 규정한 점, 중재원칙에서의 협의중재원칙의 확립, 민간중재의 성격 강화 등에서 발전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제도는 중국의 경제개방을 위한 법제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재제도에 관한 국제규범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중국의 중재제도의 변혁을 도모한 점은 서방의 중국 투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중국에서 인민법원이 사실상 '사법의 독립'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이나 행정권력으로부터 많은 간섭과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심한 회의론을 가져오는 실정에서 중국의 중재제도가 상대적으로 행정간섭을 덜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평가이다. 다시 말해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은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중재제도의 보완은 북한의 대외중재제도에 비해 좀 더 앞선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대외중재제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한 시기면에서 중국은 북한에 앞서 있다. 북한도 중재제도를 체계화하여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재제도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의 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 실제로 중재제도와 관련한 국제규범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면에서 완전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중재법과 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규범력을 국제적 기구와 규범에 따를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과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 중재제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국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비해 체계화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보다 중재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간파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의 도입은 기

존의 국제무역중재제도의 발전적 면모를 보이는 것이지만, 중재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행정적 통제의 경향이 많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면에서 중국의 그것과 대비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에서 북한경제의 회생 내지 발전에 대한 모델을 찾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평가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경제개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비의 내용과 방향은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의 대부분은 중국의 해당법제의 내용을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중재제도는 북한의 중재제도의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 장 韓國의 仲裁法과 南北 仲裁制度의 發展方向

제 1 절 韓國의 仲裁法 概觀

I. 仲裁法 改正의 必要性

최근 많은 국가들은 중재법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재제도의 발전과 관련해서 1985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관한모델법’(이하 ‘모델중재법’이라고 약칭함)¹⁹⁷⁾은 중재법을 개정하는 국가들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중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모델중재법을 기준으로 하여 중재제도의 국제화와 통일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중재법의 개정논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논의 끝에 중재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간 지속적인 국제무역의 확대와 성장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중재법에 대한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개정된 중재법은 1999년 12월 31일에 공포되고 당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1966년 3월 16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중재법은 33년만에 대폭 개정되었다.¹⁹⁸⁾ 개정 중재법은 기존 중재법과 그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입법 배경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 종전 중재법을 폐기하고 새로 중재법을 제정하였다고 할만큼 중재법의 개혁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¹⁹⁹⁾

다음에 중재법의 개정의 필요성은 다음의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중재법질서의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의 대두이다.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시에는 중재제도가 실무에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재에

197) 모델중재법은 대륙법체계나 영미법체계에 치우치지 않고, ‘유엔무역법위원회’의 유엔의 기관에서의 국제적 합의에 의해 성문화된 중재법 질서의 국제적 기준이다. 1986년 캐나다가 최초로 이를 수용한 이래, 미국의 상당수의 주,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러시아, 영국 등이 이에 가입하였으며, 1998년 독일도 모델법을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198) 『官報』, 제14395호, 1999. 12. 31, 38~49면.

199) 1999년 12월 31일 공포 발효된 개정 중재법에 대한 분석과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http://user.chollian.net/~mcchang/materials/commentary1.htm>. 한편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장문철, 『현대 중재법의 이해』(세창출판사, 2000. 8) 참조.

관한 규정이 삭제되기도 하였지만, 그 후 중재기관 설립과 함께 중재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1966년 단행법으로서 중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독일법을 그대로 수용한 일본 민사소송법상의 중재법 규정을 답습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국내외적으로 중재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았던데 비해, 우리의 중재활동은 오히려 미국(미국중재협회: AAA)이나 프랑스(ICC 중재법원), 영국(런던중재법원) 등의 중재기관들과 밀접한 연관관계 하에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3년 중재법이 개정되었다.²⁰⁰⁾ 그리고 중재제도에 관한 발전에 따라 체계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중재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국내 및 국제중재를 규율하는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다. 우리의 중재법은 국내 및 국제중재 모두에 적용되어 왔지만, 기존의 중재법은 국제중재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기준과는 많은 점에서 동떨어지게 되어 국제중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물론 우리가 가입한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에 의해 국제중재제도의 기준에 대응하는 법운영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국제중재에 관한 체계적인 중재법규범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진 각국들은 19세기적인 전통적인 중재법 체계에서 벗어나 중재법 활동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유엔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을 수용하게 되었다.

II. 改正 仲裁法의 基本方向과 特徵

1. ‘모델중재법’의 受容

개정된 중재법의 기본내용은 국내법체계와의 충돌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유엔무역법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의 기본형식과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

200) 개정된 주요내용의 예로는 중재절차나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해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바로 미국중재협회나 유엔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수용한 것이었다.

서 그 내용은 다음의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종래 중재법은 19세기말의 중재법의 기본 원리에 기초하여 중재절차와 내용이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함으로써 18개 조문만으로 구성됨으로써 중재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중재이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에 미흡하였다. 이에 대해 모델중재법이 현대의 중재법의 일반사항을 모두 규정하는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내의 중재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중재법의 체계와 내용을 수용하였다.

둘째, 모델중재법은 국제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모델법의 형식으로 성문화된 것으로서 각국이 자국의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모델중재법의 수용에 의한 국내법체계와의 상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셋째, 개정중재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도 현재 국내에서 발효중인 국제조약이나 중재에 관한 다른 특별법규들이 중재법에 우선하는 적용범위를 정함으로써 다른 법규와의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넷째, 개정 중재법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의 분쟁당사자나 중재대리인, 중재인 등이 한국에서 법률적 장애를 느끼지 않고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는 보다 완전한 중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중재에 대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다.

2. 改正 仲裁法의 特徵

다음에 개정 중재법의 특징을 언급한다.

첫째 구중재법이 독일 민사소송법의 중재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하였던 데에 비해, 개정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기초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행해온 중재활동이나 그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의 절차법을 모델로 한 구중재법이 미국·영국·프랑스의 중재센터의 중재관행사이의 차이로부터 야기되었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의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것이다.

둘째, 구중재법은 18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그 내용이 당사자자치에 맡기고 있었던 데에 비하여, 개정 중재법은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중재법도 당사자자치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중재활동의 기본 질서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²⁰¹⁾

셋째, 개정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수용하되, 우리 사법제도에 맞추어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모델중재법이 각국의 중재법의 통일을 위한 최상의 방안으로 무조건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재법의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즉, 각국의 소송절차 및 구조 그리고 사법제도가 각각 다양하므로 모델중재법의 형식은 국제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정 중재법은 국내중재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에도 적용되는 점에는 구중재법의 방식과 같다는 면에서 국제상사중재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모델중재법의 방식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제 2 절 改正 仲裁法의 主要內容 概觀

개정 중재법은 총 8장 41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개정중재법의 조문을 중심으로 구중재법과 모델중재법과의 비교를 통해 그 주요내용을 개관하여 본다.

I. 總 則(제1장)

1. 法의 目的

제1조에서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며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구중재법과 다른 분야의 입법 형식을 고려하여 삽입한 것이다. 구법이 “.....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데에 덧붙여 ‘적정하고 공평하게’라는 표

201) 구중재법 하에서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해 당사자의 합의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사단법인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임시방편으로 삽입시켰으나, 개정 중재법은 이에 관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후술한다.

현을 첨부하였다.²⁰²⁾

2. 適用範圍

제2조 1항에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중재법의 적용범위를 중재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영토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중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내용상 대한민국 내가 아닌 경우에도 중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영토주의의 예외로 하고 있다. 즉,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9조(외국중재판정)가 그 예외적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영토적 기준을(territorial criterion) 선택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대다수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²⁰³⁾

또한 제2조 2항은 모델법 제1조 1항과 5항을 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중재 관련 국제법이나 다른 국내법은 개정안에 우선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3. 用語 定義

제3조에서 용어정의를 하고 있다. 우리 언어와 법률 용어에 맞추어 ‘중재’, ‘중재합의’, ‘중재판정부’에 관해 정의하였다. 여기서 모델중재법에서 정의한 부분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상 당연한 규정의 유무가 중재제도 운용과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²⁰⁴⁾

4. 書面 通知

제4조에서 서면의 통지가 원칙적으로 수신인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모델중재법 제3조를 수용한 것이나, 다소 차이점은

202) 이는 모델중재법에는 없는 조항이며, 현행 민사소송법 제1조의 목적부분에서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 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한 점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03) 개정 중재법이나 종래의 중재법간에도 적용 방식에 있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개정 중재법은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중재법은 제정 당시 국제중재에 대한 고려도 없었고 명문 규정도 없었다. 이 규정은 모델중재법 제1조 2항을 수용한 것이며, 영국법과 독일법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4) 모델중재법이 정하고 있는 정의와 해석의 원칙들이 아주 당연하고 피상적이므로 일부만 수용하고 있다.

표현상 차이와 그 문장 배열의 우선순위의 변동 같은 사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서면통지에 관한 부분을 여기에도 되도록 그대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없지 않았으나, 국제적 기준인 모델법의 방식에 따른 것이다.

5. 異議申請權의 喪失

제5조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금반언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의 신청권이 상실된다고 정한 모델법 제4조를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중재법은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6. 法院의 關與

현대 중재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는 법원이 중재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개정 중재법은 제6조에서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중재활동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의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 管轄法院

제7조에서 모델중재법 제6조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원제도와 연결하여 중재합의와 중재절차 등에 관한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법원에 중재에 관련된 기능을 집중시키는 것은 외국 당사자가 쉽게 관할법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법원의 과거 판결의 경향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관할법원의 심급은 한국 법원제도의 현실에 맞추어 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

II. 仲裁合意(제2장)

1. 仲裁合意의 方式

제8조에서 중재합의 방식은 모델중재법 제7조를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재합의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제3조 2호

에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모델중재법은 각국의 지배적 견해에 따라 서면합의만을 인정하고 있다.

2. 仲裁合意와 法院에의 提訴

제9조에서 모델중재법 제8조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배열과 표현을 바꾸었다. 구중재법은 제3조에서 직소금지라는 제목하에 중재합의는 소송을 배제한다고 명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가 부존재, 무효, 이행불능이 아닌 한, 법원은 그 사안에 대해 심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달리 개정 중재법은 모델중재법과 달리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다고 하지 않고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행 소송제도에 맞추어 수정하였다.²⁰⁵⁾

3. 法院의 保全處分

제10조에서 모델중재법 제9조를 그대로 수용하여 중재합의 당사자가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보전처분과 구별된다.

III. 仲裁判定部(제3장)

1. 仲裁人의 數와 選定 方式

제11조와 제12조에서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3인 중재를 원칙으로 한다. 3인 중재의 경우, 구중재법은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는 점은 정하고 있지만 제3중재인의 선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2조 3항 2

205)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도록 정하여 우리 법원의 입장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중재가 진행중인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소송중지(stay of legal proceedings)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소송제도에 비추어 개정중재법은 이 제도의 도입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호에서 각 당사자가 선정한 2인의 중재인들이 제3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제3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그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정하였다.

2. 仲裁人의 忌避 事由 및 節次

제13조와 제14조에서 모델중재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 받은 자가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해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중재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²⁰⁶⁾

3. 仲裁人의 職務不履行과 補闕仲裁人의 選定

제15조와 제16조에서 중재인의 직무불이행과 보궐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구중재법의 규정과 그 입법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델중재법의 해당 규정을 수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며 구중재법상 용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4. 仲裁判定部の 判定權限에 관한 決定

제17조에서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판정권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 중재조항은 주된 계약과 독립하여 취급된다는 점,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한 항변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모델중재법 제16조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비해 구중재법은 주된 계약으로부터 중재조항의 독립성이나 판정권한에 대한 항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5. 仲裁判定部の 臨時的 處分

제18조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판정부가 분쟁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임시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중재법에는 없는 규정이지만, 모델중재법 제17조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모델중재

206) 이점에 있어 구 중재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법과의 차이점은 제18조 1항 후단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임시적 처분에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부는 임시처분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²⁰⁷⁾

IV. 仲裁節次(제4장)

1. 當事者에 대한 同等待遇 및 仲裁節次

제19조에서 구중재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모델중재법 제18조를 수용하여, 절차법상의 기본원리로서 양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에서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해 합의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⁸⁾

2. 仲裁地

중재지의 개념은 개정 중재법 제2조에서 정한 이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전체적인 중재절차가 다수의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21조에서 중재지를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하고 중재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심문·검증·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델중재법 제20조와 동일한 규정이다.

3. 仲裁節次的 開始

제22조 1항에서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개시된다고 정하였다. 제1항은 모델중재법

207) 참고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일과 스위스 개정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처분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8) 이에 따라 구중재법 제7조 3항에서 상사중재에 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다는 과도기적 해결방안은 배제되었다.

제21조와 동일하지만, 동조 2항은 모델중재법에 없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즉,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대상, 중재합의의 내용 등이 기재해야 한다는 대목을 신설한 것이다. 제22조의 중재요청서(a request for that dispute to be referred to arbitration)²⁰⁹⁾와 구별해야 할 문서들로는 제24조의 중재신청서(statements of claim)²¹⁰⁾ 및 답변서, 그리고 제25조의 준비서면²¹¹⁾ 등으로서 구별된다. 구중재법은 이러한 서면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중재기관의 도움 없이 임시중재(ad hoc arbitration)가 활발히 행해진다면 이 세 가지 개념을 각각 구별될 필요성이 커진다.

4. 言 語

언어에 관한 규정은 특히 국제중재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제23조에서 모델중재법 제22조를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절차에 사용할 언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는 중재판정부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델중재법과의 차이는 중재판정부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로 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 위에서 정한 언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당사자의 준비서면, 구술심리,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 및 결정 기타 의사표현에 사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모델중재법보다 구체적인 규정이다.

5. 申請書 및 答辯書와 審理

제24조에서 신청서와 답변서에 관한 규정하고 있는데, 구중재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 이 규정은 임시중재나 국제중재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모델중재법의 규정과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을 기재하고 참고서류나 입증방법을 첨부할

209) 중재요청서는 분쟁의 사안을 중재에 의뢰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등 중재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210) 중재신청서는 법원에 대한 소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실제로 이미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분쟁사건을 회부하여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서면이다.

211) 이미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자신의 주장과 입증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실제 심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델중재법은 쟁점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답변서가 제출되기까지는 아직 쟁점사항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개정 중재법에서는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제25조에서 심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모델중재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심리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술심리로 할 것인지 서면만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다만, 중재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一方 當事者の 海태

제26조 1항~3항에서 모델중재법 제25조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절차가 종료되고, 소송과는 달리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용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며, 일방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동조 4항은 모델중재법에는 없는 규정으로 위의 규정들이 임의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7. 鑑定人

제27조에서 구중재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공정한 중재판정을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모델중재법 제26조와 동일하며, 제3항의 감정인에 대한 기피 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첨가한 것이다.

8. 證據調査에 관한 法院의 協調

제28조에서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와 관련하여 모델중재법 제27조의 내용 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우리 법원제도의 현실에 맞도록 촉탁절차

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첫째로 중재판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모델법이나 독일법이 중재판정부나 당사자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과는 다르다. 둘째로 중재판정부는 조서에 기재할 사항 기타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며 이는 모델법이나 독일법보다 구체적이다. 셋째로 수탁 법원에게는 증거조사를 마친 후 그 기록을 지체없이 중재판정부에 송부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중재판정부에게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법원에 납부할 의무도 부과하였다.²¹²⁾

V. 仲裁判定(제5장)

1. 紛爭의 實體에 適用될 法

제29조에서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에 관한 규정에서 두 가지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모델법 제28조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첫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하며, 특정 국가의 법을 지정한 경우에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섭외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둘째, 당사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섭외사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²¹³⁾

셋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 형평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仲裁判定部の 意思決定

제30조에서 모델중재법 제29조와 같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212) 다만, 우리 법원의 현실에 맞추어 중재인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고 있다.

213) 이 점은 모델중재법과 다른 점이며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독일, 캐나다, 스위스 등)은 이 방식에 따르고 있는 추세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델중재법이 정한 수인의 중재인(more than one arbitrator)이라는 표현을 ‘3인의 중재인’이란 표현으로 수정하였다.²¹⁴⁾ 다만, 절차문제에 있어 합의가 있으면 절차를 주재하는 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3. 和解

제31조에서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를 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그 화해중재판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모델중재법의 제30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4. 仲裁判定의 形式과 內容

제32조에서 모델중재법 제31조의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되, 구중재법의 일부 사항을 첨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반수에 미달하는 일부 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중재인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정하였다. 또한, 중재판정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한 점은 모델중재법이나 구중재법과 동일하다. 다만, 동조 4항은 모델중재법에는 없으나 구중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재판정의 원본을 관할 법원에 이송,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시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린 후 해산하였는데 당사자간에 중재판정문의 내용에 다툼이 생겼을 때 중재판정 원본을 열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5. 仲裁節次의 終了

제33조에서 중재절차의 종료는 중국판결 또는 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판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모델중재법 제32조와 동일한 규정이다. 특히 이 규정은 중재관리 비용을 산정하고, 관련된 제척기간을 산

214) 구중재법 제11조에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인이 수인인 경우 중재판정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때에 그 중재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개정 중재법에 삭제되었다.

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 仲裁判定의 訂正, 解釋 및 追加判定

제34조에서 중재판정의 정정, 해석 및 추가판정에 관하여 모델중재법 제33조를 수요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문장배열을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VI. 仲裁判定의 效力 및 不服(제6장)

1. 仲裁判定의 效力

제35조에서 구중재법 제12조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재판정이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res judicata)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仲裁判定取消의 訴

제36조에서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모델중재법 제35조를 대부분 그대로 수용한 규정이다. 다만, 모델중재법에 없는 부분을 보완한 부분은 동조 제4항과 제5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종래 논란이 된 쟁점을 해결하였다.

둘째, 중재판정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중재합의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불분명한 점을 보완하였다.

VII.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제7장)

1. 仲裁判定의 承認과 執行

제37조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법원의 승인판결이나 집행판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델중재법에는 없는 규정이다. 중재법의 개정논의과정에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면 그 승인 및 집행을 보다 간편하게 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이나 법원의 증서 등으

로 정하자는 입장도 있었으나, 한국에서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판결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구중재법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동조 제2항은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규정이다.

2. 國內仲裁判定

제38조에서 국내중재판정의 경우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제36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인 또는 집행하도록 정하였다. 다만, 한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만을 국내중재판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소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²¹⁵⁾

3. 外國仲裁判定

제39조에서 외국중재판정에 대해서는 현재 발효중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1958)’에 따르도록 정하고, 다만 한국이 이에 대해 상호주의 유보를 선언하였으므로 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및 제47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III. 補 則(제8장)

제40조에서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정부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1조에서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예컨대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과 상사중재규칙의 제정이나 변경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중재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전술하였듯이 개정 중재법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재법질서의 기준이 되고 있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모델중재법을 대폭 수용하여 규정된 것이다. 그러면서 개정 중재법은 국내법질서와의 충돌문제를 예상하여 모델중재법의 일부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 문장 배열이나 표현을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입법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중재법과 국내법체계와의 법체계

215) 이와 관련하여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내국중재를 의미한다면,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재라면 국내중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중재와 내국중재 또는 국내중재의 구별은 뉴욕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상의 충돌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중재법의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무역의 확대와 따라 급성장하는 선진국가들의 중재산업의 발전과 법률환경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었다. 이제 국제적 기준의 중재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이른바 중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한국에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의 분쟁당사자들이 법적 장애없이 중재활동을 할 수 구체적인 장치가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제규범과 기준에 상응한 한국의 중재제도의 보완은 북한과의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활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北韓의 對外經濟仲裁制度와 南北間紛爭 解決方案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과 관련하여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남북간 제도적 보장책 마련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해서는 남북간 투자보장의 제도화와 함께 분쟁해결의 방법에 관한 논의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에서 남북경협의 분쟁의 해결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따른 중재제도의 마련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남북간의 특수한 성격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한 검토가 변해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관계는 통상의 국가간의 무역으로 보지 않는 민족내부의 경제교류로 보는 법적 성격과 연관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에 남북간의 경협과 관련한 분쟁해결방안으로서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언급하여 본다.

I.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 考慮

알다시피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²¹⁶⁾는 그 서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나라와 나

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사이의 잠정적 특수관계는 통일 시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대원칙인 동시에 모든 남북한 사이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엄연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입장에서 헌법상 영토조항(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의 규범성에 기인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보안법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게 하는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데에서 법적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도 비록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이나 형법에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자체를 부정하거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노동당규약²¹⁷⁾ 등에서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조직구성원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고 내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의 국제법상의 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분단국의 특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남한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의 경제기관·기업소·사회협동단체와 무역·투자·서비스 관련 경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남북관계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의 현행 법체계는 북한에 대해 국가로서의 실체를

216) 이 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조약이라는 견해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진 남북한 당국 사이에서 민족내부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채택된 특수한 약정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발전방향”, 『법학』, 현재결 1997. 9. 16, 89헌마240, 제34권 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4면. 이 합의서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은 조약이 아니라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결 2000. 7. 20, 98헌마63 등.

217)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전문(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 하는데 있다”고 규정하여 남한에 대한 이른바 적화노선의 강령을 명시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내용과 합의서에 대한 법적 성격의 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 맺는 합의서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분단국의 특유의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과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경우 이 합의서의 법적 효력의 인정은 바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마련될 수 있다. 남한의 현행 법체계는 북한에 대한 법적 성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합의서는 조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II. 南北韓의 紛爭解決方案 檢討

1. 紛爭發生의 類型과 問題點

남북한 사이에 경제교류협력이 활발해져 남한의 기업, 개인, 단체와 북한의 경제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사이에 무역, 투자, 서비스, 관련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의 이행·양도·변경·취소·손해보상²¹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에컨대 대북투자과 관련한 ‘의견상이’로 인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밖의 투자로 인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과 북한내 다른 경제기관·기업소·단체와의 사이에 계약 또는 불법행위들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무역·서비스 계약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의 이행·양도·변경·취소·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보면,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남북기업간의 분쟁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 무역중재위원회를 중재기관으로 하거나 북한 재판기관의 민사소

218) 북한법에서는 손해배상과 손해보상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손해보상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손해보상제도는 재산적인 보상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인신적 이익에 대한 손해는 그것이 재산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만 보상될 수 있다고 한다. 손해배상은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민법의 태도(제394조)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법학사전』, 앞의 사전, 390면.

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의 중재제도와 사법제도가 공정성과 중립성 보장이 분쟁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에 분쟁해결의 제3국의 국내중재기구에 의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에 분쟁해결방식을 명기할 때 선택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외국인투자법, 합작법과 시행세칙 및 외국인기업법은 북한에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합영법은 합의에 의하여 제3국에서 해결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⁹⁾ 물론 남북경협을 민족내부거래로 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분쟁을 제3국 중재로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남한투자자와 북한 당국간의 분쟁해결문제이다. 현재 남측 투자자와 북한 당국과의 투자분쟁에 대한 제3국 중재를 규정한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남한 투자자는 북한당국으로부터 그 재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을 당하거나 달리 피해를 입은 경우의 구제방법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보면, 대북투자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북한내의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북한 당국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의 국내법상의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법기관이 행정기관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다. 또한 북한의 국내적 구제절차의 완료후 피해가 구제되지 아니한 경우 한국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셋째, 남북의 당국간의 분쟁해결문제이다. 북한과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과연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간의 협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한 중립적인 국제기관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북한당국이 쉽게 용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既存의 紛爭解決方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투자관련법률 및 대외경제계약법 등에서 여러 가지 분쟁해결방법

219) 이에 여기에서의 합의가 계약에 의한 사전합의인가 또는 분쟁발생후의 사후합의도 포함하는지가 불확실하므로 제3국 중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규정에 제3국 중재를 원칙으로 하되 분쟁발생 후 달리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및 구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중재법에서 중재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에서의 분쟁해결절차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절차, 신소·청원,²²⁰⁾ 북한 재판소에서의 재판절차, 북한의 국제무역중재기관에서의 중재절차, 제3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절차 등이 해당된다. 이에 비해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한법원에서의 재판절차, 대한상사중재원 등 남한의 중재기관에서의 중재절차 등을 상정(想定)할 수 있다.

생각건대, 북한 지역에 대한 남측의 투자 및 북한의 경제기관·기업소·단체와 남한의 기업·개인과 사이의 무역계약 등으로 인한 분쟁이 북한에서의 협의 절차나 신소·청원절차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 분쟁에 대해 남한의 법원에서의 재판절차나 한국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관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에 의한 분쟁해결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 규정은 그 실제적 적용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대외경제중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북한의 국제무역중재기관에서의 중재절차에 의하는 방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무역중재기관의 중재절차와 중재실적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행하는 중재기관에서의 중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조차 나와 있지 않

220) 신소는 근로자들이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무원들의 직무상 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공민이나 조직체들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한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구하는 것이며, 청원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공무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개별적 공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와는 관계없이 그 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법학사전』, 앞의 사전, 396면. 참고로 중국의 경우에는 1989년 4월 4일 『행정소송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아직 행정소송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 신소·청원제도가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兪善春, 『行政訴訟價直論』(北京: 法律出版社, 1998), 98~341면>. 예컨대 북한의 합영법 시행세칙은 제104조에서 “상대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합영회사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해 줄 데 대한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라고,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은 제80조에서 “외국인기업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기관은 신소·청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을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처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소·청원을 보조적 분쟁해결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은 현실에서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 분쟁해결을 일임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실적인 남북의 분쟁해결의 방법은 북한의 분쟁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남북간의 교섭을 통하여 중립적인 제3국 중재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아직 ICSID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ICSID에서의 조정이나 중재의 이용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결국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분쟁해결방법 중에는 제3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남한기업이 북한측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제3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제3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시 적용될 준거법을 명시하고, 북한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북한당국으로부터 제3국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을 보장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Ⅲ. 南北의 紛爭解決方案 摸索

앞서 살펴보았지만, 남북간 투자보장을 위한 분쟁해결방법을 찾는 데에 있어 남한의 대북투자에 대한 남한의 투자 및 북한의 경제기관·기업소·단체와 남한의 기업·개인과의 사이의 무역·서비스 계약 등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을 제3국 중재기관이 중재에만 맡겨두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남북한 사이에 직접 투자보장협정이나 무역·서비스 거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여 확실한 분쟁해결조향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해결조향에는 남한의 법원이나 북한의 재판소에서의 재판절차에 의한 분쟁해결방안, 남북한 또는 특정한 제3국 중재기관에서의 중재절차에 의한 분쟁해결방안 등 실질적인 분쟁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의 준국제사법적 해결,²²¹⁾ 실

221) 동서독의 경우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기 이전 구동독법원이 구서독측과의

질사법적 제정, 상대방의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에서 선고 또는 채택된 판결, 중재판정의 상대방 지역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는 방안들이다.

여기에서 북한의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인 실상의 이해를 위한 분쟁해결 체계의 공개와 이에 기초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북한에서의 중재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비신뢰성은 북한의 분쟁해결방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남과 북의 당국이 합의하여 별도의 중재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투자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재비용이나 승소후의 집행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제3국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대규모, 중규모인 경우에는 제3국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에서 제3국 중재의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 중재에 의해 남측이 승소할 지라도 그에 따른 집행에 대한 보장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먼저 북한법상 북한의 재판소가 국가소유재산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북한측 합영당사자 또는 합작당사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²²²⁾ 다음 북한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

분쟁해결에 있어 구동독의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한 데 비해, 구서독법원은 동·서독 관계를 주와 주의 관계에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여 국제사법(Internationales Privatrecht)의 규정을 준용하는 준국제사법(Interlokales Privatrecht)의 문제로 해결하였다. 구동독은 1967. 7. 20. 독자적인 국적법을 제정하여 그때까지 동·서독간에 유효하던 제국국적법을 폐지함으로써 독자적인 동독국적을 창설하고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한 반면, 구서독은 제국국적법을 고수함으로써 구동독지역을 외국이 아닌 내독지역으로, 구동독과의 관계를 내독관계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조약 체결후 1973년 7월 31일 구서독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조약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판결함에 따라 구서독법원도 구동독법원과 마찬가지로 구동독인을 이중국적자로 파악해 동서독의 주민 및 법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준국제사법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법의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독일통일과 사법통합』(법원행정처, 1995), 111~113면.

222)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의 재산은 일반적으로 기본기금과 유동기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기본기금은 건물·시설·기계·운송수단 기타 경제적으로 중요한 재산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영기업은 사용권만을 가지므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한편 유동기금은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예컨대, 원자재·반가공제품·원자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의 최종해결에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이다. 북한 내에서 중재하고 승소하는 경우에도 북한측이 판정의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국 중재판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실제적인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재판소로부터 강제집행판결을 받아낸다 할지라도 북한의 재판소나 은행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그러한 판결의 집행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북한의 실정에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협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협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호적인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분쟁의 중재해결을 위한 별도의 중재협의기구를 두는 방안은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남한의 중재법이 모델중재법을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였으며, 북한도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국제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자의 공통적 중재방법의 도출을 모색하여 보는 것은 남북의 경제협력 및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재 등이며 국가계획에 따라 다른 국영기업과의 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Konzard Zwergert and Hein Kötz,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 Vol.1 (London: Clarendon Press, 1987), p.337.

제 6 장 맺음말

북한에서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위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외국인투자법 및 대외경제관련법제의 미비점에 대해 이를 보완하는 법제라는 점에서 발전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는 그간 국가중재제도와 함께 대외무역중재제도를 시행해온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역중재에 관하여 다소 법해석 및 적용상의 모호성을 제거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경제중재제도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그 대상의 확정에 있어 불충분하다.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사례검토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에 관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북간의 경제협력부문에서 남북의 교역량과 경험실적은 점차 증대하고 있지만,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사례는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

분명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까지 남북간 기업의 무역 클레임, 납기지연 등에 의한 수송문제, 또는 건설분쟁 등과 관련한 상사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러한 분쟁이 북한의 법제도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²³⁾ 남북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제도적 절차보다는 경험사업의 전후를 고려하여 사전 또는 사후의 협의과정을 통해 편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3) 다만, 북한과의 교역과 관련하여 북한관련사업, 예컨대 북한생산품의 반입, 북한상표의 도입, 북한 저작물의 복제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건강식품인 ‘가루지기’의 위탁판매분쟁, 평양옥류관의 상표사용 및 재료공급에 관한 분쟁, 북한의 이조실록 반입 및 복제출판분쟁 등이 그 사례이며, 그밖의 북한무역사업자와 관련된 사기사건 등이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적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서는 『MBC PD수첩』, 421회, 2000년 6월 20일, “북한을 팔면 돈이 된다?” 제하의 내용 참조.

이러한 방법은 당장 편한 방법일 수 있으나 남북의 경제협력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해 나가면서 보다 복잡한 분쟁구조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발전국면에서 필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대남경협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상사분쟁에 대하여 남북관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루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에서 중재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기업, 해외조선동포 등을 명시하여 이들의 북한투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다. 이제까지 북한은 이른바 해외조선동포의 범주에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투자보장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정과 관련하여 남한의 대북투자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1999. 2. 26)으로 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합영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자관리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등 9개의 법률이 개정되고, 이후 같은 해 5월까지 내각 결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등 5개의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한다.²²⁴⁾ 이번 외국인투자관련 법규 개정 이유는 우선 1998년 헌법 개정에 따른 정부 조직 변화를 반영하는 것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도·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개선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징의 하나는 ‘외국인투자’로부터 ‘해외조선동포의 투자’를 분리한 것이다. 개정 이전 법규에서는 해외조선동포 투자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규정을 보면,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라는 대목을 ‘해외조선동포’라고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제5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 해외조선동포의 투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

224) 『조선일보』, 1999년 9월 27일; 이찬우, “북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개정”, <http://www.kotra.or.kr/nk/>. p.1. 북한의 개정 외국인투자법제의 조문비교는 한국 투자무역진흥공사(KOTRA)북한실(<http://www.kotra.co.kr/nk/nation/law/2002.html>) 참조.

는 것은 ‘해외조선동포의 투자’에 대한 보장과 남한기업과 기업인의 투자보장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해외조선동포의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를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²²⁵⁾ 그러나 남한기업 및 기업인의 대북투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규에서 언급되지도 않고 새로이 마련되는 해외조선동포투자관련 법규에서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다면, 남북은 이에 관한 분쟁조정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남북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정상회담을 전기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간 경제협력관련 분쟁조정 및 해결기구의 설립이 요청된다. 이는 남북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며 남북의 상사분쟁에 대한 분쟁기구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사분쟁의 중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되는 방식²²⁶⁾을 전제로 한 남북의 분쟁해결협의기구가 될 것이다.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에서 국제조약 및 국제적 관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국제협약(예컨대 ICSID: 워싱턴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분쟁해결에서의 신뢰성과 실효성의 확보는 그 자

225) 여기에는 투자지역의 제한이 아닌, 투자에 대한 변경된 우대조치를 채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예컨대 개정합영법과 합작법에서는 “해외조선동포와의 합영(합작) 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유리한 토지 이용 조건 제공 등의 우대를 부여한다”(개정합영법 제7조, 개정합작법 제6조)고 되어 있다. 이찬우, 앞의 글, 같은 면.

226) 이에 관해서는 북한과의 무역계약의 경우 북한의 일반법원에서의 심리보다 국제계약 분쟁을 다루는 무역중재위원회에서 사건을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공정한 판정을 위해서는 제3국의 중재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북한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가급적이면 제3국에서의 중재를 중재계약에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ICSID협약을 참고하여 설립한 다른 국제적 중재기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과 남북경제 공동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위원회가 정하여 양측 동수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준거법으로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국제연합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표준국제상사중재법이나 모델법(Model Law), 국제상업회의(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중재규칙, 런던국제중재재판소(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LCIA)의 규칙, 미주상사중재위원회(Inter-Americ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ssion : IACAC)의 절차 규칙,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규칙 등의 적용을 예상할 수 있다. 위의 글 참조.

체로도 북한투자에 대한 보장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북한의 실천의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경험에 따른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세계 각국과 체결하고 있다.²²⁷⁾ 남북한은 남북의 경험과 관련한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를 시급한 사안으로 남겨두고 있다. 특히 남한의 대북경협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손실과 관련하여 투자보장제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서가 북한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남북간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27) 북한은 2000년 7월 현재 14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 록

1.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제 1 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가 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제 3 조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은 중재위원회사업을 맡아 한다.

제 4 조 대외경제중재로 심리해결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2.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3.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4.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5. 외국기업과 외국기업 사이에 생긴 분쟁
6.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조선 동포, 외국인 사이에 생긴 분쟁

제 5 조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재제기 문건에 의하여 한다.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인 분쟁발생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

제 6 조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허물없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 7 조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 2 장 중재제기

제 8 조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제기는 시효기간안에 중재제기서와 그에 첨부할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9 조 중재제기서에 밝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쟁당사자의 명칭(이름)과 법적 주소,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
2. 중재기관, 준거법 같은 중재합의내용
3. 청구 내용과 금액
4. 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또는 재결원의 이름
5. 이 밖의 필요한 내용

제 10 조 중재제기서에 첨부할 문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조항 또는 중재계약서 원본
2. 중재비용납부확인문건
3. 중재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낸 청구문건
4. 피신청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건
5. 이 밖의 필요한 문건

제 11 조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문건을 제출하면서 중재비용을 내야 한다. 중재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필요에 따라 중재비용의 일부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사업에 쓸 수 있다.

제 12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접수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접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정한 기간안에 신청자에게 재결원명단을, 피신청자에게 중재제기문건과 재결원명단 같은 것을 첨부한 중재심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 13 조 중재심리통지서를 받는 피신청자는 30일안으로 신청자의 중재제기에 대한 의견, 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를 밝힌 답변서와 증명문건을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 답변서와 증명문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4 조 피신청자는 제기된 중재에 대하여 맞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 9 조, 제 10 조의 요구를 갖추어야 한다. 맞중재는 기본중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시효기간안에 다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

제16조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대리인으로는 공화국 국민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17조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은 해당 문건을 소송제기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3 장 중재심리

제18조 중재심리는 재결원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재결원협의회가 한다. 재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며 분쟁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다.

제19조 재결원으로는 다음의 성원이 될 수 있다.

1. 해당 중재위원회 성원
2. 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 및 경제 부문의 일군
3. 변호사,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4. 필요에 따라 중재부문에 널리 알려진 해외조선동포 또는 외국인

제20조 중재위원회는 재결원명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재결원명단에는 재결원의 이름과 직장 직위, 전문지식, 중재활동경력 같은 내용을 밝힌다. 재결원의 인물자료는 출판물에 소개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을 심리해결하기 위한 재결원의 수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의 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그 수를 정한다.

제22조 분쟁을 심리할 재결원은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명단에서 선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안에 재결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해당 기관은 선정된 재결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당사자는 재결원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해당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4조 재결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분쟁사건을 맡아 심리할 수 없을 경우 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재결원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는 재결원협의회가 정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심리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중재심리 시작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중재심리날짜 10일전에 통지받는 내용에 대하여 변경시켜 줄 것을 중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중재심리는 해당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로 한다.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심리를 공개로 할 수 있으며 소재지밖의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 중재심리에는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한다. 필요에 따라 법정 대표와 그 대리인이 함께 참가할 수도 있다.

제28조 재결원은 중재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신청자에게 청구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신청자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분쟁당사자들의 진술이 끝나면 그들을 심리하고 서로 물어보게 한다.

제29조 분쟁당사자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으며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줄 것을 재결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재결원은 제기된 내용에 근거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해당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분쟁당사자는 증거보존, 재산담보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재판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1조 재결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심리중지, 사건기각 사유를 발견하였거나 중재심리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중재심리를 중지하거나 끝낸다. 중재심리기간은 중재제기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32조 중재심리조서는 서기가 작성하며 재결원과 서기가 조서에 수표한다. 중재심리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는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밑에서만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중재심리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33조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화해를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면 진행중에 중재심리를 끝낸다.

제34조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인과 분쟁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제출한 안에 쌍방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4 장 재결과 그 집행

제35조 재결은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0일안에 선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재결선고기간을 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재결문에 밝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쟁당사자와 명칭(이름)과 법적주소,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
2. 중재심리날짜와 재결원, 서기의 이름
3. 사건의 명칭, 중재심리참가정형
4. 신청자의 청구내용과 피신청자의 답변내용
5.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6. 재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7. 사건해결과 관련한 결론
8. 중재비용부담관계
9. 재결선고날짜
10. 이밖의 필요한 내용

제37조 재결문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할 수도 있다. 번역문해석에서 차이날 경우에는 조선어원문에 준한다.

제38조 재결문은 재결원의 투표와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3명의 재결원이 분쟁을 심리한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재결원은 재결문에 투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재심리조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9조 재결원은 중재심리의 중지결정과 사건기각결정, 화해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리중지를 하였던 사유가 없어지면 중재심리를 계속한다. 화해결정에는 화해조건을 지적한다. 화해결정은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0조 재결문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위원회가 발송하거나 직접 준다. 중재신청후 법적주소가 달라진 경우 분쟁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

다.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을 받는 날부터 30일안으로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 보충하거나 해석해줄 데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6개월안으로 잘못내렸다고 인정하는 재결을 취소시켜줄데 대하여 해당 재판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책임있는 분쟁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가 거주하고 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기관에 해당 재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재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공화국령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기관에 재결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2. 中華人民共和國 仲裁法

<1994년 8월 31일 공포, 1995년 9월 1일 시행>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공정하고 적시적인 경제 분쟁의 중재를 보증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한 주체로서의 공민·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익의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과 같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1) 혼인·양육·후견·부양·상속상의 분쟁

(2) 법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상의 쟁의

제 4 조 당사자가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때에는 쌍방이 스스로 원하여 중재합의를 보아야 한다. 중재합의가 없이 일방이 신청한 중재에 대해서는 중재위원회는 접수처리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에 합의를 하고, 일방이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처리하지 않는다. 단, 중재합의가 없는것은 무효로 한다.

제 6 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정한다. 중재는 등급별 관할과 지역별 관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제 7 조 중재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규정을 부합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8 조 중재는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9 조 중재는 1차 판결의 제도를 채택하여 실시한다. 결정 후, 당사자가 동일 분쟁에 대해 재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처리 하지 않는다.

재결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철회 또는 불이행 판결을 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분쟁에 대해 쌍방이 새로 합의한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 2 장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수요에 따라 구를 둔 기타 시에 설립할 수도 있으며 행정구역에 따라 점진적으로 설립하지는 않는다.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때에는 성·자치구·직할시에 있는 사법행정부서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 11 조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명칭·주소·정관이 있을 것
- (2)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것
- (3) 해당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있을 것
- (4) 초빙한 중재원이 있을 것

중재위원회 정관은 본 법에 근거하여 제정해야 한다.

제 12 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2명 내지 4명, 위원 7명 내지 11명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과 위원은 법률전문가·경제무역전문가와 실제 사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중재위원회 구성인원 중 법률·경제무역전문가가 3분의 2 이하여서는 안된다.

제 13 조 중재위원회는 공정하고 올바른 사람중에서 중재원을 초빙하여야 한다.

중재원은 다음 열거한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 (1) 중재사업에 종사한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 (2) 변호사 사업에 종사한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부 록

- (3) 재판원 역임 기간이 만 8년이 되는 자
 - (4) 법률 연구·교수직에 종사하고 고급 직함이 있는 자
 - (5) 법률지식이 있고 경제무역 등 전문사업에 종사하였고 고급직함이 있거나 대등한 전문적 수준에 이른 자
- 중재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중재원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제14조 중재위원회는 행정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며, 행정 기관과 예측 관계가 없다.

제15조 중국 중재협회는 사회법인단체이며, 중재 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적 조직이며 정관에 근거하여 중재 위원회 및 그 구성원 중재원의 기율 위반행위를 감독한다.

중국중재협회는 본 법과 민사 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

제 3 장 중재 합의

제16조 계약시 체결한 중재조항과 분쟁발생 전후, 기타 서면방식으로 합의한 중재청구 합의가 포함된다.

중재합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1) 중재 청구에 대한 의사표시
- (2) 중재 사항
- (3) 선정한 중재위원회

제17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 (1) 약정한 중재사항이 법률이 규정한 중재범위를 벗어난 경우
- (2)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 제한능력자가 체결한 중재합의 일 경우
- (3) 일방이 협박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을 위협하여 중재합의를 체결하였을 경우

제18조 중재합의는 중재 사항 또는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 보충할 수 있다. 보충하지 못한 중재합의는 무효이다.

제19조 중재합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해지·종결 또는 무효

는 중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정은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중재위원회에 결정청구를 할 수 있거나 인민법원에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방이 중재위원회에 결정청구를 다른 일방이 인민법원에 결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중재정이 1차개정을 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중재 절차

제 1 절 청구와 접수 처리

제21조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중재합의가 있을 것
- (2) 구체적인 중재청구와 사실이유가 있을 것
- (3) 중재위원회의 접수처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

제22조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합의·중재신청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중재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 (1) 당사자의 성명·성별·연령·직업·회사명·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주소 및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직책
- (2) 중재청구와 근거로 삼은 사실·이유
- (3) 증거와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과 주소

제24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접수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면 접수 처리하며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접수 처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접수처리 불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25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접수처리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원명부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중재신청서 사본과 중재규칙·중재원 명부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부 록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접수한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중재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6조 당사자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중재합의가 있음을 성명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인민법원이 접수 처리한 후, 다른 일방이 첫 번 중재정을 개정하기 전에 중재합의에 회부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단, 무효인 중재합의는 예외로 한다. 다른 일방이 첫번 중재정 개정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접수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합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민법원은 심리를 계속한다.

제27조 신청인은 중재청구를 포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청구를 승인 또는 반박할 수 있으며 반대청구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28조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재결집행 불능 또는 재결집행이 어렵게 되면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 부분이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29조 당사자·법정대리인은 변호사 및 기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재활동을 할 수 있다.

변호사와 기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재활동을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에 권한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 절 중재정의 구성

제30조 중재정은 3명의 중재원 또는 1명의 중재원으로 구성한다. 3명으로 구성할 때에는 수석 중재원을 둔다.

제31조 당사자가 3명의 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할 것을 약정할 경우에는 각자가 1명의 중재원을 선정하거나 각자가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1명의 중재원을 지정하고 제3중재원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한다.

제3중재원이 수석중재원이 된다.

당사자가 1명의 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을 지정한다.

제32조 당사자가 중재규칙에 규정한 기한내에 중재정 구성방식을 약정하지 않거나 중재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33조 중재정이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중재정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중재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중재원 담임을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기피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1) 해당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근친
- (2) 해당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해당사건의 당사자·대리인과 기타 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 (4) 사적으로 당사자·대리인을 만났거나 당사자·대리인이 제공한 음식대접과 선물을 받은 경우

제35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첫 번 중재정 개정후 인지한 경우에는 마지막 중재정개정 종결 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 중재원이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하며,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원을 맡았을 때에는 중재위원회 전체에서 결정한다.

제37조 중재원이 기피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새로 선정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기피함으로 인하여 중재원을 새로 선정 또는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앞서 진행한 중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새로 진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중재정이 앞서 진행한 중재절차를 새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중재원이 본 법 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고, 그 사태가 심각하거나 또는 본 법 제58조 제6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을 책임을 저야하고 중재위원회에서는 그를 제명해야 한다.

제 3 절 중재정 개정과 재결

제39조 중재는 개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중재정이 중재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재결할 수 있다.

제40조 중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국가기밀에 관련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1조 중재위원회는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개정날짜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내에 개정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연기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42조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정의 허가없이 중도에 퇴장하면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면통지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정의 허가없이 중도에 퇴장하면 결석 재결할 수 있다.

제43조 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중재정은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44조 중재정이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해서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감정부서에 위탁하여 감정할 수도 있고 중재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정부서에서 감정할 수도 있다.

감정부서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중재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감정인을 파견하여 중재에 참석시킬 수 있다. 당사자는 중재정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5조 증거는 반드시 개정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는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제46조 증거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하부 인민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제47조 당사자는 중재과정중에 변론할 권리가 있다. 변론 종결시 수석중재원 또는 독립중재원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48조 중재정은 개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여인이 본인의 진술이 기록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보충·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기록한다.

기록에는 중재인, 기록원,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여인이 서명 혹은 날인한다.

제49조 당사자는 중재를 신청한 이후라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 합의가 이루어 지면 화해합의에 근거하여 재결서를 작성해줄 것을 중재정에 청구할 수 있고 중재신청을 철회 할 수도 있다.

제50조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에 번복하기를 원하면 중재합의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제51조 중재정은 재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자원할 때에는 중재정은 반드시 조정을 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시에 재결해야 한다.

제52조 조정서에는 중재청구와 당사자간의 합의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조정서를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 후 당사자 쌍방에게 송부해야 한다.

조정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하면 즉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면 중재정은 적시에 재결해야 한다.

제53조 재결은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소수 중재원의 의견은 기록부에 기입할 수 있다.

중재정의 다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수석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한다.

제54조 중재청구·쟁의사실·재결사유·재결결과·중재비용의 부담과 재결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당사자가 쟁의사실과 재결사유를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재결에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가 날인하여야 한다.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중재원은 서명해도 되고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제55조 중재정이 분쟁을 중재할 때 이미 분명히 밝혀진 사실에 대해 먼저 재결할 수 있다.

제56조 재결서 중의 문자·계산의 착오 또는 중재정이 재결하였으나 재결서에 누락된 사항은 중재정이 보충·시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재결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정에 보충·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 재결서는 작성일부부터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 5 장 재결취소 신청

제58조 당사자가 재결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재결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1)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 (2) 재결사항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것 일 경우
- (3) 중재정의 구성 또는 중재의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 (4) 재결시 근거한 증거가 위조된 것일 경우
-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재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은폐했을 경우
- (6) 중재원이 해당사건 중재시 뇌물을 강요, 수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위법적 재결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재결 중 전 항에 규정한 경우중의 하나가 있음이 심사 확인되면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해당 재결이 사회공공이익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면 반드시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

제59조 당사자가 재결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60조 인민법원은 재결신청을 접수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 취소 또는 신청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제61조 인민법원은 재결 취소신청을 접수처리한 후, 중재정이 다시 중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내에 재중재할 것을 중재정에 통지하고 취소절차 중지를 결정한다. 중재정이 재중재를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취소절차 회복을 결정해야 한다.

제 6 장 집 행

제62조 당사자는 재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받은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해야 한다.

제63조 피신청인 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유 중의 하나

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면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사 확인한 후 집행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제64조 당사자 일방이 재결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일방의 당사자 재결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집행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결취소를 결정할 경우, 집행 종결을 결정해야 한다.

재결 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집행 회복을 결정해야 한다.

제 7 장 섭외중재특별규정

제65조 섭외 경제 무역·수송 및 해상 중 발생한 분규에 대한 중재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섭외 중재 위원회는 중국 국제상회에서 조직·설립할 수 있다.

섭외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섭외 중재 위원회의주임·부주임·위원은 중국국제상회가 초빙임명한다.

제67조 섭외중재위원회는 법률·경제무역·과학기술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을 중재원으로 초빙임명할 수 있다.

제68조 섭외중재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섭외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소재지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69조 섭외중재를 하는 중재정은 개정상황을 기록하거나 기록요점을 만들 수 있으며 기록요점에는 당사자와 기타 중재참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제70조 당사자가 섭외중재 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중의 하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이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심사 확인한 후 재결 취소를 결정한다.

제71조 피신청인 섭외 중재 재결에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중의 하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면 인민법원은 합의법정을 구성하여 조사 확인한 후 재결 집행 불가를 결정한다.

제72조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섭외중재위원회의 중재결의에 대해 집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집행인 또는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있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관할권을 가진 외국법인에 승인·집행신청을 해야한다.

제73조 섭외 중재규칙은 중국국제상회가 본 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부 록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장 부 칙

제74조 법률의 중재시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에 중재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시효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 중국중재합의가 중재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중재위원회는 본 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재 잠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76조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중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용 수취방법은 물가관리부서에 보고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제77조 노동쟁의와 농업집단지경제조직 내부의 농업 청구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는 따로 규정한다.

제78조 본 법 시행전에 제정한 중재관련 규정이 본 법의 규정과 규칙에 접촉될 때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79조 본 법 시행전에 직할시·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구를 둔 시에 설립된 중재기구는 본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새로 설립해야 하며 새로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때에 종결된다. 본 법 시행전에 설립되고, 본 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기타 중재기구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종결된다.

제80조 본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仲裁規則)

(1995년 9월 4일 중국국제상회 수정, 통과.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절 관 할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의 규정 및 원중양인민정부 정무원의 <<결정>>, 국무원의 <<통지>>, 비준회답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 한다.

제 2 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원명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후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 현재는 중국국제 경제무역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라 약칭함)는 외국법인 혹은 자연인과 중국법인 혹은 자연인간, 외국법인 혹은 자연인간, 중국법인 혹은 자연인간의 분쟁을 포함한, 국제 또는 섭외 계약성 또는 비계약성의 경제무역 등 분쟁을 중재방식을 통하여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에 중재위원회의 사건처리범위에 대해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특별히 제정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는 그 특별 규정 수권범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제 3 조 중재위원회는 분쟁 발생 전 또는 분쟁 발생 후 당사자간에 달성한, 분쟁을 중재위 중재에 회부한다는 중재합의서와 당사자 일방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안건을 처리 한다.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기한 중재조항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달성한 중재신청 관련 서면합의서를 말한다,

제 4 조 중재위원회는 중재합의의 유무, 유효성 및 중재안건이 관할권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 일방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청구하고 타방이 인민법원의 재정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제 5 조 계약서의 중재조항은 계약서의 기타 조항과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항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별첨한 중재합의서도 계약서의 기타 조항과 분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변경, 해지, 중지, 실효 또는 무효 및 존재여부는 모두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조 중재합의 또는 중재안건 관할권의 항변은 중재정의 제1차 개정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심리사건의 관할권의 항변은 제2차 실체답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가 분쟁건을 중재위원회 중재에 제기하는데 동의할 경우에는 본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절 조 직

제 8 조 중재위원회는 명예주임 1명과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9조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 주임 약간 명,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주임은 본 규칙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고 부 주임은 주임의 위임에 의하여 주임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비서국을 두어 중재위원회 비서장의 지도하에서 중재위원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제10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원 명부를 작성한다. 중재원은 중재위원회가 법률,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제경험을 보유한 중 외 인사들 중에서 초빙하여 임명한다.

제11조 중재위원회는 북경에 설립한다. 중재위원회는 심천경제특구에 중재위원회 심천 분회를 설립하고 상해에 중재위원회 상해분회를 설립한다. 중재위원회 분회는 중재위원회의 하부조직이다. 중재위원회 분회는 비서처를 두어 중재위원회 분회비서장의 지도하에서 중재위원회 분회의 일상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본 중재규칙은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에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분회가 중재를 진행할 경우, 본 중재규칙에 규정한 중재위원회 주임과 중재위원회 비서국 또는 비서장이 각각 이행할 직책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수권한 부 주임과 중재위원회 비서 처 또는 비서장이 각각 이행한다.

제12조 당사자 쌍방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북경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하거나 혹은 그 쟁의를 중재위원회 심천분회에 제기하여 심천에서 중재하기로 약정 하거나 혹은 그 쟁의를 중재위원회 상해분회에 제기하여 상해에서 중재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중재위원회를 선택하여 북경에서 중재하게 하거나 혹은 심천분회를 선정하여 심천에서 중재하게 하거나 혹은 상해분회를 선택하여 상해에서 중재하게 할 수 있다, 동 선택은 선차 선택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2 장 중재절차

제 1 절 중재 신청, 답변, 항소

제13조 중재절차는 중재위원회 혹은 그 분회가 중재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4조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한다.

3.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재규칙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칭과 주소(우편번호, 전화, 텔렉스, 팩스, 전신약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의 중재합의서.
 - (3) 사건의 내용과 쟁의요점.
 - (4) 신청인의 청구 및 그 사실적 근거와 중재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수권대리인이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2. 중재신청서를 회부할 때는 신청인의 청구근거로 되는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비용표 규정에 따라 중재 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재위원회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그 별첨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하여 중재신청수속이 미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중재신청수속이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피신청인에게 중재통지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신청인의 중재신청서 및 그 별첨서류, 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중재원 명부, 중재비용 표 각 1통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와 동시에 중재통지서, 중재규칙, 중재원 명부, 중재비용 표를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중재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중재통지서를 송부한 후 비서국 직원 1명을 지정하여 중재건의 절차관리업무를 책임지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각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중재위원회 중재원명부 중에서 중재원 1명을 선정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주석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5일 내에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답변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피신청인이 항소할 경우에는 늦어도 중재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항소할 경우에는 항소장에 항소이유, 사실근거와 증거를 제시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별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항소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제정한 중재비용 표 규정에 따라 중재 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9조 신청인은 중재 청구를 수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도 항소 청구를 수정할 수 있다. 단, 중재정은 수정을 제기한 것이 너무 늦어서 중재절차의 정상적

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는 중재신청서, 답변서, 항소장, 관련 증명자료 및 기타 서류를 회부할 시 1식 5통을 작성하며 당사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 증가하고 중재정이 1명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2통을 감소할 수 있다.

제21조 피신청인이 서면답변서를 회부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항소에 서면답변을 회부하지 않아도 중재절차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2조 당사자는 중재관련 사항을 중재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권중재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수권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국민이나 외국국민은 모두 위탁을 받고 중재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23조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서를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그 재산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결하게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서를 증거소재지 중국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결하게 하여야 한다.

제 2 절 중재정의 구성

제24조 당사자 쌍방은 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명부 중에서 중재원을 1명씩 선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을 1명씩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3명의 중재원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3명의 중재원을 공동으로 선정하지 못했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그 지정을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3명의 중재원은 수석중재원을 담임한다. 수석중재원은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원 2명과 중재정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25조 당사자 쌍방은 중재위원회 중재원 명부 중에서 공동으로 중재원 1명을 지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 1명을 지정한 다음 단독 중재원으로 중재정을 구성하고 사건을 단독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쌍방이 단독 중재원 1명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약정했지만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단독 중재원 인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26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본 중재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

우에는 중재위원회주임이 지정한다.

제27조 중재사건에 둘 혹은 둘 이상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중재위원회 중재원 명부 중에서 공동으로 중재원 1명씩을 선정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중재위원회주임에게 위탁하여 중재원 1명을 지정하게 하여야 한다.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만약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공동으로 중재원 1명을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제28조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위원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중재위원회에 위원직의 기피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 당사자가 선정 혹은 지정된 중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로 의혹을 가질 경우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해당 중재원의 기피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기피청구에 근거로 되는 구체적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원 기피청구는 제1차 개정 전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제1차 개정 심리 후에 기피 사유가 발생했고 알게 되었다면 최종 개정 폐정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중재원의 기피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제31조 중재원이 기피 혹은 사망, 제명 등 기타 원인으로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원 중재원을 선정 혹은 지정한 절차에 따라 대신할 중재원을 선정 혹은 지정하여야 한다. 대신할 중재원을 지정한 후 중재정은 지금까지 진행한 심리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재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제 3 절 심 리

제32조 중재정은 사건을 개정, 심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고 중재정이 개정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정은 서면으로 심리하고 재결할 수 있다.

제33조 중재사건의 제1차 개정심리일자는 중재정이 중재위원회 비서국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비서국이 개정 30일 전에 당사자 쌍방에 통지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연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개정 12일 전에 서면으로 비서국에 제기하여야 한다. 연기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34조 제1차 개정심리, 후의 개정심리날짜 통지는 30일 전이라는 기한제한

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중재위원회가 수리한 사건은 복경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비서장의 동의하에 기타 지점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중재위원회 분회가 접수한 사건은 해당 분회 소재지에서 심리하여야 한다. 단, 분회 비서장의 동의하에 기타 지점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36조 중재정은 사건을 개정, 심리할 때 비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당사자 쌍방이 공개심리를 요구할 경우 공개심리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37조 사건을 비공개 심리할 경우 당사자 쌍방 및 그 중재대리인, 증인, 중재위원, 중재정의 자문전문가, 지정감정인, 중재위원회 비서국 관련 직원은 사건의 실체와 절차 진행상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당사자는 그의 신청, 답변, 항소에 대하여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중재정이 자체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당사자 쌍방에 출정을 통지한다. 통지를 해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출정하지 않아도 중재정의 사실조사 및 증거수집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9조 중재정은 사건중의 전문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 및 감정인은 중국 또는 외국의 기구 혹은 공민일 수 있다. 중재정은 전문가 감정인에게 임의의 관련 자료,서류,재산,화물을 제공 혹은 제시하여 전문가 감정인이 검열,검사 또는 감정하게 하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고 당사자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제40조 전문가의 보고서와 감정보고서의 부분을 당사자 쌍방에 송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전문가의 보고서와 감정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자 임의의 일방은 전문가 감정인의 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재정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전문가 감정인이 출정함과 아울러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보고서에 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제41조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는 중재정이 심사결정하고 전문가의 보고서, 감정보고서의 채택 여부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제42조 중재정이 개정, 심리할 시 당사자 일방이 출정하지 않을 경우 중재정은 결석심리하고 결석 재결할 수 있다.

제43조 중재정이 개정, 심리할 시 비서국은 심리 기록 또는 녹음을 할 수 있다, 중재정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요점을 작성하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거인 또는 기타 관련자에게 서명 혹은 날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심리 기록과 녹음은 중재정의 검사에만 제공한다.

제44조 사건 중재 시 만약 당사자들이 중재정외에서 화해했을 경우 화해합의 내용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결말짓도록 중재정에 청구할 수 있고 사건을 철회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정 구성 전에 사건철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결정하고 중재정 구성 후에 사건철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재정이 결정한다. 당사자가 이미 철회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중재를 신청할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이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제45조 당사자 일방이 본 중재규정 또는 중재합의에 규정된 임의의 조항 또는 사실이준수되지 않은 것을 알거나 혹은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중재절차에 참가하거나 중재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준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적시에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 만약 당사자 쌍방이 조정할 의사가 있거나 또는 당사자 일방이 조정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정이 상대측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재정은 중재절차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47조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중재정이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당사자 어느 일방이 조정중지를 제안하거나 중재정이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9조 중재정이 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 쌍방이 중재정외에서 화해한 것은 중재정의 조정하에 달성한 화해로 간주한다.

제50조 중재정의 조정하에 화해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화해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외에 중재정은 당사자간의 화해합의서 내용에 근거하여 재결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51조 만약 조정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도 그 후의 중재절차 사법절차 및 기타 어떤 절차에서 당사자 상대측 또는 중재정이 조정과정에서 발표, 제기, 건의, 인정, 그리고 접수할 용의를 표시했거나 부정한 임의의 진술, 의견, 견해, 또는 건의를 자기의 청구, 답변 또는 항소의 근거

로 하지 못한다.

제 4 절 재 결

제52조 중재정은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9개월 내에 중재재결을 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요구하고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그 확실한 필요성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 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3조 중재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과 계약서 규정에 따라 국제 관례를 참조하여 공평, 합리, 원칙에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결하여야 한다.

제54조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정이 실리한 사건의 중재재결은 중재정 전원 또는 다수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소수 중재원의 의견은 기록으로 별첨할 수 있다.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한다.

제55조 중재정은 그 중재재결에서 중재청구, 분쟁사실, 재결이유, 재결결과, 중재비용 부담, 재결 일시지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쟁의사실과 재결이유를 명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당사자 쌍방의 화해합의 내용에 따라 재결할 때에는 쟁의사실과 재결이유를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56조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하거나 또는 단독 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재결하는 외에 중재재결에는 다수 중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를 가진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재원은 재결서에 서명하기 전에 재결서 초안을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의 독립적 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재결서의 형식에 대해 중재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재결서에는 중재위원회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중재재결서 작성일자가 곧 중재재결 법률적 효력 발생일이다.

제57조 중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제기하고 중재정이 동의할 경우 중재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사건의 임의의 문제에 대하여 중간재결 혹은 부분재결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어느 일방이 중간재결을 이행하지 않아도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정의 중재재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8조 중재정은 중재재결서에서 당사자 쌍방이 중국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지불하여야 할 중재비 및 기타 비용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제59조 중재정은 재결서에서 패소측이 보상하여야 할 사건심리를 위하여 지출

한 승소측의 합리적인 비용을 재정할 권한이 있다. 단, 보상금액은 승소측의 최고 승소소득금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제60조 중재재결은 당사자 쌍방에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 어느 일방도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며 기타 임의의 기구에 중재재결 변경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1조 당사자 일방은 중재 재결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중재재결서의 서사.타이핑. 계산. 오류 혹은 기타 유사한 성격의 오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중재정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확실히 오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은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시정을 하며 중재정이 중재재결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체적으로 서면시정을 할 수도 있다. 해당 서면시정은 재결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제62조 만약 중재재결에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일방도 중재재결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중재정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보충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확실히 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중재정은 상기 서면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보충재결하며 중재정은 중재재결서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체적으로 보충재결할 수도 있다. 보충재결은 원 재결서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제63조 당사자들은 중재재결서에 명기한 기한에 재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재재결서에 기한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타방이 중국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법원에 집행신청을 신청하거나 또는 1958년 외국 중재재결 인정 및 집행 공약 혹은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기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에 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제 3 장 간이 절차

제64조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약정이 없는 한 쟁의금액이 인민폐로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또는 쟁의 금액이 인민폐로 50만원을 초과하지만 당사자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타방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본 간이 절차를 적용한다.

제65조 신청인이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기하고 심사하여 수리함과 아울러 간이절차를 적용할 경우에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즉시 당사자 쌍방에 중

개통지서를 발송한다. 당사자 쌍방이 이미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중재원 명부에서 단독중재원 1명을 선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신청인이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당사자 쌍방은 중재위원회 중재원명부 중에서 공동으로 단독중재원 1명을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단독중재원 1명을 지정하게 한다. 당사자 쌍방이 기한이 지났음에 단독중재원 1명을 공동으로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위탁하여 지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즉시 단독중재원 1명을 지정하여 중재정을 설립하고 사건을 심리한다.

제66조 피신청인은 중재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항소할 경우도 이 기한 내에 항소장과 관련 증명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가 회부한 서면서류와 증거에만 근거하여 서면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개정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68조 당사자들은 중재정의 요구와 한정된 날짜에 따라 중재에 소요되는 서면서류와 증거를 회부하여야 한다.

제69조 개정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재정이 개정날짜를 결정한 후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개정 15일 전에 개정날짜를 당사자 쌍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중재정이 개정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재정은 1차만 개정한다. 확실히 필요할 경우 중재정은 재차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제71조 간이절차 진행과정에서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간이절차에 따라 행사하지 않아도 절차의 진행과 중재정의 재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2조 중재청구의 변경과 항소가 제출되어도 간이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73조 개정,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중재정은 개정, 심리한 날로부터 또는 재차개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중재재결을 하여야 한다. 서면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재정은 중재정 구성 일로부터 90일 내에 중재재결을 하여야 한다. 중재정이 요구하고 중재위원회 비서장이 그 필요성과 이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4조 본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중재규칙의 기타 각 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장 부 칙

제75조 중재위원회는 중문을 공식언어로 한다.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약정에 따른다. 중재정 개정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증거인,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중재위원회 비서국이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자체로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회부한 각종 서류와 증명자료에 대하여 중재정 또는 중재위원회 비서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문 번역본 또는 기타어 번역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 중재 관련 서류. 통지서. 자료는 인편으로 혹은 등기우편 혹은 항공특별속달, 팩스, 텔렉스, 전보 혹은 중재위원회 비서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 또는 그 중재대리인에게 발송한다,

제77조 당사자 또는 그 중재대리인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면통신을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거나 수신인의 영업지점 상주주소 혹은 통신주소에 전달하였거나 혹은 상술한 그 어느 지점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등기우편 혹은 배달시도의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임의의 수단으로 알려진 수신인의 최종 영업지점, 상주주소 혹은 통신주소에 배달하였다면 이미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8조 중재위원회는 규정된 중재비용표에 따라 당사자들에게서 중재비용을 수취하는의 중재원의 사건처리에 따른 특별보수, 출장비, 숙박비 식비 및 중재정이 초빙한 전문가, 감정인, 통역 등 비용을 포함한다. 기타 경비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자체로 화해하고 철회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는 업무량과 실제 지출에 따라 중재비용을 수취한다.

제79조 중재합의서 혹은 계약중의 중재 관련 조항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그 분회에 중재하기로 명확히 규정하였거나 원 중국 국제무역촉진회 대외무역중재위원회 또는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중재하기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모두 당사자가쌍방이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에 중재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0조 본 중재규칙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중재규칙 시행 전에 중재위원회와 그 분회가 수리한 사건은 계속 사건수리에 적용하던 중재규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본 중재규칙을 적용할 수

부 록

도 있다.

제81조 본 중재규칙의 해석권은 중재위원회에 속한다.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비용표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

분쟁금액(인민폐)	중재비용(인민폐)
1,000,000원 이하	분쟁금액의 4%, 최저 20,000원
1,000,000원~5,000,000원	140,000+분쟁금액 1,000,000원 이상부분의 3%
5,000,000원~10,000,000원	160,000+분쟁금액 5,000,000원 이상부분의 2%
10,000,000원~50,000,000원	260,000+분쟁금액 10,000,000원 이상부분의 1%
50,000,000원 이상	660,000+분쟁금액 50,000,000원 이상부분의 0.5%

중재신청시 매건에 별도로 수취하는 안전등록비 인민폐 10,000원에는 중재신청의 심사, 안전등록, 계산기입력 및 프로그램사용과 서류보존 등 비용이 포함된다. 중재신청시 분쟁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비서국 혹은 중재위원회 분회 비서처가 중재비용 액수를 결정한다. 중재비용을 외화로 수취할 경우에는 본 중재비용표에 규정한 인민폐에 해당하는 화를 수취한다.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는 상기 중재비용표에 따라 중재비를 따라 동비용외의 합리적인 실제 지출경비를 수취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독일통일과 사법통합」(법원행정처, 1995).
 「북한법연구 I : 통치기구·사법제도」(법무부, 1985).
 「공산권국가의 통상관계법」(법제처, 1988).
 「중국법제개요」(법제처, 1990).
 「북한법제개요」(법제처, 1991).
 「북한의 민사소송법개요」(북한연구소, 1991).
 「북한의 재판제도」(북한연구소, 1991).
 「北韓司法制度概觀」(法院行政處, 1996).
 「北韓法の體系的考察(I) -民事關係法」(법무부, 1992).
 「中國法研究(IV) -사법제도-」(법무부, 1993).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3).
 「국제분쟁해결가이드: 중국」(대한상사중재원, 1993).
 「北韓法體系와 特色」(세종연구소, 1994).
 「北韓法の體系的考察(III) -商事 및 對外經濟關係法-」(법무부, 1997).
 「남북상사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대응방안」(대한상사중재원, 1994).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한국법제연구원, 1994).
 「북한의 개정 민사소송법」(법원행정처, 1995).
 「북한의 중재제도 -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법원행정처, 1995).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법원행정처, 1995).
 「중국법」(사법연수원, 2000).
 朴井源, 「北韓의 法律用語分析(IV)」(한국법제연구원, 1998).
 朴井源, 「北韓憲法(1998)上 經濟條項과 南北韓經濟統合」(한국법제연구원, 1999).
 신웅식·안성조, 「북한의 외국인투자법」(한국무역협회, 1998).
 최종고 외, 「北韓의 法과 法理論」(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
 최종고, 「북한법」(박영사, 1997).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세창출판사, 2000).
 韓大元 外, 「現代中國法入門」(박영사, 1995).
- 강현중, “中國 民事訴訟法에 관한 몇 가지 考察”, 法學論叢, 제12집(국민대 법학연구소, 2000).
 목영준,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외국의 상사중재제도와 비교하여-”, 『민사판례연구』XIV, 1992.

참고문헌

- 장명봉, “북한법·통일법연구의 성찰과 과제”, 『통일경제』, 통권 제9호(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9).
- 張明奉, “北韓憲法上の 國家統治機構體系에 관한 序說的 考察”, 『公法研究』, 제14집(한국공법학회, 1986)
- 張明奉, “최근의 북한사회주의헌법개정(’98. 9. 5)의 분석: 배경·내용·평가 및 정책전망”, 『統一研究論叢』, 제7권 2호(민족통일연구원, 1998)
- <http://user.chollian.net/~mcchang/materials/commentary1.htm>.
- <http://www.kotra.co.kr/nk/nation/law/2002html>.

(북한문헌)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 『민법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8),
- 『민사법사전』(평양: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김정금·리 황, 『중재법(법학부용)』(평양: 김일성대학출판부, 1985).
- 리 황, 『중재법학(법학부용)』(평양: 김일성대학출판사, 1991).
- 리 황, 『민사소송법학(법학과용)』(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 리종열, “공화국무역상사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임무”, 『법학논문집 4』(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서창섭, “우리나라 계획적 계약의 법적 본성과 그 리행원칙”, 『법학논문집 4』(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 한정국,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관한 리론”, 『법학논문집 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일본문헌)

- 高見澤磨, 『現代中國の紛争と法』(東京: 東京大出版會, 1998)
- 江 偽 外, 『中國民事訴訟法の理論と實際』(東京: 成文堂, 1997).
- 岡部達味 外, 『中國社會主義の再檢討』(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4). 소화61.
- 金正日, “社會主義法務生活化することについて”, 『社會主義法務生活について』(東京: チュチェ思想國際研究所, 1985).
- 大内憲昭, 『法律からみた北朝鮮の社會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基本法令集付』(東京: 明石書店, 1995).
- 大内憲昭, 『朝鮮社會主義法の研究』, 關東學院大學 人文科學研究所叢書Ⅶ(東京: 八千代出版, 1994).
- 石川 明, 三上威彦 編著, 『比較 裁判外紛争解決制度』(東京: 慶應義塾大學出

- 版會, 1997).
- 小島武司, 高桑 昭 編, 『注解仲裁法』, 注解 民事 手續法 6(東京: 青林書院, 1988),
- 小島武司, 高桑 昭 編, 『注解仲裁法』,(東京: 青林書院, 1988).
- 劉榮軍, “中國仲裁法の制定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 23. No. 8, 1995.

(중국문헌)

- 程德鈞 主編, 『涉外仲裁與法律』(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 譚兵 主編, 『中國仲裁制度研究』(北京: 法律出版社, 1995).
- 單國軍 編, 『民事訴訟實務』(北京: 發展出版社, 1998).
- 姪善春, 『行政訴訟价直論』(北京: 法律出版社, 1998).
- 余經松 外 主編, 『國際經濟法』(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西洋文獻)

- Arbitration & the Law 1993~94, AAA General Council's Annual Report*(New York: Transnational Juris Publications, 1994).
- Campbel, Dennis. ed.,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Comparative Law Yearbook of International Business Special Issue*, 1994(London: Graham & Trotman, 1995).
- Hirsch, Moshe. *The Arbitration Mechanism of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Disputes*(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 Hunter, Martin. ed., *The Internationalis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LCIA Centenary Conference*(London: Graham & Trotman, 1995).
- Zwegert, Konzard and Kötz, Hei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 Vol.1 (London: Clarendon Press, 1987).